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20. 12



CANADA

캐나다 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캐나다 편 -

2020. 12

연구총괄 정재현 부연구위원

연구자 이재선 관세사
변달수 위촉특수전문직

목차

제1편 개관	1
I. 일반 개황	1
II. 경제 개황	4
1. 주요 경제지표	4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5
3. 외국인 투자 동향	9
III.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14
1. 한-캐나다 수출입 동향	14
2. 한-캐나다 FTA	17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22
1.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22
가. NAFTA 재협상	22
나. 상품무역 관련 주요 내용	25
2. 기타 자유무역협정(FTA)	30
제2편 통관제도	34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34

1. 관세행정조직	34
가. 국경보안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역할 및 기능	34
나. 국경보안청의 조직과 구성	35
2. 통관 관련 법령	38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41
1. 관세의 과세요건	41
가. 과세물건	41
나. 납세의무자	42
다. 관세율	44
라. 과세가격	45
마. 과세환율	45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46
가. 납세신고	46
나. 결정, 재결정 및 추가 재결정	58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61
가. 물품 및 서비스세(GST)	61
나. 소비관세(Excise Duty) 및 소비세(Excise Taxes)	64
III. 관세평가제도	69
1. 관세평가	69
2. 과세가격 결정방법	70
가. 거래가격	70
나.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80
다. 공제가격	82
라. 산정가격	83
마. 잔존방법(Residual Method)	84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85
1. 품목분류	85
가. 품목분류 체계	85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86
2. 관세율 제도	90
가. 관세율 수준	90
나. 관세율표의 구성	95
다. 관세율의 종류	97
V. 관세 감면 및 환급제도	107
1. 관세 감면제도	107
가. 과세가격의 경감	107
나. 수출용 물품 감면	111
다. 기타 감면	118
2. 관세 환급제도	120
가. 과오납 등의 환급	120
나. 수출용 물품 환급	126
VI. 원산지제도	133
1. 원산지 표시	133
가. 원산지 표시 대상	133
나. 원산지 표시 절차	137
2. 원산지 증명	140
가. FTA 협정국이 아닌 국가 물품	141
나. FTA 협정국 물품	144
3. 원산지 사전심사	152
가.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152
나.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156

VII. 보세제도	160
1. 보세창고	160
가. 보세창고별 물품의 장치	160
나. 보관물품의 처리	177
2. 면세점	180
가. 면세점 면허절차	180
나. 면세점의 운영 및 관리	183
3. 보세운송	185
가. 보세운송 대상	185
나. 보세운송절차	186
VIII. 수출입 요건	188
1. 수입금지	188
2. 수입규제	192
가. 개요	193
나. 조사절차	195
다. 조사 시 고려사항	196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200
3. 허가 및 승인 등 요건	203
가. 수입통제목록	203
나. 수입허가	205
IX. 권리구제제도	209
1. 납세자권리현장	209
2. 불복절차	211
가. 재결정 및 추가 재결정의 청구	211
나. 항소	214

X. 벌칙	216
1. 벌금제도	216
가. 벌금가중제도	216
나. 벌금투자제도	217
2. 처벌규정	221
가. 「관세법」상 처벌규정	221
나. 「형법」상 처벌규정	222
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처벌규정	223
라. 압수와 몰수	224
XI. AEO 제도	226
1. PIP 인증절차	226
가. 인증신청	226
나. 인증정지 및 취소	229
다. 인증분야	231
라. 사후분석제도(PIA)	232
2. PIP 인증요건	233
3. PIP 인증혜택	237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240
I. 수입 통관절차	240
1. 일반 수입 통관절차	240
가. 수입신고	240
나. 물품검사 및 반출	248
2. 특수 수입 통관절차	251
가. 특송물품	251
나. 우편물품	257

II. 수출 통관절차	261
1. 수출신고	261
가. 수출신고인	261
나. 수출신고 방법	262
2. 물품검사	271
참고문헌	275

표 목차

제1편

〈표 1-II-1〉 주요 경제지표	5
〈표 1-II-2〉 최근 5년간 캐나다 對세계 수출입 현황	6
〈표 1-II-3〉 2019년 캐나다 수출입 상위 10개국	7
〈표 1-II-4〉 2019년 캐나다 수출입 상위 10품목	8
〈표 1-II-5〉 최근 5년간 캐나다 외국인투자(FDI) 현황	10
〈표 1-II-6〉 최근 5년간 캐나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현황	11
〈표 1-II-7〉 최근 3년간 캐나다 외국인투자(FDI) 상위 10 국가	12
〈표 1-III-1〉 최근 5년간 캐나다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14
〈표 1-III-2〉 2019년 캐나다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	15
〈표 1-III-3〉 한-캐나다 FTA 협상 일지	17
〈표 1-III-4〉 한-캐나다 FTA 상품 양허수준	18
〈표 1-III-5〉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수출 활용 현황	20
〈표 1-III-6〉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수입 활용 현황	20
〈표 1-III-7〉 2019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산업별 활용 현황	21
〈표 1-IV-1〉 CUSMA와 NAFTA 구성 비교	24
〈표 1-IV-2〉 CUSMA 자동차 및 부품 원산지 규정	26
〈표 1-IV-3〉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비교	28
〈표 1-IV-4〉 캐나다 FTA 현황	33

제2편

〈표 2-I-1〉 캐나다 「관세법」 및 「관세율법」의 구조	39
〈표 2-I-2〉 캐나다 D Memoranda의 구조	40
〈표 2-II-1〉 GST·HST 세율	62
〈표 2-II-2〉 담배 조제품 및 생담뱃잎 소비관세율	65
〈표 2-II-3〉 증류주, 포도주, 맥주 소비관세율	66
〈표 2-II-4〉 대마 생산품 소비관세율	67
〈표 2-II-5〉 자동차, 에어컨, 석유조제품 소비세율	68
〈표 2-III-1〉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되는 요소	73
〈표 2-IV-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91
〈표 2-IV-2〉 캐나다 관세율 수준	92
〈표 2-IV-3〉 캐나다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93
〈표 2-IV-4〉 캐나다 산업별 관세율 수준	94
〈표 2-IV-5〉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100
〈표 2-IV-6〉 협정관세율의 종류	106
〈표 2-V-1〉 제9804호의 분류 및 품목별 세율	108
〈표 2-V-2〉 제9971호의 분류 및 품목별 세율	110
〈표 2-VI-1〉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136
〈표 2-VI-2〉 비FTA 국가의 원산지 증명	143
〈표 2-VI-3〉 FTA 국가의 원산지 증명	152
〈표 2-VI-4〉 FTA별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153
〈표 2-VIII-1〉 캐나다의 수입규제품목 현황	200
〈표 2-VIII-2〉 캐나다의 對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품목	202
〈표 2-VIII-3〉 캐나다 수입통제목록 일부	205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2010~2019년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변동 추이 3

제2편

[그림 2-I-1] 캐나다 공동안전 협력체 구성 36

[그림 2-I-2] 캐나다 CBSA 조직도 37

[그림 2-IV-1]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 96

[그림 2-IV-2] 캐나다 관세율표 예시 97

[그림 2-VI-1] 수출자 원산지 진술서 142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

-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북대서양, 서쪽으로는 북태평양,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미국과 접하고 있음¹⁾
 - 국토의 총 면적은 998만 4,670km²로 한반도의 약 45배이며,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임
 - 또한 캐나다는 한 국가와 국경이 닿아 있는 가장 큰 나라이며, 미국과의 국경이 8,893km에 달함

- 인구는 약 3,769만명으로 온대기후인 미국과 인접한 남부의 300km 이내에 주로 거주하고 있음²⁾
 - 캐나다인(32.3%), 영국인(18.3%), 스코틀랜드인(13.9%), 프랑스인(13.6%), 아일랜드인(13.4%), 독일인(9.6%), 중국인(5.1%), 이탈리아인(4.6%), 북미 인디언(4.4%), 동인도인(4%), 기타(51.6%)로 구성됨³⁾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a.html>, 검색일자: 2020. 8. 26.

2)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a.html>, 검색일자: 2020. 8. 26.

2 제1편 개관

-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58.7%)와 프랑스어(22%)이며, 그 외에 편자브어(1.4%), 이탈리아어(1.3%), 스페인어(1.3%), 독일어(1.3%) 등을 사용함
 - 가톨릭교(37%), 개신교(20.3%) 신자가 많으며, 정교(1.6%), 기타 기독교(6.3%), 이슬람교(3.2%), 힌두교(1.5%), 시크교(1.4%), 불교(1.1%) 등의 종교를 가지고 있음
- 캐나다는 18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영국여왕을 국가원수⁴⁾로 하는 입헌 군주제의 연방국가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⁵⁾
-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하원은 임기 4년의 직선제로 선출되고, 상원은 총리 추천에 의하여 총독이 임명함⁶⁾
 -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의회소집, 휴회, 해산 및 법률안에 대한 재가권이 있으나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며 총리가 국정을 총괄함⁷⁾
 -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10개의 주정부(Province)와 북부지방의 3개의 준주정부(Territory)임⁸⁾
 -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형태가 유사하나 주의회는 상원이 없는 단원제이며, 기구 명칭이 다소 다름
 - 3개의 준주에는 캐나다 원주민이 주로 거주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양도받아 자치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함
- 캐나다의 화폐단위는 캐나다달러(CAD)로 2019년 미국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은 1.327캐나다달러임
- 2011년 달러당 0.989캐나다달러의 연평균 환율을 보인 이후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3) 둘 이상의 민족출신인 경우가 있어 백분율의 총 합이 100% 이상임

4) 총독이 권한을 대리 행사함

5) 외교부, 『2019 세계각국편람』, 2019. 12, p.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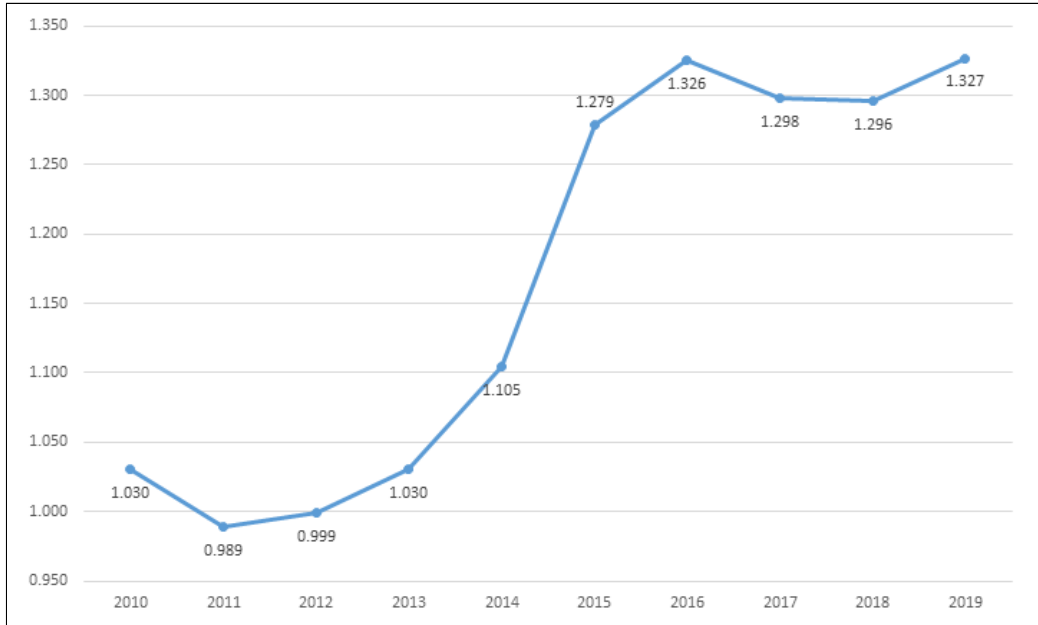
6) 외교부, 『캐나다 개황』, 2017. 2, p. 4

7) 외교부(2017), p. 40

8) 외교부(2017), p. 54

[그림 1-1-1] 2010~2019년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변동 추이

(단위: 캐나다달러/달러)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end=2019&locations=CA&start=2010>, 검색일자: 2020. 8. 28.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지표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COVID-19의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⁹⁾
- 명목GDP와 1인당 명목GDP는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또한 상승세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 이후 캐나다 통계청은 각 1조 5,900억달러, 4만 2,315달러로 하향조정함
- 실업률 또한 2016년 이후 줄어들었으나 2020년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증감률은 2016년 이후 1.4~2.3%를 유지하다가 2020년 0.6%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9) KOTRA, 「캐나다 밴쿠버 출장자료」, 2020년 상반기, p. 4

〈표 1-11-1〉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¹⁾
명목GDP	1,556.5	1,530.0	1,649.9	1,712.5	1,730.9	1,812.5 (1,590) ²⁾
1인당 명목GDP	43,626.4	42,439.7	45,217.0	46,290.2	46,212.8	47,931.5 (42,315) ²⁾
경제성장률	0.7	1	3.2	2	1.6	-6.2
실업률	6.9	7	6.3	5.8	5.7	7.5
소비자물가증감률 ³⁾	1.1	1.4	1.6	2.3	1.9	0.6

주: 1) 전망치

2) 2020년 3월 전망치로 IMF는 2020년 4월 이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의 지표만 제공하며, GDP는 공개하지 않음

3)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CAN?year=2020>;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CAN?year=2020>, 검색일자: 2020. 3. 21; KITRA, 「캐나다 토론토 출장자료」, 2020년 상반기, p. 2;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CAN?year=2020;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CAN>;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CAN?year=2020>, 검색일자: 2020. 8. 31.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 캐나다의 2019년 총교역액은 1조 1,947억캐나다달러로 총수출액 5,931억캐나다달러, 총수입액 6,016억캐나다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84억캐나다달러로 적자를 보임

○ 2016년 교역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수출 1.7%, 수입 1.2% 소폭 증가하였음

〈표 1-11-2〉 최근 5년간 캐나다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캐나다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219.2	-0.4	5,170.1	-0.9	5,461.1	5.6	5,829.9	6.8	5,931.1	1.7
수입	5,351.6	4.7	5,333.4	-0.3	5,610.6	5.2	5,947.5	6.0	6,016.0	1.2
교역규모	10,570.8	2.1	10,503.5	-0.6	11,071.7	5.4	11,777.4	6.4	11,947.1	1.4
무역수지	-132.3	-	-163.4	-	-149.5	-	-117.6	-	-84.9	-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ats/Cats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0. 8. 31.

- 2019년 캐나다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4,473억캐나다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총수출액의 약 75.4%에 해당함
 - 미국 이외의 수출국은 모두 5% 미만의 수출규모를 보였으며, 중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순으로 많은 수출을 하였음
 - 영국과 독일은 전년대비 각 21.3%, 30.4%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림
- 2019년 캐나다의 최대 수입국 또한 미국으로 3,048억캐나다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총 수입액의 50.7%를 차지함
 -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순으로 미국의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와 베트남의 경우 전년대비 각 21.2%, 29.9% 증가하였음
-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19년 55억캐나다달러를 수출, 96억캐나다달러 수입하였으며, 이는 각각 7위, 6위의 규모임
 -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5.8% 감소하여 전 세계 수출 증감률인 1.7%보다 큰 폭으로 줄었음
 - 수입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전 세계 수입 증감률인 1.2%보다 소폭 늘었음

〈표 1-11-3〉 2019년 캐나다 수출입 상위 10개국

(단위: 억캐나다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¹⁾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미국	4,473.3	2.2	1	미국	3,048.5	0.4
2	중국	232.2	-16.0	2	중국	750.3	-0.7
3	영국	198.1	21.3	3	멕시코	369.5	0.5
4	일본	125.4	-3.2	4	독일	192.9	1.2
5	멕시코	73.2	-10.9	5	일본	165.3	-1.7
6	독일	62.9	30.4	6	한국	96.3	1.9
7	한국	55.2	-5.8	7	이탈리아	94.6	5.3
8	네덜란드	51.8	9.3	8	영국	92.4	0.6
9	인도	48.3	15.9	9	프랑스	87.0	21.2
10	홍콩	40.2	2.9	10	베트남	69.9	29.9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ats/Cats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8. 31.

- 캐나다가 2019년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원유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903억 캐나다달러를 수출하였음
 - 그 외에 금(4위), 석유와 역청유의 조제품(6위), 천연가스(7위), 유연탄(10위)과 같은 천연 자원의 수출 규모가 컸음
 - 또한 승용자동차의 수출도 많으며, 불꽃점화식 왕복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승용자동차의 총수출 금액은 496억캐나다달러임

- 2019년 캐나다가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승용자동차와 원유이며, 이는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함
 - 승용자동차는 실린더 용량별로 193억, 134억캐나다달러를 수입했으며, 화물자동차, 차체의 부분품 등 자동차 품목의 수입규모가 큼
 - 또한 원유 189억캐나다달러, 경질유와 조제품 116억캐나다달러, 금 75억캐나다달러 등 천연 자원의 수입 또한 많았음

〈표 1-Ⅱ-4〉 2019년 캐나다 수출입 상위 10품목¹

(단위: 억캐나다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¹⁾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석유와 역청유 (원유)	903.2	4.2	1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193.5	3.8
2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211.0	-14.5	2	석유와 역청유 (원유)	189.4	2.7
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206.2	14.4	3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	134.7	17.2
4	화폐용이 아닌 가루 외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금	205.6	31.0	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120.8	-8.9
5	미국에서 가치항상이 반송되는 미국산 물품 ²⁾	204.0	10.3	5	경질유와 조제품	116.4	-19.3
6	경질유와 조제품 외의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99.4	0.8	6	다른 호에 특개되지 않은 상품 ³⁾	88.4	15.0
7	천연가스 (가스 상태인 것)	90.4	0.3	7	기타 소매의약품	87.3	12.6
8	기타 칩엽수류의 제재목(소나무, 전나무 제외)	79.1	-22.3	8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7.3	-2.6

〈표 1-11-4〉의 계속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¹⁾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9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78.8	10.5	9	화폐용이 아닌 가루 외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금	75.1	20.9
10	유연탄	69.2	-7.5	10	안전벨트 이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71.4	2.9

주: 1. HS 6단위 기준
 1) 전년대비 증감률
 2) 제9904.00호
 3) 제9999.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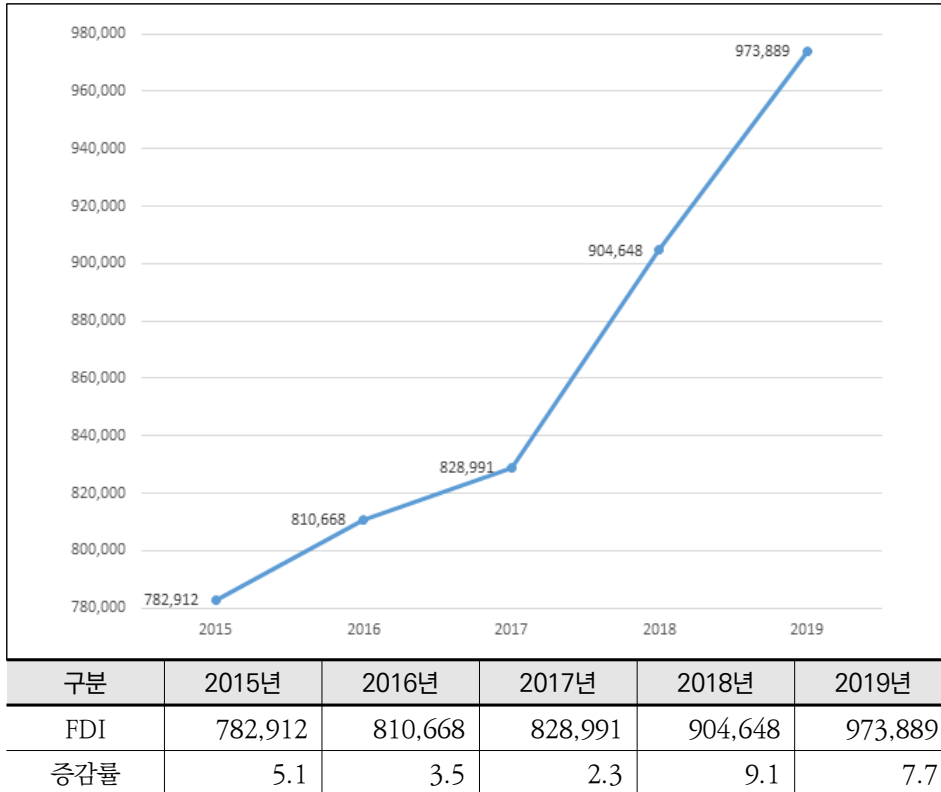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ats/Cats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8. 31.

3. 외국인 투자 동향

-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 9,738억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금액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3%로 증가폭이 주춤하다가 2018년(9.1%)과 2019년(7.7%)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영향임¹⁰⁾

10) 캐나다 통계청,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9," 2020. 7. 17., p. 3

〈표 1-11-5〉 최근 5년간 캐나다 외국인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자료: 캐나다 통계청,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610000801>,
검색일자: 2020. 8. 31.

- 2019년 캐나다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사업관리로 2,25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최근 5년간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광업·석유 및 가스 채굴 분야의 2019년 투자액은 1,882억달러, 금융·보험업 1,329억달러로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3차 산업의 경우 2015년 4,326억달러였던 투자액이 2019년 5,770억달러로 증가하여 5년간 1,444억달러가 증가하였음
 - 사업관리 이외에 전기·가스·수도공급, 운송·보관, 정보 및 문화산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분야 투자액이 크게 상승하였음

〈표 1-Ⅱ-6〉 최근 5년간 캐나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차 산업	169,232	173,076	172,927	169,147	189,007
농업, 임업, 어업, 수렵	425	144	182	269	738
광업, 석유 및 가스 채굴	168,807	172,932	172,745	168,878	188,269
2차 산업(제조업)	181,061	181,367	177,561	189,789	207,807
식품	22,280	22,332	20,679	26,109	31,924
음료, 담배 조제품	5,923	4,861	4,705	5,615	6,925
방직	319	187	366	302	324
섬유제품
의류	16	16
가죽제품
목재	4,737	3,832	3,686	4,510	4,597
종이	5,493	4,998	6,112	6,079	5,736
인쇄	307	3,690	1,558	67	-439
석유 및 석탄제품	52,125	51,351	47,129	48,894	53,668
화학품	28,343	37,283	37,733	40,129	43,49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787	4,447	5,455	6,198	7,201
비금속 광물질제품	8,421	7,937	9,042	8,193	8,510
1차 금속제품	14,923	9,205	8,321	10,171	10,458
가공 금속제품	2,384	1,945	2,362	3,766	3,868
기계	5,419	2,723	3,007	4,459	4,469
컴퓨터 및 전자제품	3,418	3,333	3,577	3,175	3,276
전자 장비, 기기 및 부품	3,519	3,036	2,535	1,486	1,950
운송장비	18,577	19,408	20,365	18,900	20,048
가구	519	575	472	638	634
기타	568	224	456	1,083	1,146
3차 산업	432,620	456,225	478,503	545,713	577,075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2,484	2,091	1,590	9,918	9,763

〈표 1-Ⅱ-6〉의 계속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설	4,393	3,253	3,712	5,157	5,383
도매 무역	61,884	70,343	74,056	83,987	86,067
소매 무역	31,114	32,705	33,701	33,276	35,004
운송, 보관	8,779	10,616	13,706	13,658	14,108
정보 및 문화 산업	5,834	6,545	6,162	12,760	14,308
금융, 보험	115,853	126,359	131,044	123,032	132,984
부동산, 임대업	10,157	11,793	12,270	14,957	15,514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 서비스	24,187	19,108	18,611	19,260	19,646
사업 관리	158,838	163,069	171,978	211,181	225,758
주거 및 식음료 서비스	3,544	4,041	3,952	5,469	5,239
기타	5,553	6,302	7,721	13,058	13,301
총계	782,912	810,668	828,991	904,648	973,889
ICT	23,175	13,620	16,518	23,995	24,834

자료: 캐나다 통계청,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610000901>, 검색일자: 2020. 8. 31.

- 최근 3년간 캐나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미국으로 2019년 4,732억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하며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52.3%를 차지하였음
-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이 최근 3년간 캐나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권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Ⅱ-7〉 최근 3년간 캐나다 외국인투자(FDI) 상위 10 국가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미국	420,000	미국	426,390	미국	473,239
2	영국	51,177	영국	46,272	영국	48,545
3	일본	38,672	일본	38,842	일본	43,899
4	브라질	29,587	스위스	29,488	스위스	31,794
5	네덜란드	27,523	브라질	27,746	독일	27,307

〈표 1-11-7〉의 계속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6	스위스	26,932	중국	26,887	브라질	26,323
7	중국	25,058	독일	26,757	중국	25,042
8	독일	24,988	룩셈부르크	22,879	룩셈부르크	24,034
9	룩셈부르크	19,658	네덜란드	19,982	프랑스	23,071
10	프랑스	15,685	프랑스	17,719	네덜란드	20,683

자료: 캐나다 통계청,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610043301>, 검색일자: 2020. 8. 31.

Ⅲ.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1. 한-캐나다 수출입 동향

- 캐나다는 2019년 우리나라에 55.2억캐나다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우리나라로부터 96.3억캐나다달러를 수입하여 41억캐나다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음
- 캐나다의 對우리나라 수출은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9년 5.8% 감소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9% 소폭 증가하였음
-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62.3억캐나다달러의 가장 많은 적자를 보였으며, 2017년 적자가 35억으로 줄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1-Ⅲ-1〉 최근 5년간 캐나다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억캐나다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0.3	-3.3	43.7	8.5	52.0	19.1	58.6	12.7	55.2	-5.8
수입	78.8	8.6	106.0	34.6	87.0	-17.9	94.5	8.5	96.3	1.9
교역규모	119.0	4.2	149.7	25.8	139.1	-7.1	153.1	10.1	151.5	-1.0

〈표 1-Ⅲ-1〉의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38.5	-	-62.3	-	-35.0	-	-35.8	-	-41.0	-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ats/CatsCtrl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8. 31.

- 캐나다가 2019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유연탄으로 14.6억캐나다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구리광, 철광, 금, 니켈과 같은 광물의 수출도 많았음
 - 목재펠프도 2.9억캐나다달러의 큰 규모로 수출되었으나 전년에 대비하여 기계·화학결합펠프는 24.4%, 표백 화학펠프는 4.1% 금액이 감소하였음
 - 또한 조유, 밀, 조제 식료품 등 식품의 전년대비 수출금액 증가율이 각각 35%, 100%, 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반면 2019년 캐나다는 우리나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약 31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졌음
 - 승용자동차 외에 기타 차량 3억캐나다달러, 차량 부분품 1.1억캐나다달러, 차량용 타이어 1.1억캐나다달러 등 차량 관련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 외에 핸드폰 6억캐나다달러, 전자집적회로 1.7억캐나다달러 등 전자제품의 수입규모가 컸음

〈표 1-Ⅲ-2〉 2019년 캐나다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¹

(단위: 억캐나다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¹⁾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14.6	-6.2	1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22.9	7.3

〈표 1-Ⅲ-2〉의 계속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¹⁾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2	구리광과 그 정광	6.6	-18.0	2	경질유와 조제품 외의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6.2	38.5
3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과 그 정광	4.1	18.4	3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0	-28.6
4	기계펠프공정과 화학펠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펠프	1.9	-24.4	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5.2	44.5
5	화폐용이 아닌 가루 외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금	1.5	50.8	5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3.0	196.8
6	조유	1.4	35.3	6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2.9	-3.8
7	기타 밀과 메슬린	1.4	100.3	7	기타 전자집적회로	1.7	217.7
8	침엽수류로 만든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화학목재펠프	1.0	-4.1	8	에이치 형강	1.5	4.4
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0.9	34.3	9	기타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1.1	-17.1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괴	0.6	53.4	10	승용자동차용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1.1	-20.5

주: 1. HS 6단위 기준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ats/Cats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0. 8. 31.

2. 한-캐나다 FTA

-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체결된 최초의 FTA로 우리나라의 12번째 FTA임¹¹⁾
 - 캐나다는 석유·천연가스·우라늄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캐나다 시장 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시장 진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¹²⁾

〈표 1-III-3〉 한-캐나다 FTA 협상 일지

일시	내용
2004년 11월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5년 1월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005년 3월	제2차 예비협의 개최
2005년 7월	통상장관회담 개최,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 합의
2005년 7월	제1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2005년 9월	제2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5년 11월	제3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2006년 2월	제4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6년 4월	제5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2006년 6월	제6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6년 9월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2006년 11월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7년 1월	제9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밴쿠버)
2006년 4월	제10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6년 6월	제1차 한-캐나다 FTA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오타와)
2006년 9월	제2차 한-캐나다 FTA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서울)
2006년 10월	제11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2006년 11월	제12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08년 3월	제13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2008년 5월	한-캐나다 FTA 회기 간 농업회의(밴쿠버)
2009년 1월	한-캐나다 FTA 회기 간 원산지분야 회의(밴쿠버)

11)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 검색일자: 2020. 9. 1.

12)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1/1/>, 검색일자: 2020. 9. 1.

〈표 1-III-3〉의 계속

일시	내용
2012년 7월	한-캐나다 FTA 현황점검회의(밴쿠버)
2013년 11월	제14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선언
2014년 6월	한-캐나다 FTA 가서명(서울)
2014년 9월	한-캐나다 FTA 정식서명(오타와)
2014년 12월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 발효
2016년 6월	제1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오타와)
2018년 3월	제2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자료: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1/2/>, 검색일자: 2020. 9. 1.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협정 발효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이루기로 합의함¹³⁾
- 2011년 HS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모두 97.5%의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음
 - 이는 2009~2011년 평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8.4%, 캐나다는 98.7%에 해당함

〈표 1-III-4〉 한-캐나다 FTA 상품 양허수준

(단위: 백만달러, %)

양허 유형	우리나라				캐나다			
	품목 수	비중	수입액 ¹⁾	비중	품목 수	비중	수입액 ²⁾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 내	11,604	97.5	4,752	98.4	8,142	7.5	6,477	9.7

13) 관계부처 합동, 『한-캐나다 FTA 상세설명자료』, 2014. 8. p. 12

〈표 1-III-4〉의 계속

양허 유형	우리나라				캐나다			
	품목 수	비중	수입액 ¹⁾	비중	품목 수	비중	수입액 ²⁾	비중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질관세/ 세번분리	1	0.0	0	0.0	-	-	-	-
형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 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주: 1) 對캐나다 수입액
2) 對우리나라 수입액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p. 13

-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 간 무역형태인 양국 간 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됨¹⁴⁾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타이어 등을 포함하여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함
 - 반면,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주로 수출하는 유연탄, 구리광, 펄프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함

- 우리나라는 2019년 캐나다에 대한 수출액 중 FTA 특혜 대상품목의 95.2%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임¹⁵⁾
 - 최근 3년간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93.4%, 93.6%, 95.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4) 관계부처 합동(2014), p. 13

15) 2019년 우리나라의 FTA 수출 활용률은 74.9%임(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_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ExpList.do?mi=3352, 검색일자: 2020. 9. 1.)

〈표 1-III-5〉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수출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총금액	FTA 특혜대상	C/O 발급액	활용률 ¹⁾
2017년	4,717,561	2,818,239	2,631,243	93.4
2018년	5,744,891	2,987,228	2,796,720	93.6
2019년	5,615,735	3,287,665	3,130,243	95.2

주: 1)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100

자료: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 p. 12;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8년 FTA 활용 지도』, 2019, p. 14;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9년 FTA 활용 지도』, 2020, p. 14

- 반면 2019년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품목 중 FTA 특혜 대상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은 77.9%¹⁶⁾로 수출활용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임
-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수입활용률은 2017년 83.6%, 2018년 80.6%, 2019년 77.9%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1-III-6〉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수입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총금액	FTA 특혜대상	FTA 적용	활용률 ¹⁾
2017년	5,042,224	1,729,795	1,446,128	83.6
2018년	5,753,185	1,838,157	1,841,930	80.6
2019년	5,757,660	1,728,750	1,345,889	77.9

주: 1) FTA 특혜 적용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100

자료: 관세청(2018), p. 13; 관세청(2019), p. 15; 관세청(2020), p. 15

- 2019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특혜 대상품목의 수출·입이 가장 많은 기계류와 농림수산물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자동차 등이 속하는 기계류의 수출활용률은 98.6%로 특혜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농림수산물 분야의 수입

16) 2019년 우리나라의 FTA 수출 활용률은 76.6%임(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ImpList.do?mi=3353>, 검색일자: 2020. 9. 1.)

활용률도 96.1%로 가장 많은 비율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다만 농림수산물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광산물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46.2%로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표 1-III-7〉 2019년 우리나라의 한-캐나다 FTA 산업별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산업	수출		수입	
	FTA 특혜대상	활용률 ¹⁾	FTA 특혜대상	활용률 ²⁾
농림수산물	66,485	63.2	722,048	96.1
광산물	6	5.1	253,778	46.2
화학공업제품	36,081	42.3	176,899	62.5
플라스틱·고무·가죽	165,158	83.7	47,105	87.5
섬유류	10,358	45.9	40,758	52.5
생활용품	57,805	73.3	19,872	81.7
철강금속제품	55,820	78.2	175,510	83.0
기계류	2,809,444	98.6	201,024	68.2
전자전기제품	85,914	84.1	91,059	68.4
잡제품	594	86.7	679	97.6
합계	3,287,665	95.2	1,728,750	77.9

주: 1) 수출 활용률=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100

2) 수입 활용률= FTA 특혜 적용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100

자료: 관세청(2020), p. 37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1.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가. NAFTA 재협상

-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1994년 역내 국가의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함¹⁷⁾
- NAFTA의 체결로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관세는 2008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철폐되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미국 FTA에 따라 1989년 철폐된 것을 NAFTA에서 유지하였음
- 2017년 기준 3국의 상품 무역은 약 1.1조달러에 이르렀으며, 1993년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거래는 약 2배, 캐나다와 멕시코의 거래는 약 9.5배 증가함

- 2017년 북미 3개국은 무역관계를 공고히 하고, 21세기의 무역문제를 해결하기에

17)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usma-aceum/index.aspx?lang=eng>, 검색일자: 2020. 9. 7.

적합한 새로운 조항을 통합하기 위하여 NAFTA의 재협상을 추진함¹⁸⁾

- 2018년 11월 30일 3개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캐나다-미국-멕시코협정(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에 서명함¹⁹⁾
 - 2019년 12월 멕시코의 국내비준절차 완료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미국의 상·하원 법안 통과, 2020년 4월 캐나다가 국내절차 승인 통보를 하면서 2020년 7월 1일 CUSMA가 발효됨²⁰⁾
- CUSMA는 NAFTA 현대화 협상이라는 명분과 걸맞게 기존 NAFTA에는 없었던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강화함²¹⁾
- 특히 환율조작금지와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 조건 조항은 무역협정 최초로 도입됨²²⁾
 - 환율조작금지 조항에 따라 협정국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삼가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 시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하여야 함²³⁾
 - 또한 최종조항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매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여 협정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일몰 제도를 도입함²⁴⁾

18)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usma-aceum/index.aspx?lang=eng>, 검색일자: 2020. 9. 7.

19) 미국의 공식명칭은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임

20) 코트라,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0-012, 2020. 6., p. 1

21) 설송이·제현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2018, 제23호, 한국무역협회, 2018. 10, p. 9

22) 석준호·문한필·김지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7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3, p. 3

23) 조문희·권혁주·강민지,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0, p. 17

24) 설송이·제현정(2018), p. 8

〈표 1-IV-1〉 CUSMA와 NAFTA 구성 비교

CUSMA	NAFTA
서문	서문
1. 최초조항 및 일반 정의	1. 목적 2. 일반 정의
2. 내국민대우와 상품의 시장접근	3. 내국민대우와 상품의 시장접근
3. 농업	7. 농업 및 위생검역
4. 원산지 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 규정	4. 원산지 규정 부속서 401 상품 특정 원산지 규정
5. 원산지 절차	4. 원산지 규정
6. 섬유 및 의류	부속서 300-B 섬유류
7. 세관 및 무역원활화	5. 세관절차
8. 탄화수소 제품에 있어 멕시코의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시효가 없는 소유권 인정	-
9. 위생검역	7. 농업 및 위생검역
10. 무역구제	8. 긴급조치 19. 검토 및 반덤핑/상계조치 분쟁해결
11. 기술무역장벽	9. 표준 관련 조치
12. 분야별 부속서	-
13. 정부조달	10. 정부조달
14. 투자	11. 투자
15. 국경 간 서비스	12. 국경 간 서비스
16. 임시 입국	16. 임시입국
17. 금융서비스	14. 금융서비스
18. 통신서비스	13. 통신서비스
19. 디지털 무역	-
20. 지식재산권	17. 지식재산권
21. 경쟁 정책	15. 경쟁 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22. 국영기업	15. 경쟁 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23. 노동	-
24. 환경	-
25. 중소기업	15. 경쟁 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26. 경쟁력	-
27. 반부패	-
28. 모법 규제 관행	-
29. (법) 공표 및 행정	18. 법 공표, 통지 및 행정

〈표 1-Ⅳ-1〉의 계속

CUSMA	NAFTA
30. 행정 및 제도 규정	20.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절차
31. 분쟁해결제도	19. 검토 및 반덤핑/상계조치 분쟁해결 20.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절차
32. 예외 및 일반 규정	21. 예외
33.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문제	-
34. 최종조항	22. 최종조항 6. 에너지 및 기본 석유화학제품

자료: 조문희 외(2018), pp. 7~8

나. 상품무역 관련 주요 내용

1) 자동차 및 부품산업 보호 강화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가치 비율을 신설 하였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을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함²⁵⁾
 - 대부분의 승용차와 경량 트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순원가법상 7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²⁶⁾
 - 역내 부가가치기준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66→69→72→75%가 적용됨
 - 또한 북미의 자동차 생산자가 이전 해에 구매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이 역내산이어야 함
 - CUSMA는 원산지 결정에 있어 노동가치 비율을 새로 도입하였는데,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인력의 임금이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개념임²⁷⁾
 - 자동차 부품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공장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하며, 승용차 40%, 트럭 45%를 충족해야 함

25) 조문희 외(2018), p. 2

26) 설송이·제현정(2018), p. 3

27) 조문희 외(2018), p. 9

〈표 1-IV-2〉 CUSMA 자동차 및 부품 원산지 규정

구분		원산지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노동부가가치
자동차	승용차(8703.21~8703.90)	4단위 세번변경 + 75%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 이상 북미산 증명	40%
	경량트럭 (8704.21, 8704.31)			45%
	중량트럭 (8704.32~8704.90)	4단위 세번변경 + 70% 부가가치		
부품	핵심부품(15품목)	75% 부가가치	-	-
	주요부품(53품목)	세번변경 or 70% 부가가치		
	보조부품(28품목)	세번변경 or 65% 부가가치		

자료: 설송이·제현정(2018), p. 2

-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MFN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향후 5년간 일부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함²⁸⁾
 - 협정발효 5년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 비율 62.5%,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비중 70%, 노동가치 비율기준 고임금재료 및 제조비용 비중 5%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일부에 한하여 무관세를 적용함
 -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발효일 이전 12개월 생산량 또는 36개월 평균 연간생산량 중 더 높은 수치의 10%에 한함
- 또한 CUSMA에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제232조²⁹⁾ 조치를 취할 경우 캐나다 및 멕시코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쿼터 및 조치 예외 내용이 반영됨³⁰⁾
 - 제232조 조치 시 경량트럭, 일정 물량의 승용차, 일정 금액의 자동차 부품은 수입제한에서 제외하는 부속서에 합의함

28) 조문희 외(2018), pp. 9~10

29)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말하며, 외국산 수입물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하게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epblog/221345335960>, 검색일자: 2020. 9. 10.)

30) 설송이·제현정(2018), p. 4

- 승용차의 제외 물량은 캐나다와 멕시코 각 260만대이며,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 324억달러, 멕시코 1,080억달러임
- 제232조 조치 이후 60일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산업과 무역 추이를 고려해 협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유제품 시장 부분 개방

- 캐나다는 NAFTA에서 미개방했던 우유, 크림, 치즈, 버터 등 일부 유제품에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여 미국에 한하여 개방하고, 미국 역시 부분적으로 개방함³¹⁾
 - 캐나다는 전체 시장의 10%에 해당하는 수입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제품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입을 방어해 옴³²⁾
 - CUSMA에서 캐나다는 우유, 크림, 저지방우유 파우더, 버터, 크림파우더, 산업용 치즈, 요구르트, 버터밀크, 유장 파우더,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일부분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9%에 해당하는 수준임
 - 미국 또한 액상크림, 사워크림,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저지방우유 파우더, 버터, 크림, 크림파우더, 치즈, 우유성분제품 등을 수입쿼터제 형태로 캐나다에 개방함
- 또한 캐나다의 우유가격제도에 따른 Class 7 Milk 등급을 폐기하여 미국의 캐나다 유제품 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짐³³⁾
 - Class 7 Milk는 2017년 캐나다가 도입한 우유등급으로 우유농축액을 단백질 성분으로 구분하여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Class 7 Milk를 도입함으로써 유제품으로 편입시킴³⁴⁾
 - 이에 따라 미국에서 수출하던 우유농축액이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캐나다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적용됨

31) 설송이·제현정(2018), p. 8

32) 조문희 외(2018), pp. 4~5

33) 설송이·제현정(2018), p. 8

34) 조문희 외(2018), p. 5

3) 디지털 무역 조항 신설

- CUSMA는 NAFTA에서 규정하지 않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을 한 챕터로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규범화하고 있음³⁵⁾
 - 제19장에서는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를 금지함³⁶⁾

- CUSMA의 디지털 무역 조항은 TPP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기초로 하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과 같은 일부 규정을 추가함³⁷⁾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란 컴퓨터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터넷 플랫폼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 또한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부 정보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표 1-IV-3〉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비교

구분	CUSMA	TPP	한-미 FTA
디지털 상품 무관세	제19.3조 의무	제14.3조 의무	제15.3조 의무
디지털 상품 비차별대우	제19.4조 의무	제14.4조 의무	제15.3조 의무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제19.6조 의무	제14.6조 의무	제15.4조 의무
소비자 보호	제19.7조 의무	제14.7조 의무	제15.5조 노력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제19.11조 의무	제14.11조 의무	제15.8조 노력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제19.12조 의무	제14.1조 의무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제19.16조 의무	제14.17조 의무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19.17조 의무	-	-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제19.18조 노력	-	-

자료: 조문희 외(2018), p. 13

35) 조문희 외(2018), p. 12

36) 설송이·제현정(2018), p. 7

37) 조문희 외(2018), pp. 12~13

4)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체결 요건

- CUSMA 협정의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조항은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과 발효 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³⁸⁾
 - 비시장경제 국가란 CUSMA 협정 서명일 기준 당사국이 비시장경제 국가라고 결정한 국가로,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함³⁹⁾
- 북미 3개국은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어도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다른 당사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서명 30일 전 협정문을 다른 당사국에 공개해야 함⁴⁰⁾
 - 요청이 있는 경우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협상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공된 협정의 전문은 당사국이 협정을 검토하여 CUSMA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 또한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발효 시 다른 당사국이 6개월의 통보기간 후 CUSMA를 종료하고 다른 당사국의 양자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⁴¹⁾
 - CUSMA를 대체하는 양자협정은 CUSMA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당사국이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규정은 제외함
 - 6개월의 통보기간을 활용하여 양자협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각국이 법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서로 통지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됨

38) 조문희 외(2018), p. 18

39) 설송이·제현정(2018), p. 6

40) 조문희 외(2018), p. 18

41) 조문희 외(2018), p. 18

2. 기타 자유무역협정(FTA)

- 캐나다는 2020년 9월 현재 CUSMA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FTA를 체결하여 14개 협정이 발효 중임
 - 캐나다-이스라엘 FTA는 1997년 상품협정이 발효된 후, 2014년 기존의 4개의 장을 변경하고 7개의 장⁴²⁾을 추가하여 개정 발효됨⁴³⁾
 - 캐나다-이스라엘 FTA는 발효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며, 2018년 기준 양국 간의 상품무역은 약 3배가 증가하여 19억캐나다달러를 달성하였음
 - 캐나다-칠레 FTA는 1997년 최초 발효, 2019년 2월 5일 개정 발효되었으며, 2017년 기준 양국의 상품무역이 약 4배 증가하여 29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함⁴⁴⁾
 - 캐나다-코스타리카 FTA, 캐나다-EFTA FTA 또한 상품무역 중심의 초기 협정으로 서비스·금융·투자·지식재산권 등의 절차를 포함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⁴⁵⁾
 - 캐나다는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와의 FTA와 병행하여 노동협력협정(Labour Cooperation Agreement)과 환경협력협정(Environment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음⁴⁶⁾

42) 기존 4개 장: 시장접근, 원산지, 제도규정, 분쟁해결; 신규 7개 장: 무역촉진, 위생/검역, 기술적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75/view.do?seq=1173166, 검색일자: 2020. 9. 4.)

43)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israel/fta-ale/index.aspx?lang=eng&_ga=2.172339685.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44)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hile-chili/index.aspx?lang=eng&_ga=2.203611606.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45)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sta_rica/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236247367.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european-association-europeenne/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33019720.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46)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eru-perou/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227908059.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lombia-colombie/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227908059.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은 2015년 10월 체결되어 2016년 서명되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발효되지 않음⁴⁷⁾
 - 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이 체결하였으나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밝힘
 -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였고, 일본의 주도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추진됨
 - CPTPP는 TPP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GDP의 13.5%, 4억 9,500만명의 소비자를 포괄하는 무역권을 형성함⁴⁸⁾
 - 캐나다에게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CPTPP는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6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면서 2018년 12월 발효되었고, 2019년 1월 베트남에서도 발효됨
- 발효된 14개 FTA 외에 캐나다는 9개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5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음

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lombia-c
olombie/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227908059.771581826.159
9178330-1662773157.1585704807; rciaux/agr-acc/panama/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99029097.
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
rciaux/agr-acc/honduras/fta-ale/backgr
ound-contexte.aspx?lang=eng&_ga=2.166435064.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
585704807](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
-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honduras/fta-ale/backgr
ound-contexte.aspx?lang=eng&_ga=2.166435064.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
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 47)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
ommerciaux/agr-acc/tpp-ptp/background_negotiations-contexte_negociations.aspx?lang=e
ng&_ga=2.128744778.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
ommerciaux/agr-acc/tpp-ptp/background_negotiations-contexte_negociations.aspx?lang=e
ng&_ga=2.128744778.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 48)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
ds-commerciaux/agr-acc/cptpp-ptpgp/index.aspx?lang=eng&_ga=2.137073142.771581
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
ds-commerciaux/agr-acc/cptpp-ptpgp/index.aspx?lang=eng&_ga=2.137073142.771581
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 캐나다는 중앙아메리카 4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FTA 협상을 2010년까지 12차례 진행하였으나 2011년 온두라스와 양자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됨⁴⁹⁾
 - 그러나 나머지 3개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기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음
-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⁵⁰⁾와 2007년 FTA 협상 개시 이후 제7차 협상까지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됨⁵¹⁾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로 구성된 경제동맹으로 2017년 6월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지정하고 FTA 협상을 개시함⁵²⁾
 - 태평양동맹은 인구 약 2.25억명, GDP 약 2.7조캐나다달러에 이르는 경제권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스(Mercosur)는 인구 2.6억명, GDP 3조캐나다달러의 경제권으로 캐나다와의 무역규모 및 일자리 증가를 위해 FTA 협상을 개시함⁵³⁾
- 또한 캐나다는 2001년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개시하고, 태국(2013년), 필리핀(2015년)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나 2016년 캐나다 상무부가 ASEAN과 경제적 관계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ASEAN과의 협상에 포함되게 됨⁵⁴⁾

49)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a4/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94804971.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50)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트세랫,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51)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aricom/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232618457.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52)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acific-alliance-pacifique/index.aspx?lang=eng>, 검색일자: 2020. 9. 4.

53)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mercosur/benefits-avantages.aspx?lang=eng>, 검색일자: 2020. 9. 4.

54)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singapore-singapour/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36615158.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thailand-thailand/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36615158.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hilippines/fta-ale/background-contexte.aspx?lang=eng&_ga=2.164789369.771581826.1599178330-1662773157.1585704807, 검색일자: 2020. 9. 4.

- 캐나다-ASEAN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는 2017년 9월 개시되었고, 2019년 9월 결과가 발표됨

〈표 1-IV-4〉 캐나다 FTA 현황

발효		협상	공동연구
FTA	발효일		
캐-이스라엘 FTA	1997. 7. 1.	캐-싱가포르 FTA	캐-터키 FTA
캐-칠레 FTA	1997. 7. 5.	캐-도미니카공화국 FTA	캐-태국 FTA
캐-코스타리카 FTA	2002. 11. 1.	캐-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FTA	캐-필리핀 FTA
캐-EFTA FTA	2009. 7. 1.		캐-중국 FTA
캐-페루 FTA	2009. 8. 1.	캐-모로코 FTA	캐-ASEAN FTA
캐-콜롬비아 FTA	2011. 8. 15.	캐-카리브공동체 FTA	
캐-요르단 FTA	2012. 10. 1.	캐-일본 EPA	
캐-파나마 FTA	2013. 4. 1.	캐-인도 CEPA	
캐-온두라스 FTA	2014. 10. 1.	캐-태평양동맹 FTA	
캐-한국 FTA	2015. 1. 1.	캐-Mercosur FTA	
캐-우크라이나 FTA	2017. 8. 1.		
캐-EU FTA	2017. 9. 21.		
CPTPP	2018. 12. 30.		
CUSMA	2020. 7. 1.		
TPP(서명)	2016. 2. 4.		

자료: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index.aspx?lang=eng>, 검색일자: 2020. 9.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1. 관세행정조직

가. 국경보안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역할 및 기능

- 캐나다의 국경보안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03년 11월 자국민의 보호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됨⁵⁵⁾
 - CBSA는 국가보안과 공공안전을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통합 국경 서비스를 제공함⁵⁶⁾
- CBSA는 캐나다에 들어오거나 캐나다에서 나가는 사람과 물품의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캐나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함⁵⁷⁾

55)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who-qui-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56)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Act 제5조 제1항

57)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charter-charte-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 캐나다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사람과 물품을 차단하여 합법적인 국경 간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함⁵⁸⁾
- CBSA는 무역 및 여행에 관한 캐나다 법은 물론 국제협약 및 조약을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국경을 관리함⁵⁹⁾
 - CBSA의 법·규정·파트너십에 따른 책임은 다음과 같음⁶⁰⁾
 - 사람과 물품, 동물과 식물의 캐나다 입출국의 허용 여부를 관장하는 법의 운영
 - 캐나다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의 구금
 - 테러, 조직범죄,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의 추방
 - 불법 물품 입국 또는 출국 금지
 - 식품 안전, 식물 및 동물 건강, 캐나다의 자원 기반 보호
 -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무역법과 무역 협정을 관리함으로써 캐나다의 비즈니스 및 경제적 이익 증진
 - 덤핑 및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캐나다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구제 조치 시행
 -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체계 운영
 - 다양한 국제 포럼 및 국제기구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관심 촉진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징수

나. 국경보안청의 조직과 구성

- CBSA는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CBSA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공안전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음⁶¹⁾

58) 캐나다 공공안전부, <https://www.publicsafety.gc.ca/cnt/bt/index-en.aspx>, 검색일자: 2020.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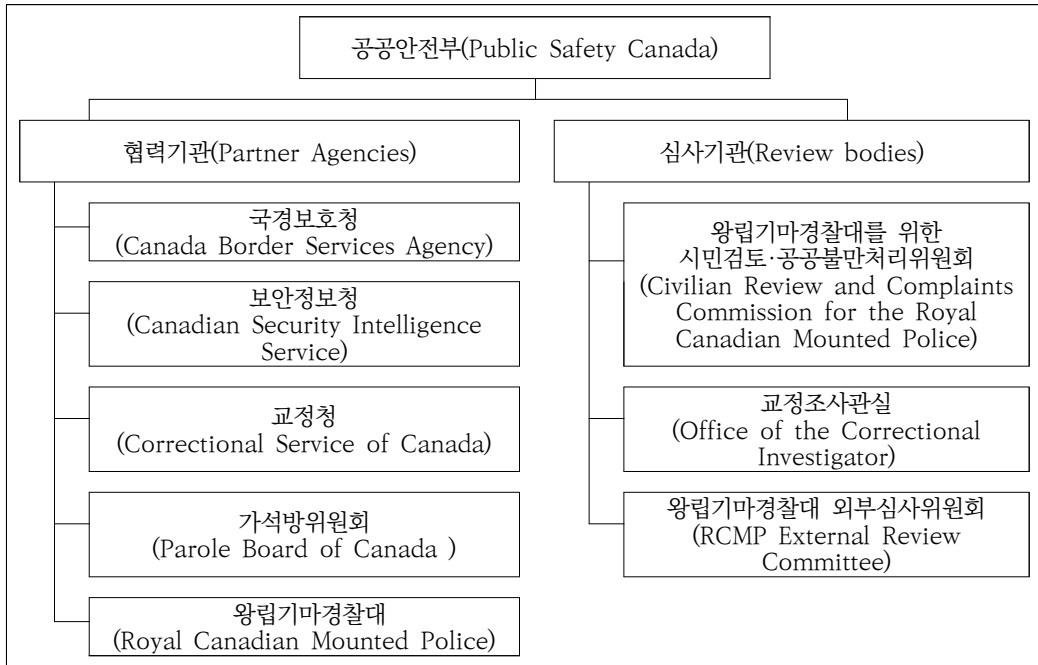
59) 캐나다 공공안전부, <https://www.publicsafety.gc.ca/cnt/bt/index-en.aspx>, 검색일자: 2020. 9. 24.

60)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what-quoi-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61)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who-qui-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 공공안전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간의 조정을 담당함⁶²⁾
- 공공안전 협력체는 5개의 협력기관과 3개의 심사기관으로 구성됨

[그림 2-1-1] 캐나다 공동안전 협력체 구성



자료: 캐나다 공공안전부, <https://www.publicsafety.gc.ca/cnt/bt/index-en.aspx>, 검색일자: 2020. 9.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CBSA의 조직은 9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음⁶³⁾
 - 공공안전부 장관은 CBSA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⁶⁴⁾ 청장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CBSA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함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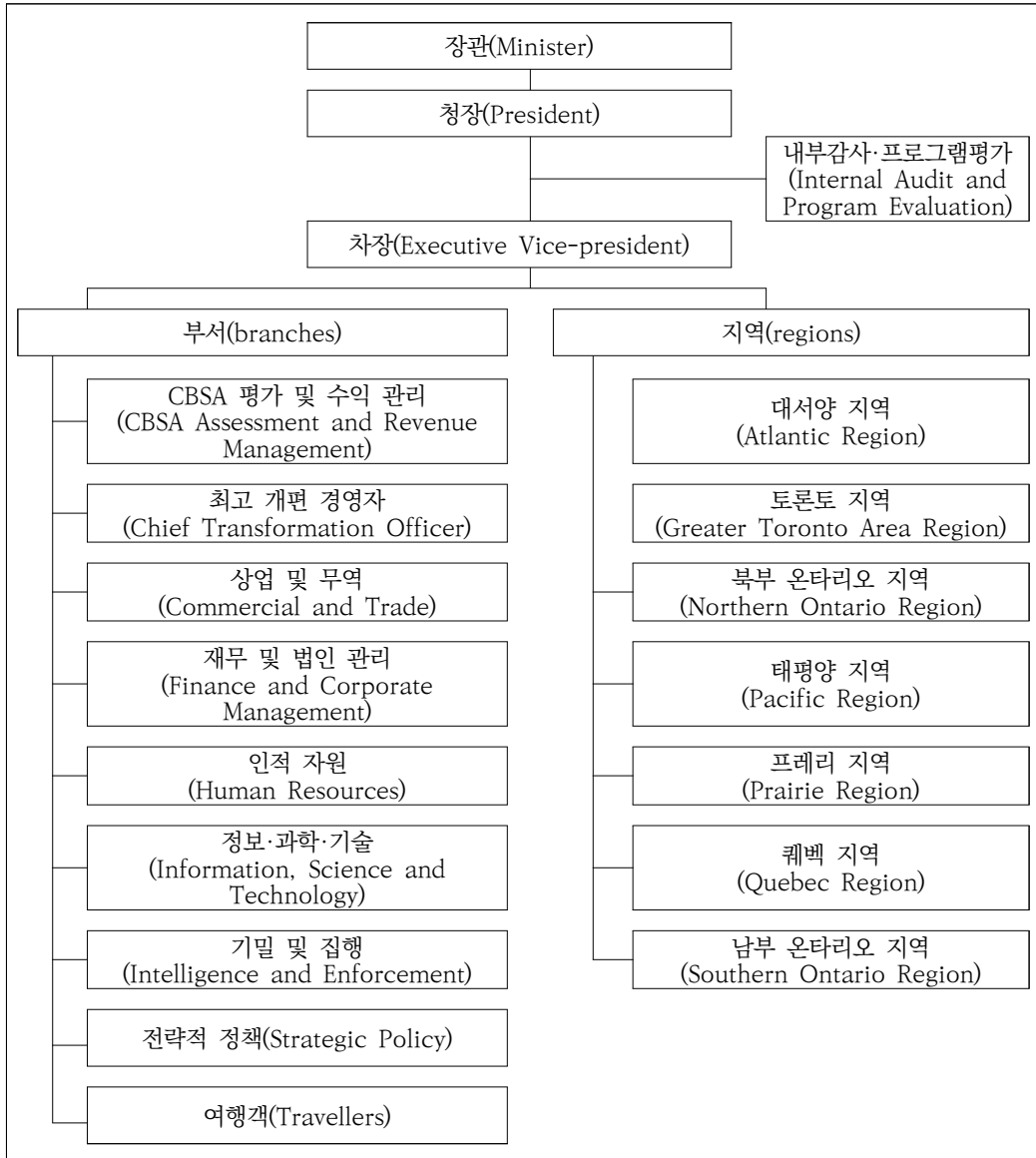
62) 캐나다 공공안전부, <https://www.publicsafety.gc.ca/cnt/bt/index-en.aspx>, 검색일자: 2020. 9. 24.

63)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64)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Act 제6조 제1항

65)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Act 제8조 제1항

[그림 2-1-2] 캐나다 CBSA 조직도



자료: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CBSA는 캐나다 전역의 1,200개 지점과 해외의 39개 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6,500여 명의 공무원을 포함한 1만 4천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⁶⁶⁾
- CBSA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함
 - 117개의 내륙 국경의 관리 및 13개의 공항 운영
 - 주요 항구와 정박지, 보고지에서의 해상 운영 작업
 - 27개의 철도 구역에서 업무 수행
 - 「출입국 관리·난민 보호법(Immigration·Refugee Protection Act)」 위반자들의 조사·수사·체포
 - 전쟁범죄·국가안보사건·조직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사
 - 이민국, 이민 항소, 난민보호, 연방법원 절차에서 CBSA의 이익 대변
 - 3개의 우편물 처리센터에서 국제 우편물 처리·검사
 - 캐나다 주와 영토, 다른 연방정부 부처·기관을 대표하여 90여 개의 법, 규정, 국제협약 집행

2. 통관 관련 법령

- 캐나다는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율법(Customs Tariff)」에서 관세의 부과와 징수, 사람 및 물품의 국경 간 이동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관세의 부과는 「관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이와 같은 과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징수를 관리·집행하는 권한을 CBSA에 부여함⁶⁷⁾
- 「관세법」은 관세 징수의 보장, 캐나다를 오고 가는 사람 및 물품의 이동 통제, 덤핑, 보조금 등 기타 불공정 경쟁 수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

66)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what-quoi-eng.html>, 검색일자: 2020. 9. 24.

67)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actreg-loireg/legislation-eng.html#_s1, 검색일자: 2020. 9. 25.

기 위해 제정됨⁶⁸⁾

- 1867년 최초로 제정된 「관세법」은 법의 세 가지 목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운송, 통신, 무역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1986년 개정됨
- 이후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다가 2009년 안보를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정됨
 - 이에 따라 CBSA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물품 및 사람에 대한 사전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항 및 항구의 위험관리를 수행함
- 「관세율법」은 관세 및 기타 요금의 부과에 관한 법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을 시행함⁶⁹⁾
- 또한 특정 관세 및 기타 요금의 부과에 대한 경감을 규정함

〈표 2-1-1〉 캐나다 「관세법」 및 「관세율법」의 구조

관세법		관세율법		
구분	Part	구분	Part	Division
I	일반	I	해석 및 일반	-
II	수입	II	관세	원산지
III	관세의 산출			관세의 부과
IV	경감 및 환급			관세 대우
V	사람 및 물품 정보의 수집			특별조치, 비상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V.1	징수			

6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agency-agence/actreg-loireg/legislation-eng.html#_s1, 검색일자: 2020. 9. 25.

69) 캐나다 「관세율법」 서문

〈표 2-1-1〉의 계속

관세법		관세율법		
구분	Part	구분	Part	Division
VI	집행	III	관세 감면	관세율의 경감
VI.1	관세법 위반 외의 형사법 집행			관세 완전납부 없는 수입
VII	규정			노후 및 잉여 물품
				추가 경감
		일반		
		IV	규정 및 명령	-
		V	금지 물품	-
		VI	과도기 조항	-
		VII	관련 개정	-
		VIII	결과적 개정	-
		IX	폐지 및 발효	-

자료: 캐나다 「관세법」, 「관세율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캐나다는 CBSA가 세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규정, 정책, 절차 등을 모아 정리한 D Memoranda를 고시하고 있음⁷⁰⁾
 - D Memoranda는 관세 및 통관제도별 관련 법령, 지침 및 일반 정보, 참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2〉 캐나다 D Memoranda의 구조

구분	Operational Groups	구분	Operational Groups
D1	일반	D11	일반 관세율 정보
D2	국제 여행	D13	평가
D3	운송	D14	특별 수입조치법
D4	보세창고, 면세점 및 선상 판매점	D16	부가세
D5	국제 우편	D17	납부 및 반출 절차
D6	환급	D18	소비세 물품
D7	관세 유예 프로그램	D19	다른 정부 부처 법 및 규정
D8	경감 및 일시 수입	D20	수출
D9	수입 금지	D21	국제프로그램
D10	품목분류	D22	금전적 행정제재 체계
		D23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

자료: 캐나다 D Memorand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0)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9. 25.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과세요건

가. 과세물건

- 수입물품은 수입되는 때부터 관세가 납부되거나 의무가 소멸되기 전까지 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⁷¹⁾
 - 수입이란 물품이 캐나다로 수입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이란 넓은 의미로 운송수단, 동물 및 모든 형태의 서류 등을 포함함⁷²⁾

-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며,⁷³⁾ 모든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가장 가까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⁷⁴⁾
 - 모든 수입물품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수입신고를 해야 함⁷⁵⁾

71) 캐나다 「관세법」 제17조 제1항

72) 캐나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73) 캐나다 「관세법」 제18조 제1항

74) 캐나다 「관세법」 제12조 제1항

75) Reporting of Importing Goods Regulations 제3조

나. 납세의무자

- 반출되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물품의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⁷⁶⁾
 -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물품을 소유한 자는 수입자 또는 납세신고자와 공동 및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

-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동안 공동 및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⁷⁷⁾
 -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의 자가 하여야 함⁷⁸⁾
 - 캐나다에 도착한 자의 휴대품 또는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송된 수하물의 경우 캐나다에 도착한 자 또는 운송수단의 책임자
 - 택배 또는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캐나다에 물품을 수출한 자
 - 캐나다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수입된 물품은 당해 운송수단의 책임자
 - 기타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자
 -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가 납부되었거나 물품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⁷⁹⁾
 - 수입신고 전에 파손 또는 분실되거나 수입신고 후 세관, 선적용 창고, 보세창고, 면세점 또는 캐나다 내에서 운송하는 자가 수령하기 전에 파손됨
 - 수출되는 캐나다 밖의 장소에서 출발하지 않음
 - 세관, 선적용 창고, 보세창고, 면세점에서 수령함
 - 캐나다 내에서 운송하거나 운송하도록 하는 자가 수령함
 - 수출됨
 - 반출됨

76) 캐나다 「관세법」 제17조 제3항

77) 캐나다 「관세법」 제18조 제2항

78) 캐나다 「관세법」 제12조 제3항

79) 캐나다 「관세법」 제18조 제2항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납부되거나 물품이 상기와 같은 상태임은 납부일 또는 상기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증명되어야 함⁸⁰⁾
- 또한 캐나다 내에서 물품을 운송하거나 운송하도록 하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반출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⁸¹⁾
 - 다음의 경우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며 그 외의 경우 물품을 운송하거나 운송하도록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
 - 세관공무원에게 또는 배송을 위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이 수입자, 화주 또는 수하인의 사업장으로 인도된 경우
 - 다만 물품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수입신고인은 관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운송 중에 파손됨
 - 세관, 선적용 창고, 보세창고, 면세점에서 수령함
 - 선박의 저장고 또는 운송수단 용품으로 운송수단에 선적됨
 - 캐나다 내에서 운송하거나 운송하도록 하는 다른 자가 수령함
 - 수출됨
 - 물품이 상기와 같은 상태임은 수입신고일이나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하도록 규정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증명되어야 함⁸²⁾
- 선적용 창고, 보세창고, 면세점의 운영인은 창고 또는 면세점에 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소비세, 「특별수입조치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함⁸³⁾
 - 다만 물품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경우 운영인은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80) Reporting of Importing Goods Regulations 제36조

81) 캐나다 「관세법」 제20조 제2항

82) Transportation of Goods Regulations 제36조

83) 캐나다 「관세법」 제28조 제1항

- 창고 또는 면세점 내에 있음
- 창고 또는 면세점에 있는 동안 파손됨
- 운송을 위해 창고 또는 면세점에서 반출됨
- 「총기법」 또는 기타 국회법에 의하여 견본 채취되거나 압수됨
- 세관공무원에 의해 반출됨

다. 관세율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납세신고를 하는 때의 관세율을 적용함⁸⁴⁾
 - 다만 다음과 같이 납세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관세율을 적용함
 - 수입자 또는 화주가 잠정 납세신고를 한 경우
 - 세관공무원에게 또는 배송을 위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이 수입자, 화주 또는 수하인의 사업장에서 인도된 경우
- 수입자 또는 납세신고를 한 자 외의 자가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상황에서 정한 때의 관세율을 적용함
 - 수입신고를 하는 동안 수입신고를 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관세율이 적용됨⁸⁵⁾
 - 수입 후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의 관세율을 적용함⁸⁶⁾
 - 창고 또는 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를 운영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때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름⁸⁷⁾
 - 물품이 선적용 창고에 반입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물품이 보세창고 또는 면세점에 반입된 경우 당해 물품이 반입되는 때

84) 캐나다 「관세법」 제17조 제2항

85) 캐나다 「관세법」 제18조 제3항

86) 캐나다 「관세법」 제20조 제3항

87) 캐나다 「관세법」 제28조 제2항

라. 과세가격

- 관세율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물품의 가치에 의해 산출됨⁸⁸⁾
 - 즉 물품의 가치를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당해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함⁸⁹⁾
- 반면 관세율이 물품 전체 또는 부분의 중량을 기초로 하는 경우 관세는 당해 물품의 순중량을 기초로 부과됨⁹⁰⁾

마. 과세환율

- 「관세법」의 목적상 국세부 장관이 사용하는 캐나다 외의 통화와 캐나다달러의 환율은 수입물품을 캐나다로 직접 운송하는 날에 통용되는 환율로 결정됨⁹¹⁾
 - 「특별수입조치법」의 경우 수입물품을 캐나다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날 또는 캐나다로 직접 운송하는 날 중 당해 법에서 정한 날에 통용되는 환율이 적용됨⁹²⁾
- 해당 일에 통용되는 환율이란 장관에 해당 일에 입항 항구에 전달한 캐나다 외의 통화와 캐나다달러의 환율을 말함⁹³⁾
 - 장관이 전달한 환율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기초하여 설정됨⁹⁴⁾
 - 캐나다 은행에서 장관에게 제시한 가장 최근의 환율

88) 캐나다 「관세율법」 제6조

89) 캐나다 「관세법」 제44조

90) 캐나다 「관세율법」 제7조

91)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3조

92)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4조

93)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5조

94)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6조

- 장관이 지정한 캐나다의 은행에서 장관에게 제시한 가장 최근의 환율
- 영국 런던의 Financial Times에서 제시한 가장 최근의 환율
- 제시된 환율이 둘 이상인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수출국에서 수입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모든 물품의 캐나다달러 가치의 백분율 값으로 제시된 환율을 가중 평균한 값을 기초로 환율을 결정함⁹⁵⁾
- 제시된 환율이 없는 경우 장관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초로 환율을 결정함⁹⁶⁾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가. 납세신고

1) 신고납부 후 반출

- 수입자 또는 화주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음⁹⁷⁾
- 수입자 등은 물품을 반출할 세관에 서면으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⁹⁸⁾
 - Presentation of Persons (2003) Regulations에 따라 캐나다 입국 시 다른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구두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
 - Electronic Commerce Client Requirements Document에 따른 전자문서교환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사양·절차를 따르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납세신고를 하는 자는 물품을 반출하기 전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법」,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95)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7조

96) 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제8조

97)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

98)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3조 제1항

물품의 수입을 금지·관리·규제하는 기타 의회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 면허증, 허가증, 기타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함⁹⁹⁾

- 예상세액이 2,5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상업용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자는 물품을 반출하기 전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완전한 통관송장 또는 완전한 통관송장과 동일한 정보가 있는 상업송장을 제출해야 함¹⁰⁰⁾
 - 다만 상업송장과 일부만 완성된 통관송장이 완전한 상업송장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업용 물품은 판매용, 산업용, 직업용, 상업용, 기관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물품을 말함¹⁰¹⁾
- 일상(casual)물품 또는 예상세액이 2,500캐나다달러 이하인 상업용 물품의 경우 상업송장, 가격표, 판매영수증,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¹⁰²⁾
 - 이러한 서류는 물품명세, 수입단위 등 세관공무원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구두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일상물품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일상물품이란 상업용 물품을 제외하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임¹⁰³⁾
- 일상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조건부 지급을 제공하거나 납세신고를 한 자가 물품 반출 후 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세납부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¹⁰⁴⁾
 - 수입자 또는 화주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부 지급은 다음과 같음
 - 캐나다 정부와 승인·사용요건을 설정하는 협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발급자가 발급한 수입자 또는 화주가 소지자 또는 사용권자인 신용카드로의 송금

99)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4조 제1항

100)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6조 제1항

101)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2조

102)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5조; 제6조 제1항

103)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2조

104)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5.1조

- 여행자 수표, 우편환, 인증수표

- 반면 특정물품은 수입자 또는 화주가 물품을 반출하기 전 물품의 수입을 금지·관리·규제하는 기타 의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 면허증, 허가증, 기타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¹⁰⁵⁾
- 다음의 물품은 관세 납부의무가 없고, 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 따라 구두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납세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선박을 제외한 제9801.00.10호 또는 제9803.00.00호의 물품
 - 제9813.00.00호의 캐나다에서 제조된 상업용 운송수단
 - 제9814.00.00호의 이전에 「관세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납세신고된 상업용 운송수단
 - 우편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9993.00.00호의 임시수입물품
- 다음의 물품은 납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제9801.00.20호 또는 제9803.00.00호의 선박
 - 제9813.00.00호 또는 9814.00.00호의 캐나다에 도착한 자의 수하물(사람과 수하물이 동일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
- 다음의 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음
 - Postal Imports Remission Order 또는 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가 적용되는 물품
 - 우편으로 수입되는 제9816.00.00호의 물품
 - 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 따라 구두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9804.10.00호, 제9804.20.00호 또는 제9804.40.00호의 물품
 - 예상관세액이 2,500캐나다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물품 및 서비스세(GST)를 제외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우편 또는 택배로 캐나다의 수령인에게 배달된 물품으로 물품의 공급자가 「소비세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105)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조

2) 신고납부 전 반출

가) 잠정 납세신고

- 수입자 또는 화주가 잠정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¹⁰⁶⁾
 - 이 경우 물품을 반출한 후 잠정 납세신고를 한 자가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¹⁰⁷⁾

(1) 상업용 물품

- 상업용 물품은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잠정 납세신고를 한 경우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반출할 수 있음¹⁰⁸⁾
 - 수입자 또는 화주가 제공할 담보는 다음의 형식이어야 함¹⁰⁹⁾
 - 현금
 - 인증수표
 -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양도 가능한 채권
 - 캐나다 정부가 채권을 승인할 수 있는 회사로 재무청장이 승인한 보험업으로 등록된 회사, 캐나다 지급협회 회원, 설립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캐나다 보증보험 등에서 담보하는 보증을 수락한 법인, 신용조합, 여왕이 보증금 상환을 보증한 일반인이 발행한 채권
 - 장관이 결정한 금액보다 상업용 물품에 부과된 관세가 적은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가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인 신용카드로 송금(카드의 승인·사용요건을 설정하는 협약을 캐나다 정부와 체결한 발급자인 경우에 한함)

106)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2항 제a호

107)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3항

108)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9조

109)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1조 제1항

- 담보의 금액은 장관이 결정하며 물품이 반출될 세관의 공무원에게 기탁하여야 함¹¹⁰⁾
- 장관이 결정한 일반담보 금액을 기초로 지속하여 물품의 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는 다음의 자에게 기탁되어야 함¹¹¹⁾
 - 물품을 하나의 세관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세관의 세관장
 - 물품을 둘 이상의 세관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세관의 세관장
 - 물품을 둘 이상의 세관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세관장에게 일반담보를 기탁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 잠정 납세신고를 하고 상업용 물품을 반출한 자는 물품을 반출한 후 5업무일 이내에 확정 납세신고를 해야 함¹¹²⁾
 - 다만 예상 관세액이 2,500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 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의 24일 전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
- 또한 잠정 납세신고를 한 자는 회계기간이 끝나는 달의 마지막 업무일 이내에 물품의 관세를 납부해야 함¹¹³⁾
 - 회계기간이란 다음 날짜 중 더 이른 날을 포함하는 매월 25일에 시작하여 다음 달 24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함¹¹⁴⁾
 - 상업용 물품의 납세신고를 한 날
 - 상업용 물품의 납세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

(2) 청사진·설비·군사장비 등

- 다음의 물품은 잠정 납세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반출할 수 있음¹¹⁵⁾

110)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1조 제2항

111)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1조 제3항

112)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조

113)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1조

114)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2조

115)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4조 제1항

- 캐나다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계획, 도면, 청사진
 - 캐나다에 설치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로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국방부가 수입하는 군사 장비 및 이를 수리·유지·변경·시험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수입하는 재료, 구성요소 및 부분품
- 다만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¹¹⁶⁾
- 잠정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물품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관이 결정한 금액을 지정된 세관의 공무원에게 현금 또는 인증수표의 형태의 담보로 기탁해야 함
 - 지정된 세관의 공무원에게 다음의 날짜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함
 - 계획 등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종료일
 - 설비 등의 경우 물품의 설치 종료일
 - 군사장비 등이 분할 선적되는 경우 마지막 선적일
- 잠정 납세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종료일 등으로부터 12개월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¹¹⁷⁾
- 또한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나) 자율심사승인

- 세관공무원에게 또는 배송을 위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이 수입자, 화주 또는 수하인의 사업장에서 인도된 경우 납세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¹¹⁸⁾

116)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4조 제2항

117)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5조

118)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2항 제b호

- 이 경우 물품을 반출한 후 수입자 또는 화주가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¹¹⁹⁾
- 세관공무원 등에게 승인받은 물품이란 수입자와 운송인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eligible) 물품으로 납세신고 전에 반출할 수 있음¹²⁰⁾
 - 적격물품을 납세신고 전에 반출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자가 자율심사인증(Customs Self-Assessment, CSA) 수입자여야 함
 - 운송인이 CSA 운송인이어야 함
 - 물품의 수입신고 시 운송수단의 운영인이 CBSA에서 승인받은 CSA 운송인 코드와 CSA 수입자의 사업자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제시해야 함
 - 적격물품을 상업용 고속도로 운송수단으로 캐나다로 운송하는 경우 운전기사가 Presentation of Persons (2003) Regulations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함
 - 적격물품이란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직접 운송된 상업용 물품으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의회법, 입법규정, 기타 법령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CBSA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면허·기타 유사한 서류가 없는 물품을 말함¹²¹⁾
- 공공안전부 장관은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장관이 규정한 양식¹²²⁾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CSA 인증을 발급할 수 있음¹²³⁾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개인인 경우 캐나다 또는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동업인 경우 동업자 중 최소한 한명이 캐나다 또는 미국에 거주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법인인 경우 본사가 캐나다 또는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지사를 운영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관세법」,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119)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3항

120)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2조

121)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2조

122) 수입자는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의 Schedule 2, 운송인은 Schedule 3 참조

123)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5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은 지급능력이 있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은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의 장부, 기록 및 사업절차는 CBSA이 수입자 또는 운송인의 「관세법」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가 있어야 함
- 추가로 수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자는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수입자는 반출한 물품의 납세신고를 위한 정보를 Electronic Commerce Client Requirements Document에서 규정한 전자데이터교환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사항·절차에 따라 CBSA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장관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CSA 인증을 거절할 수 있음¹²⁴⁾
 - 이 경우 장관은 신청인에게 거절의 결정을 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¹²⁵⁾
- CSA 수입자 또는 CSA 운송인은 CSA 신청 시 제출하였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¹²⁶⁾
 - 다만 CSA 수입자 또는 CSA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변경이 일어난 즉시 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 이름, 상호, 거주지, 영업장소, 지급능력 또는 담보가 변경된 경우
 - 소유권 또는 조직구조가 변경된 경우
 - 사업의 전부 또는 부분을 판매한 경우
 - 수입자의 경우 더 이상 납세신고를 위한 정보를 CBSA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24)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5조

125)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7조 제1항

126)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8조; 제10.81조

- CSA 운송인은 상업용 물품의 상세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상황이 허락하는 한 즉시 장관에게 통지해야 함¹²⁷⁾
 - 캐나다로 운송하는 운송인
 - 납세신고 전 반출을 승인받은 후 40일 이내에 당해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 장관은 요건 위반의 심각성·시정 여부, 경제적 영향, 보안과 안전을 고려하여 CSA 수입자 또는 CSA 운송인의 CSA 인증을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음¹²⁸⁾
- CSA 수입자 또는 CSA 운송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인증을 중단시킬 수 있음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부통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수입자가 더 이상 더 이상 납세신고를 위한 정보를 CBSA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담보의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장관에게 정보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 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이 적격물품이 아니거나 CSA 운송인이 아닌 운송인이 운송을 한 경우
 - 운송인이 캐나다로 운송한 물품이 적격상품이 아니거나 상업용 고속도로 운송 수단으로 캐나다로 운송하는 경우, 운전기사가 Presentation of Persons (2003) Regulations에 따른 인증이 없거나 또는 운송이 승인된 CSA 수입자, 화주 또는 수하인의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인도된 경우
 - 운송인이 상업용 물품의 상세와 함께 상황이 허락하는 한 즉시 통보해야 하는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27)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82조

128)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6조

- CSA 수입자 또는 CSA 운송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득한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거주 요건, 법령 위반 요건, 체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CSA 인증이 중단된 경우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중단을 발생시킨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관은 CSA 인증의 중단을 발생시킨 문제가 시정된 경우 신청에 따라 인증을 복원할 수 있음¹²⁹⁾
 - 수입자 또는 운송인이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장관은 시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¹³⁰⁾

- 장관은 CSA 인증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CSA 수입자 또는 운송인에게 결정을 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¹³¹⁾
 - 인증의 중단 또는 취소는 다음의 날짜 중 더 이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 중단 또는 취소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우편 또는 택배로 통지를 발송하고 15일 후

- 모든 CSA 수입자는 반출된 상업용 물품의 납세신고를 위한 기간을 선택하여 당해 기간 동안 반출한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를 해야 함¹³²⁾
 - 월의 1일부터 시작하여 말일에 끝나는 기간을 선택한 수입자는 물품을 반출한

129)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71조

130)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6조 제3항

131)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7조

132)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3조

달의 다음 달 18일까지 당해기간 동안 반출한 물품의 납세신고를 해야 함

- 월의 19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달의 18일에 끝나는 기간을 선택한 수입자는 당해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마지막 업무일까지 당해기간 동안 반출한 물품의 납세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예상 관세액이 2,500캐나다달러 이하인 상업용 물품의 납세신고는 물품이 반출된 달의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음¹³³⁾
- CSA 수입자는 반출된 상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함¹³⁴⁾
- 1일부터 18일까지 반출된 물품은 달의 마지막 업무일까지
 - 19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물품은 다음 달의 마지막 업무일까지

다) 우편 및 택배

- 우편 또는 택배로 수입되는 물품은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 전에 반출할 수 있음¹³⁵⁾
-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 전 반출할 수 있는 택배 물품은 다음에 한함¹³⁶⁾
 - 예상 관세액이 2,500캐나다달러 이하인 물품
 - 물품의 수입을 금지·관리·규제하는 의회법에 의해 금지, 관리 또는 규제되지 않는 물품
 - 택배원이 보세운송인인 경우
 - 우편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제공 없이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 전에 반출할 수 있음¹³⁷⁾
 - 예상 관세액이 2,5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상업용 물품
 - 물품의 수입을 금지·관리·규제하는 의회법에 의해 금지, 관리 또는 규제되는 물품

133)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31조

134)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10.4조

135)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4항

136)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1조

137)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8조

- 납세신고 전에 반출된 물품은 물품이 반출된 달의 다음달 24일 이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¹³⁸⁾
 - 다음의 경우 택배로 수입된 일상물품을 반출한 후 인증을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화주가 물품의 납세신고를 해야 함¹³⁹⁾
 - 택배원이 Persons Authorized to Account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에 따라 인증 받은 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¹⁴⁰⁾
 -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택배로 수입된 상업용 물품을 반출한 후 수입자 또는 화주가 물품의 납세신고를 해야 함¹⁴¹⁾
 - 택배원이 기간 내에 물품의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를 할 것이라는 서면 약속을 제출한 경우¹⁴²⁾
 -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택배원이 물품 수입신고 2업무일 후 및 물품 반출 30일 전 이내에 상업용 물품의 선적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을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 장관, 관세청장 등의 요청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전 반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 다만 우편물의 경우 물품이 수입자 또는 화주에게 배송된 경우 물품이 반출된 때에 납세신고된 것으로 간주함¹⁴³⁾
- 납세신고를 한 자는 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의 마지막 업무일까지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¹⁴⁴⁾
 - 우편물은 캐나다 우편 법인이 반출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의 마지막 업무일까지 현금 또는 인증수표로 관세를 납부해야 함

138)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4조

139)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5항 제a호

140)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3조

141)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5항 제b호

142)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2조

143)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제5.1항

144)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 제7.5조

나. 결정, 재결정 및 추가 재결정

-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때 또는 그 전에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¹⁴⁵⁾
 - 이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결정은 직권 재결정·추가 재결정, 재결정·추가 재결정의 청구,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4년 내에 재결정을 할 수 있음¹⁴⁶⁾
 - 세관공무원이 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심사, 조사, 원산지 검증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공공안전부 장관이 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결정은 결정·추가 재결정의 청구,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¹⁴⁷⁾

- 또한 심사, 조사, 원산지 검증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4년 내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하여 추가 재결정을 할 수 있음¹⁴⁸⁾
 - 다만 결정일로부터 37개월 초일부터 48개월 말일까지 관세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 추가 재결정을 할 수 있음¹⁴⁹⁾
 - 미국·캐나다·이스라엘에서 수입된 물품을 납세신고 시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가 환급된 경우

145) 캐나다 「관세법」 제58조

146)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1항 제a호

147)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6항

148)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1항 제b호

149) Determination, Re-Determination and Further Re-Determin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Regulations 제2조

-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결정의 오류에 따라 과오납된 관세가 환급된 경우
- 캐나다에서 사용되기 전 관세율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매·사용·처분되어 관세가 환급된 경우
- 추가 재결정은 결정·추가 재결정의 청구,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¹⁵⁰⁾
- 결정,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한 세관공무원은 지체 없이 수입자, 화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그 이유를 포함한 통지를 해야 함¹⁵¹⁾
 - 다만 FTA에 따른 특혜대우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결정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서명한 자에게도 통지해야 함
 - 또한 CEFTA, CUFTA, CEFT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여 원산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도 통지해야 함
- 결정,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물품에 대한 부족관세 또는 추가 부족관세를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함¹⁵²⁾
 -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부족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세관공무원이 납세신고 시 또는 그 전에 결정한 결과로 발생한 부족관세에는 수입자 등의 납세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음¹⁵³⁾
- 반면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이 있을 후 언제든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할 수 있음¹⁵⁴⁾

150)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6항

151)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2항, Determination, Re-Determination and Further Re-Determin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Regulations 제3조

152)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3항; 제4항

153)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제5항

154) 캐나다 「관세법」 제61조 제1항

- 다음의 경우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에 대한 항소가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할 수 있음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
 - 납세신고를 한 자가 「관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이 국제무역재판소, 연방항소법원,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 다음의 경우 관세청장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이 국제무역재판소, 연방항소법원, 대법원, 관세를 경감하는 관세청장의 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일 또는 이전에 수입한 유사물품의 원산지 또는 품목분류와 관련있는 경우
 - 수입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일 또는 이전에 수입한 다른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있는 경우
- 관세청장은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자, 화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그 이유를 포함한 통지를 해야 함¹⁵⁵⁾
- 다만 FTA에 따른 특혜대우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결정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서명한 자에게도 통지해야 함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물품에 대한 추가 부족관세를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관세와 이자를 환급받아야 함¹⁵⁶⁾
- 통지를 받은 자가 항소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부족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함

155) 캐나다 「관세법」 제61조 제2항, Determination, Re-Determination and Further Re-Determin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Regulations 제4조

156) 캐나다 「관세법」 제65조 제1항

- 관세청장의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은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¹⁵⁷⁾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관세법」에서는 관세(duties)를 「관세율법」, 「2001년 소비세법(Excise Act, 2001)」, 「소비세법(Excise Tax Act)」, 「특별수입조치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세금이라고 정의함¹⁵⁸⁾
 -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외에 물품 및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소비관세(Excise Duty), 소비세(Excise Taxes)가 부과됨¹⁵⁹⁾
 - 「특별수입조치법」에서는 수입규제조치로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함

가. 물품 및 서비스세(GST)

-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물품가격의 5%를 물품 및 서비스세로 납부해야 함¹⁶⁰⁾
 - 물품가격이란 물품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함¹⁶¹⁾
- 물품이 참여주(participating province)로 수입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참여주에 거주하는 경우 물품 및 서비스세에 추가하여 참여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¹⁶²⁾

157) 캐나다 「관세법」 제62조

158) 캐나다 「관세법」 제2조

159) 물품 및 서비스세와 소비세는 「소비세법」에 따라, 소비관세는 「2001년 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됨(GST/HST Memorandum 1-4, Excise and GST Rulings and Interpretation Services)

160) 캐나다 「소비세법」 제212조

161) 캐나다 「소비세법」 제215조

162) 캐나다 「소비세법」 제212.1조 제2항

- 참여주란 물품 및 서비스세에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를 포함한 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를 부과하는 주를 말함¹⁶³⁾
 -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HST를 채택함
- 다만 납세의무자가 참여주에 거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관세법」에 따라 납세신고된 자동차, 이동주택(mobile home), 부동주택(floating home)이 캐나다 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점유된 경우¹⁶⁴⁾
 - 노바스코샤 해외투자지역, 뉴펀들랜드 해외투자지역의 거주자가 수입한 경우 (해외투자활동 중에 소비·사용·공급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해외투자지역이 아닌 참여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함¹⁶⁵⁾

〈표 2-11-1〉 GST·HST 세율

(단위: %)

구분	주	연방과세 (GST)	주 과세	통합세율 (HST)
비 참여주	앨버타(Alberta)	5	-	-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5	-	-
	매니토바(Manitoba)	5	-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5	-	-
	누나부트(Nunavut)	5	-	-
	퀘벡(Quebec)	5	-	-
	서스캐처원(Saskatchewan)	5	-	-
	유콘(Yukon)	5	-	-

163)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gst-hst-businesses/definitions-gst-hst.html#province>, 검색일자: 2020. 12. 9.

164) 캐나다 「소비세법」 제212.1조 제3항

165) 캐나다 「소비세법」 제212.1조 제4항

〈표 2-II-1〉의 계속

구분	주	연방과세 (GST)	주 과세	통합세율 (HST)
참여주	온타리오(Ontario)	5	8	13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5	7	12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5	7	12
	노바스코샤(Nova Scotia)	5	7	1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5	7	12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gst-t-hst-businesses/charge-collect-which-rate.html>, 검색일자: 2020. 12.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만 다음의 물품은 물품 및 서비스세가 과세되지 않음¹⁶⁶⁾

- 제9801호, 제9802호, 제9803호, 제9804호(제9804.30.00호 제외), 제9805호, 제9806호, 제9807호, 제9810호, 제9811호, 제9812호, 제9815호, 제9819호, 제9823.60호, 제9823.70호, 제9823.80호, 제9823.90호에 분류되는 물품
- 외국에서 우승 또는 수여·수취·승인되거나 영웅적 행동·용기 등에 대하여 캐나다 밖의 사람으로부터 기부된 메달, 트로피, 기타 상으로 통상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물품
-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물로 다음의 것
 -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기관·대표단이 수입하는 것
 - 운송비용을 제외한 대가 없이 무역위원회,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수입하는 것
- 캐나다의 자선단체 또는 공공협회에 기부된 것으로 자선단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
- 운송비용을 제외한 대가 없이 비거주자가 하자보수에 따라 공급하는 대체물품
- 면세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
- 우편 또는 택배로 캐나다 내 주소의 수령인에게 송부된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20캐나다달러 미만인 것
- 택배로 운송된 물품으로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수입되고, 물품가격이 40캐나다달러 미만인 것

166) 캐나다 「소비세법」 제213조, Schedule VII

- 「소비세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록인이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가공·유통·저장된 후 수출되는 것
 -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다른 물품에 포함·변형·부착·결합·조립된 것
 -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다른 물품의 가공 과정에 직접 소비·사용되는 재료(연료, 윤활유, 플랜트 장비는 제외)
-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컨테이너
- 현금 또는 결제수단임이 증명되는 증명서, 기타 서류
- 「소비세법」에 따라 수출유통센터 증명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수입한 것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납세신고하는 때에 인증이 당해 시점에 유효함을 증명하고, 인증번호·발효일·만료일을 공개한 경우
 - 인증받은 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대마초 속의 삼의 낱알, 씨앗, 잎이 없는 줄기, 꽃, 가지로 다음을 충족하는 물품
 - 낱알, 씨앗의 경우 멸균 외에 추가 가공되지 않거나 파종을 위한 처리가 되지 않고, 야생 조류나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준비·판매되지 않은 것
 - 싹을 틔울 수 있는 낱알, 씨앗의 경우 Industrial Hemp Regulations에 따른 산업용 삼인 것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or the Cannabis Act에 따라 수입된 것
- Assisted Human에 따른 체외 배아

나. 소비관세(Excise Duty) 및 소비세(Excise Taxes)

- 특정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 화주 또는 기타 관세의 납세의무를 가진 자는

소비관세(Excise Duty) 또는 소비세(Excise Taxes)를 납부해야 함

- 소비관세는 「2001년 소비세법」 및 「소비법(Excise Act)」에 따라, 소비세는 「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됨
- 담배 조제품 및 생담뱃잎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화주, 기타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수입된 경우 소비관세가 부과됨¹⁶⁷⁾
 - 또한 시가가 수입자 등에 의해 수입된 경우 소비관세에 부가하여 추가 소비관세를 납부해야 함¹⁶⁸⁾
 - 반면 수입된 제조담배가 면세점에서 인도되고, “duty paid Canada droit acquitté” 라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특별 소비관세율이 적용됨¹⁶⁹⁾

〈표 2-11-2〉 담배 조제품 및 생담뱃잎 소비관세율¹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품목	단위	세율 ¹⁾	
소비관세율	퀄런	/5개비	0.62104	
	담배스틱	/개비	0.12421	
	제조담배(퀄런, 담배스틱 제외)	/50g	7.76299	
	시가	/1,000개비	27.03346	
	생담뱃잎	/kg	1.572	
추가 소비관세율	시가 ²⁾	/개비	0.09717	
		/개비당 가격	88%	
특별 소비관세율	소인이 찍히지 않은 면세점에 인도된 제조 담배	퀄런	/개비	0.12421
		담배스틱	/개비	0.12421
		기타 제조담배	/50g	7.76299

주: 1. 2020년 기준

1) 2020년 4월 이후 적용되는 세율이며, 세율은 매해 4월 조정됨

2) 소비관세율에 추가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됨

자료: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Schedule 1 내지 3;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rates/excise-duty-rates.html>, 검색일자: 2020. 12. 10.

167)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42조 제1항 제b호

168)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43조 제b호

169)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53조 제1항

- 증류주, 포도주, 맥주가 수입되는 때에 「관세율법」 또는 기타 관세관련 의회법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2001년 소비세법」 또는 「소비법」에 따른 소비관세가 부과됨¹⁷⁰⁾
-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소비관세는 증류주, 포도주, 맥주가 캐나다에서 생산·제조·포장되는 때에 부과되는 소비관세 금액과 동일함
- 증류주를 면허받은 사용자가 운송하거나 수입한 수입 증류주는 소비관세에 추가하여 특별소비관세가 부과됨¹⁷¹⁾

〈표 2-11-3〉 증류주, 포도주, 맥주 소비관세율¹⁾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품목	단위	세율 ¹⁾	
소비관세율	증류주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7% 미만	/l	0.319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7% 이상	/l(무수에틸알코올)	12.610
	포도주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1.2% 미만	/l	0.021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1.2%~7%	/l	0.319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7% 이상	/l	0.665
	맥주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1.2%	/hl	2.794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1.2%~2.5%	/hl	16.83
		무수에틸알코올 중량 2.5% 이상	/hl	33.66
	특별 소비관세율 ²⁾	증류주	면허받은 사용자가 운송 또는 수입한 수입 증류주	/l(무수에틸알코올)

주: 1. 2020년 기준

1) 2020년 4월 이후 적용되는 세율이며, 세율은 매해 4월 조정됨

2) 소비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해마다 조정되지 않음

자료: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Schedule 4 내지 6, 캐나다 「소비법」 Schedule II;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rates/excise-duty-rates.html>, 검색일자: 2020. 12. 10.

- 대마 생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화주 또는 기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비관세를 납부해야 함¹⁷²⁾

170) 캐나다 「관세율법」 제21.1항 제1호, 제21.2항 제1호, 제2호, 제21.3조

171)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133조 제1항

172)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158.21조

- 납부해야 하는 소비관세는 함유성분의 중량을 기초로 한 정액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대마 생산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증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함
- 특정 주로 수입하는 대마 생산품은 소비관세에 부가하여 추가 소비관세가 부과됨¹⁷³⁾

〈표 2-11-4〉 대마 생산품 소비관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

구분	품목	정액세율		증가세율
		단위	세율	
소비관세율	건조·신선한 대마, 대마초, 대마씨의 경우 다음의 합	/g(봉오리 부분)	0.25	2.5
		/g(봉오리가 아닌 부분)	0.075	2.5
		/개(발아 가능한 씨)	0.25	2.5
		/개(생장 가능한 대마초)	0.25	2.5
	기타 대마 생산품	/mg(THC ¹⁾)	0.0025	0
추가 소비관세율 ²⁾	건조·신선한 대마, 대마초, 대마씨의 경우 다음의 합	/g(봉오리 부분)	0.75	7.5
		/g(봉오리가 아닌 부분)	0.225	7.5
		/개(발아 가능한 씨)	0.75	7.5
		/개(생장 가능한 대마초)	0.75	7.5
	기타 대마 생산품	/mg(THC ¹⁾)	0.0075	0

주: 1)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2) 앨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서스캐처원, 유콘에서 부과

자료: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Schedule 7;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rates/excise-duty-rates.html>, 검색일자: 2020. 12. 10.

- 자동차, 에어컨, 석유조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화주, 기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¹⁷⁴⁾
- 자동차는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스테이션왜건, 벤, SUV는 포

173) 캐나다 「2001년 소비세법」 제158.22조

174) 캐나다 「소비세법」 제23조

합하지만 10인승 이상의 벤, 구급차 또는 영구차를 제외함¹⁷⁵⁾

- 에어컨은 자동차, 스테이션왜건, 벤, 트럭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자동차 등과 분리되어 수입되었는지 불문함¹⁷⁶⁾

〈표 2-11-5〉 자동차, 에어컨, 석유조제품 소비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품목		단위	세율
자동차	100km당 평균 연료소비량 ¹⁾ 이 13l 이상 14l 미만인 것	/개	1,000
	100km당 평균 연료소비량이 14l 이상 15l 미만인 것	/개	2,000
	100km당 평균 연료소비량이 15l 이상 16l 미만인 것	/개	3,000
	100km당 평균 연료소비량이 16l 이상인 것	/개	4,000
에어컨(자동차, 스테이션왜건, 벤, 트럭에 사용되는 것)		/개	100
석유조제품	유연휘발유	/l	0.11
	유연 항공휘발유	/l	0.11
	무연휘발유	/l	0.10
	무연 항공휘발유	/l	0.10
	경유 연료	/l	0.04
	항공 연료유	/l	0.04

주: 1) 시내 연비×0.55+고속도로 연비×0.45로 계산
 자료: 캐나다 「소비세법」 Schedule 1

175) 캐나다 「소비세법」 Schedule 1 제6조 제1항

176) 캐나다 「소비세법」 Schedule 1 제7조

Ⅲ.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

- 물품에 대한 비율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산출되는데,¹⁷⁷⁾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관세평가라고 함¹⁷⁸⁾
 - 다만 「2001년 소비세법」, 「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또는 세금은 물품의 중량에 따라 관세 등이 산출되므로 제외함¹⁷⁹⁾
- 이와 같이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평가는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임¹⁸⁰⁾
 - 과세가격이 저가로 결정되면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가로 결정되면 국제무역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따라서 캐나다와 WTO 협정국은 모든 물품의 가격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평가되

177) 캐나다 「관세법」 제44조

178) 관세청 관세용어 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188>, 검색일자: 2020. 9. 29.(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p. 73에서 재인용)

179) 캐나다 「관세법」 제44조

180) 김기인, 『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289(신상화 외(2017), p. 73에서 재인용)

도록 GATT 제7조¹⁸¹⁾의 이행에 관한 WTO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¹⁸²⁾

- WTO 관세평가협정은 상업적 현실에 따라 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하고 통일적이며 중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임의적 또는 가공적인 과세가격의 사용을 금지함¹⁸³⁾
- 캐나다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관세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관세평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동일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함¹⁸⁴⁾
- 과세가격은 순차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관세평가 전 수입업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산정가격이 공제가격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상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잔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가. 거래가격

1) 거래가격의 적용

- 물품이 캐나다의 구매자에게 캐나다로 수출되기 위하여 판매된 경우 물품의 관세

18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관세평가의 일반절차를 규정한 조항(정다운·양지영·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p. 53)

182)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valuation-valeur/customs-val-douane-eng.html>, 검색일자: 2020. 9. 26.

183)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

184) 캐나다 「관세법」 제47조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임¹⁸⁵⁾

- 따라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① 캐나다의 구매자가 ② 캐나다로 수출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캐나다의 구매자란 거주자,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를 말하며,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함¹⁸⁶⁾
 - 캐나다 내의 사람에 의해 소비·사용·향유되지만 판매되지는 않는 경우
 -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거주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캐나다 내의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수입 당시 캐나다 내에 구매자는 없지만 비거주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캐나다로 물품을 운송하였으므로 이를 캐나다로의 수출판매로 봄¹⁸⁷⁾
 - 반대로 수입 이전에 캐나다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비거주자와 캐나다의 구매자의 거래가격을 수출판매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함¹⁸⁸⁾

- 반면 캐나다로의 수출판매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수입자는 송장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문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¹⁸⁹⁾
 - 물품이 캐나다로 수입되기 전 2회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거래를 수출 판매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¹⁹⁰⁾
 - 이러한 경우 캐나다는 외국에서 캐나다로 물품을 이전시키는 거래를 수출을 위한 판매로 보아 당해 거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

185)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1항

186) Valuation for Duty Regulations 제2.1조

187) Memorandum D13-4-2 Customs Valuation: Goods Sold for Export to Canada

188) Memorandum D13-1-3 Customs Valuation: Purchaser in Canada

189) Memorandum D13-4-1 Transaction Value Method of Valuation

190) Memorandum D13-4-2 Customs Valuation: Goods Sold for Export to Canada

2) 거래가격의 산출

- 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이 캐나다로 수출될 때 물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확인하고, 추가해야 하거나 공제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여 결정됨¹⁹¹⁾
- 물품이 수입된 후에 적용되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환불 또는 기타 경감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¹⁹²⁾

가) 실제지급가격

- 캐나다로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물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말함¹⁹³⁾
- 따라서 물품과 관련된 계약이나 송장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됨¹⁹⁴⁾
- 보관비용, 부채정산, 보증금 등의 간접지급금액은 물품에 대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함¹⁹⁵⁾
- 캐나다로의 수출을 위한 판매시점에 해외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보관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3자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해 보증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간주됨
-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수입물품에 대

191)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2항

192)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c)

193) 캐나다 「관세법」 제45조 제1항

194) Memorandum D13-4-3 Customs Valuation: Price Paid or Payable

195) Memorandum D13-4-3 Customs Valuation: Price Paid or Payable

- 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일부로 포함됨
- 특정 조건하에서 가격상승을 허용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고 수출판매 후 실제지급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인상은 상품에 대해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됨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 당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및 세금은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의 일부로 취급됨

나) 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송비 등이 물품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함¹⁹⁶⁾
-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음¹⁹⁷⁾

〈표 2-III-1〉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되는 요소

가산요소
① 구매자에 의해 발생하는 물품과 관련된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구매자에 의해 발생하는 물품과 관련된 포장비용 및 요금
③ 구매자가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물품 또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기타 물품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금형, 주형 및 기타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모든 재료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도안, 계획 및 스케치
④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한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⑤ 수입물품의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익
⑥ 물품을 수출지로부터 캐나다로 직접 운송하기 위한 지점까지의 운송비용, 적재·하역 및 취급비용, 기타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보험료

자료: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196)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197)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6항

(3) 수수료 및 중개료

- 판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품과 관련된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됨¹⁹⁸⁾
 - 수수료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물품가액의 백분율 형태의 대가를 말하며, 중개료란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¹⁹⁹⁾

- 대리인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판매자를 대리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됨²⁰⁰⁾
 -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 물색, 정보수집, 물품 보관 및 배송준비 등을 행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포함됨
 - 구매수수료는 구매대리인의 공급업체 물색, 주문, 샘플수집, 상품검사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한 보수로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 다만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중개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 제3자로 양 당사자 간의 연락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료를 받으며,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됨²⁰¹⁾
 - 중개료를 판매자가 지급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일부 또는 단독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가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
 -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에 참여한 대가로 중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통관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의미하지 않음

198)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199) Memorandum D13-4-12 Commissions and Brokerage

200) Memorandum D13-4-12 Commissions and Brokerage

201) Memorandum D13-4-12 Commissions and Brokerage

(4) 포장비용

- 물품을 캐나다로 운송하기 위한 상태로 준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포장비용 및 요금은 물품에 대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됨²⁰²⁾
 - 통관 목적을 위하여 수입물품의 일부로 취급되는 상자, 케이스, 용기 및 덮개의 비용을 포함함
 - 캐나다로 운송하기 위한 상태로 준비하기 위한 비용을 결정할 때 재료비와 인건비 또한 고려되어야 함²⁰³⁾

(5)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차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²⁰⁴⁾
 -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①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등 ②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등 ③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 ④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수행된 것을 말함
- 생산지원비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입물품에 배분되어 가산되어야 함²⁰⁵⁾
 - 생산지원이 상기 ① 내지 ③의 물품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함²⁰⁶⁾
 -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물품을 취득 또는 임대하여 공급한 경우 구매자가 취득 또는 임대한 비용에 생산지까지의 운송비용을 추가한 금액
 - 구매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취득 또는 임대하여 공급한 경우 당해 특

202)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03) Memorandum D13-4-7 Adjustments to the Price Paid or Payable

204)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05)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06) Valuation for Duty Regulations 제4조 제1항

- 수관계인이 취득 또는 임대한 비용에 생산지까지의 운송비용을 추가한 금액
- 구매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비용에 수입물품의 생산지까지의 운송비용을 추가한 금액
- 생산지원이 상기 ④의 용역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함²⁰⁷⁾
 -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 등을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 또는 임대한 경우 구매자가 취득 또는 임대한 금액
 -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 등을 구매자가 특수관계인로부터 취득 또는 임대한 경우 당해 특수관계인이 취득 또는 임대한 금액
 - 기술 등을 일반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본을 대중이 취득하는 금액
 - 구매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경우 생산비용

(6)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한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²⁰⁸⁾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에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급은 포함하지만 캐나다에서 물품을 복제할 권리에 대한 지급은 제외함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 ①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②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인지 고려하여 이를 충족하여야 함²⁰⁹⁾
 - 물품과의 관련성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가 물품가격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등 수입물품과 관련있는 경우를 말함
 -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시기는 물품과 관련있는지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7) Valuation for Duty Regulations 제4조 제2항

208)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09) Memorandum D13-4-9 Royalties and Licence Fees

- 반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수출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됨

(7)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의 재판매, 처분, 사용에 대한 사후이익 중 일부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추가됨²¹⁰⁾
- 재판매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입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 또는 사용이란 상품의 저장, 양도, 이용, 소비 또는 기타 처분을 말함²¹¹⁾

(8) 운송비용 및 보험료

- 물품을 수출지로부터 캐나다로 직접 운송하기 위한 지점까지의 운송비용, 적재·하역 및 취급비용, 기타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보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조정됨²¹²⁾
- 기타 운송과 관련된 비용에는 통관업자 및 화물운송업체 수수료, 수출문서 수수료, 검사비용, 중량 및 측정 증명서, 창고 보관 수수료, 냉장 비용 및 온도 기록 장치 사용 수수료 등이 포함됨²¹³⁾
- 캐나다로의 직접운송장소에 따라 운송비용 및 보험료의 과세가격에서의 처리방식이 달라지며, 직접운송장소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거래가격에 포함됨²¹⁴⁾
- 운송업체의 변경, 물품의 통합 및 분리 등 운송상 이유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적지는 직접운송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 그러나 물품을 변경 또는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추가하는 경우, 환적 외의 목적으

210)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11) Memorandum D13-4-13 Post-importation Payments or Fees(Subsequent Proceeds)

212)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a)

213) Memorandum D13-3-3 Transportation and Associated Costs

214) Memorandum D13-3-4 Place of Direct Shipment

로 보관되는 경우 등은 외국세관의 통제하에 있더라도 당해 중간지점을 직접운송장소로 간주함

다) 공제요소

- 직접운송장소 이후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 및 관세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됨²¹⁵⁾
 - 수출지에서 캐나다로 직접운송하기 위한 장소 이후에 발생하는 운송비용, 선적·하역 및 취급비용, 기타 운송 관련 비용과 보험료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됨
 - 또한 다음과 같은 금액, 요금, 비용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분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함
 - 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보수 또는 기술 지원에 대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금액, 요금, 비용
 - 관세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의 수입 또는 캐나다 내에서의 물품 판매를 이유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관세 및 세금

3) 거래가격의 인정요건

-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에서 배제됨²¹⁶⁾
-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이 없어야 함²¹⁷⁾
 - 다만 다음의 제한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제한으로 보지 않음
 - 법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
 -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을 한정하는 제한

215)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5항 (b)

216) Memorandum D13-4-4 Limitations on the Use of Transaction Value Method

217)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1항 (a)

-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아야 함²¹⁸⁾
 - 다만 수입물품의 마케팅이나 생산에 관련된 특정 조건이나 상황으로 거래가격이 과세 가격으로 배제되지 않음²¹⁹⁾

- 구매자가 물품을 재판매, 처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함²²⁰⁾
 - 사후귀속이익이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²²¹⁾
 - 충분한 정보란 금액의 정확성을 설정하는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²²²⁾

- 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때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당해 관계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²²³⁾
 -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로 봄²²⁴⁾
 - 혈연, 결혼, 사실혼, 입양으로 연결된 경우
 - 일방이 상대방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각자 동일한 두 개의 기업,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서로 동업자인 경우
 - 일방이 상대방의 고용주인 경우

218)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1항 (b)

219) Memorandum D13-4-4 Limitations on the Use of Transaction Value Method

220)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1항 (c)

221) Memorandum D13-4-4 Limitations on the Use of Transaction Value Method

222) 캐나다 「관세법」 제45조 제1항

223)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1항 (d)

224) 캐나다 「관세법」 제45조 제1항

- 동일인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간접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 일방이 상대방을 직·간접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 제3자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 보유, 통제하는 경우
 - 일방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 보유, 통제하는 경우
-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물품과 동시에 수출되는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과 유사함을 입증하여야 함²²⁵⁾

나.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물품의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²²⁶⁾
- 동일물품이란 물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 평가대상 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평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물품임²²⁷⁾
 - 또한 평가대상 물품이 생산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생산된 것을 말함
 - 그러나 캐나다에서 수행된 기술, 설계, 도안, 디자인, 계획 또는 스케치를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한 물품은 제외됨
- 물품의 과세가격이 거래가격 또는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²²⁸⁾
- 유사물품이란 평가대상 물품과 구성품의 재료 및 특성이 유사하고 동일한 기능

225) 캐나다 「관세법」 제48조 제3항

226)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1항

227) 캐나다 「관세법」 제45조 제1항

228) 캐나다 「관세법」 제50조 제1항

-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상호호환이 가능한 물품임²²⁹⁾
- 또한 평가대상 물품이 생산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생산된 것을 말함
 - 그러나 캐나다에서 수행된 기술, 설계, 도안, 디자인, 계획 또는 스케치를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한 물품은 제외됨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은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출되어야 하며,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수준과 양으로 판매되어야 함²³⁰⁾
 - 이런 조건에 따른 판매가 없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²³¹⁾
 -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수준이지만 수량이 다른 경우
 - 평가대상 물품과 거래수준은 다르지만 수량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평가대상 물품과 거래수준 및 수량이 다른 경우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평가대상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해 운송거리 및 운송수단, 거래수준 또는 수량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함²³²⁾
 - 이러한 조정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할 수 없음²³³⁾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최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²³⁴⁾
 - 이는 거래수준 및 수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거래수준 또는 수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모두에 적용됨

229) 캐나다 「관세법」 제45조 제1항

230)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231)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2항

232)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2항

233)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4항; 제50조 제2항

234) 캐나다 「관세법」 제49조 제5항; 제50조 제2항

다. 공제가격

- 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공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²³⁵⁾
 - 공제가격은 평가대상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 후 캐나다에서 재판매된 단가에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됨

- 평가대상 물품의 공제가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단가가 순차적으로 적용됨²³⁶⁾
 - 평가대상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캐나다 내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된 때 또는 실질적으로 수입된 때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가
 - 평가대상 물품 등이 캐나다 내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이지만 수입된 때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수입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가
 - 평가대상 물품 등이 캐나다 내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후 90일 이전에 판매되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조립, 포장,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수입 후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가
 - 이 단가는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평가대상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용됨

- 평가대상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재판매 단가는 첫 번째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생산지원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 없이 판매된 단가를 말함²³⁷⁾
 - 또한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는 물품의 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공제가격은 평가대상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재판매 단가의 총액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조정됨²³⁸⁾

235) 캐나다 「관세법」 제51조 제1항

236) 캐나다 「관세법」 제51조 제2항

237) 캐나다 「관세법」 제51조 제3항

238) 캐나다 「관세법」 제51조 제4항

- 캐나다에서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위당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평가대상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캐나다 내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 중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비용
- 물품과 관련하여 캐나다로의 직접운송장소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 중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비용
- 물품과 관련하여 캐나다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중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비용
- 캐나다 내에서 조립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후 판매된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조립, 포장, 추가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이러한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당해 단가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음

라. 산정가격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산정가격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²³⁹⁾
 -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가격 대신 산정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가대상 물품의 산정가격은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 생산 또는 기타 가공 비용과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산한 가격임²⁴⁰⁾
 - 이윤 및 일반경비는 캐나다로 수출판매되는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금액을 말함
- 또한 산정가격에는 캐나다로의 운송을 준비하기 위한 포장비용과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되었는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됨²⁴¹⁾

239) 캐나다 「관세법」 제52조 제1항

240) 캐나다 「관세법」 제52조 제2항

241) 캐나다 「관세법」 제52조 제3항

- 평가대상 물품의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공급한 기술, 설계, 도안, 디자인, 계획 또는 스케치와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함

마. 잔존방법(Residual Method)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제가격,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유연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음²⁴²⁾
 - 이는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음²⁴³⁾
 - 평가대상 물품이 생산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물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물품의 판매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입 후 90일 이내에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 후 100일이 경과된 때에 발생한 판매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중립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²⁴⁴⁾
 - 캐나다에서 생산된 물품의 캐나다 내 판매 가격
 -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으로 수락하도록 하는 기준에 의한 가격
 -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물품 가격
 - 동일물품, 유사물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 이외의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캐나다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가격
 - 최소 관세평가 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242) 캐나다 「관세법」 제53조

243) Memorandum D13-9-1 Residual Basis of Appraisal Method

244) Memorandum D13-9-1 Residual Basis of Appraisal Method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1. 품목분류

가. 품목분류 체계

- 품목분류란 여러 가지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말함²⁴⁵⁾
 - 이러한 품목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당해 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는 관세의 과세요건 확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캐나다는 관세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분류를 HS협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과 캐나다 규칙에 따라 결정함²⁴⁶⁾
 - 캐나다는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에 관세율을 표시한 관세율표를 「관세율법」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관세목적으로 8단위의 관세번호를 사용하는데,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

245)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4350>, 검색일자: 2020. 10. 5.(정다운 외(2018), p. 67에서 재인용)

246) 캐나다 「관세율법」 제10조 제1항

단위는 소호라고 하며, 6단위까지는 HS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됨²⁴⁷⁾

- 통계접미사(statistical suffixes)라고 하는 2자리의 코드를 추가하여 10단위 번호를 통계번호로 사용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보고 목적의 번호임

- 품목분류표는 부(Sections), 류(Chapters), 절(sub-Chapters)로 구성되며,²⁴⁸⁾ HS 협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부 및 류의 주, 호·소호 및 관세번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임²⁴⁹⁾

- 부 및 류의 주는 일반적으로 당해 부나 류의 포함 또는 제외 물품을 나열하며, 특정용어를 정의하거나 특정 물품을 분류하는 방법을 정하기도 함
- HS 해설서는 법적요소를 보완하여 특정 부 또는 류의 주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특정 호나 소호에 어떤 물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함

- HS협약은 국제적으로 총 97개의 류로 구성되며, 각 국가별로 사용이 가능한 제 98류와 제99류를 유보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품목분류표는 제98류와 제99류를 포함함

- 제98류는 비상업적 물품이 분류되는 특별조항으로 제99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제98류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제98류에 분류됨²⁵⁰⁾
- 제99류는 상업적 물품이 분류되는 특별조항으로 제1류 내지 제97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제99류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99류에 분류됨²⁵¹⁾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기간 내에 신

247) Memorandum D10-13-1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

248) 캐나다 「관세율법」 제3조

249) Memorandum D10-13-1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

250)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8류 호의 용어 및 주 2

251)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9류 호의 용어 및 주 3

청한 경우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할 수 있음²⁵²⁾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은 다음의 사람이 할 수 있음²⁵³⁾

- 캐나다의 물품 수입자
- 물품 수입자 또는 화주를 대리하여 물품의 납세신고 권한이 있는 자
- 외국의 물품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사전심사는 물품이 수입되기 120일 전 이내에 영어 또는 불어로 신청하여야 함²⁵⁴⁾

□ 사전심사 신청은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²⁵⁵⁾

○ 사전심사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²⁵⁶⁾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번호
- 신청인이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인지에 대한 진술과 서명
- 신청인이 수입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서명, 수입자 등이 서명한 위임장
- 물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수입자 등의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 신청인이 수입자인 경우 수출자,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수출자인 경우 생산자,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자인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 물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입국 항구
- 신청인이 알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 물품이 품목분류 확인, 행정적 이의제기 또는 항소, 사법·준사법적 이의제기, 기타 사전심사 등의 대상인지에 대한 진술
- 신청인이 알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 물품이 이전에 캐나다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252) 캐나다 「관세법」 제43.1조 제1항

253)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2조

254)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3조; 제4조

255)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5조

256)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 물품명,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크기 및 구성, 물품의 제조과정, 물품의 용도, 물품에 대한 도면·사진·회로도 등
- 신청인이 물품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품목번호와 그 근거
- 세관공무원은 신청인이 추가정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²⁵⁷⁾

- 세관공무원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과 사실을 근거로 일괄된 사전심사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결정의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발급해야 함²⁵⁸⁾
- 또한 사전심사가 신청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과 사전심사 결정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²⁵⁹⁾
- 사전심사 결정은 발급일 또는 사전심사 결정에 명시된 일 중 늦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²⁶⁰⁾
- 사전심사 결정은 대상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유효함²⁶¹⁾
 - 결정의 근거가 되는 물리적 사실·상황 또는 캐나다의 법령이 변경되지 않음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정의 결과에 따라 행동함
 - 사전심사 결정이 취소되지 않음

-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그 결과가 사전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연기할 수 있음²⁶²⁾
- 사전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257)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1조 제2항
258)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6조; 제7조
259)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8조
260)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9조
261)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0조
262)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1조 제1항

-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
 - 품목분류의 검토, 재결정, 추가 재결정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또는 법원의 심리
- 또한 세관공무원은 수입 예정일 이전에 사전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²⁶³⁾
-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음²⁶⁴⁾
 - 신청이 가상의 물품과 관련된 경우
 - 이미 품목분류의 검토, 재결정, 추가 재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 경우
 - 신청이 3개 이상의 물품과 관련된 경우 등
- 세관공무원은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수정 또는 취소의 발효일을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²⁶⁵⁾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음²⁶⁶⁾
 - 사전심사 결정이 오류 또는 잘못된 품목분류에 근거한 경우
 - 캐나다 법원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있거나 캐나다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물리적 사실·상황이 변경된 경우
 - 사전심사 결정 이후 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청장이 이를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 수정 또는 취소는 수정 또는 취소의 발급일 또는 통지에 기재된 날짜 중 늦은 날짜부터 유효하며,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²⁶⁷⁾
- 수정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효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도 적용됨²⁶⁸⁾

263)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1조 제3항

264)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265)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2조; 제15조

266)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2조

267)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1항; 제14조

268)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2항

- 수정 또는 취소가 사전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의 손해가 되는 경우
 - 수정 또는 취소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
 - 반면 세관공무원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을 선의로 신뢰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전심사 결정의 수정 또는 취소의 발효를 연기할 수 있음²⁶⁹⁾
 - 세관공무원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심사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²⁷⁰⁾
- 검토 요청을 받은 청장은 지체 없이 사전심사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²⁷¹⁾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그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 결정의 수정 또는 취소의 통지를 받을 수 없음²⁷²⁾

2. 관세율 제도

가. 관세율 수준

- WTO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²⁷³⁾
- 농산물에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269)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6조

270)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2항

271)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4항, 제5항

272)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273)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77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제품, 직물 및 의류,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표 2-IV-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¹

농산물	비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제품(1~2류, 5류, 16류) - 낙농제품(4류) - 과일, 채소, 식물(6~8류, 13~14류) - 커피 등 차(9류, 18류) - 곡물 및 그 조제품(10류, 11류, 19류, 21류) - 종자 및 기름(12류, 15류) - 설탕 및 과자류(17류) - 음료 및 담배 (22류, 24류) - 면섬유(52류) - 기타 농산물(23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3류), - 광물 및 금속제품(25류, 26류, 31류, 68~71류, 72~76류, 78~83류), - 석유제품(27류) - 화학제품(28~30류, 32~33류, 34류, 37~39류) - 목제품 및 종이(44~45류, 47~49류, 94류) - 직물 및 의류(50~63류, 65류) - 고무, 가죽, 신발 등의 제품(40류, 41~43류, 64류) - 기계류(84류) - 전자기기(85류) -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 (86~89류) - 기타 제조업 제품(46류, 66류, 67류, 90~93류, 95~97류)

주: 1. 대표적인 류를 기재한 것으로 세부적인 호, 소호에 따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0, 2020, pp.40~41(강성훈 외(2016), p.78에서 재인용)

- 캐나다의 2019년 전체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Bound duty)²⁷⁴는 6.4%, MFN 실행관세는 3.9%로 양허관세보다 실행관세가 2.5% 정도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관세 16.5%, MFN 실행관세 13.6%로 차이가 2.9% 정도이며, 미국(3.4%, 3.3%), EU(5.1%, 5.1%), 일본(4.7%, 4.3%)은 그 차이가 1% 미만이거나 없음

27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의하여 적용되는 세율(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p.205(신상화 외(2017), p.90에서 재인용))

- 양허관세는 농산물의 경우 14.3%, 비농산물은 5.1%로 농산물의 세율이 9.2% 정도 높았음
 - 농산물의 양허세율은 우리나라(58%), 일본(19.1%)보다 낮지만 미국(4.9%), EU(12.7%)보다는 높은 수준임
 - 비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9.8%)보다는 낮지만 미국(3.2%), EU(3.9%), 일본(2.5%)에 비해 높은 세율로 양허되었음
- 2019년 농산물의 MFN 실행관세는 15.1%, 비농산물은 2.1%로 농산물은 양허관세보다 높지만 비농산물은 양허관세보다 낮아 세율 차는 양허관세보다 큼
 - 2019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 3.9%는 미국(3.4%)을 제외한 우리나라(13.7%), EU(5.1%), 일본(4.3%)보다 낮음
 - 농산물은 우리나라(5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4.7%), EU(11.4%)보다 높으며 일본(15.5%)과 비슷함
 - 비농산물은 우리나라(6.6%), 미국(3.1%), EU(4.2%), 일본(2.5%)보다 낮음
 - 2018년 평균 MFN 실행관세와 비교해 보면 전체 품목은 4%에서 3.9%로 0.2% 감소하였으며, 농산물은 0.8% 감소, 비농산물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2-IV-2〉 캐나다 관세율 수준

(단위: %)

구분	기준	캐나다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전체 품목	양허관세	6.4	16.5	3.4	5.1	4.7	
	MFN	2018	4.0	13.7	3.4	5.2	4.4
		2019	3.9	13.6	3.3	5.1	4.3
농산물	양허관세	14.3	58.0	4.9	12.7	19.1	
	MFN	2018	15.9	57.0	5.3	12.0	15.7
		2019	15.1	56.8	4.7	11.4	15.5
비농산물	양허관세	5.1	9.8	3.2	3.9	2.5	
	MFN	2018	2.1	6.7	3.1	4.2	2.5
		2019	2.1	6.6	3.1	4.2	2.5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p. 67, 88, 107, 111, 182;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0*, 2020, p. 69, 90, 110, 115, 186

- 양허관세와 MFN 실행관세의 범위를 구간별로 나눈 후 각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수 있음
 - 양허관세의 경우 미양허 품목을 제외한 품목 중 각 세율의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의 비율을 나타냄²⁷⁵⁾

- 캐나다는 양허관세와 MFN 실행관세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8년 수입 중 무관세를 적용 받은 물품의 비중 또한 가장 높음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양허관세 기준 48.1%, MFN 실행관세 기준 68.5%이며, 비농산물은 각각 39%, 79.2%로 MFN 실행관세의 무관세 품목의 비중이 높음
 - 50%를 초과하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농산물은 5.1%(양허관세), 5.9%(MFN 실행관세)인 반면 비농산물은 25% 이하의 관세율만 적용되고 있음

〈표 2-Ⅳ-3〉 캐나다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단위: %)

구분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양허관세	48.1	16.8	19.7	7.3	1.1	1.9	0.9	4.2
	2019년 MFN 실행관세	68.5	5.6	11.6	5.3	1.1	1.9	0.9	5.0
	2018년 수입 ¹⁾	57.6	13.8	14.7	9.7	0.1	1.8	0.1	2.2
비 농 산 물	양허관세	39.0	7.6	38.5	7.7	6.7	0	0	0
	2019년 MFN 실행관세	79.2	3.1	10.2	1.3	6.2	0	0	0
	2018년 수입 ¹⁾	67.7	1.8	26.3	0.7	3.5	0	0	0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2020), p. 69

275) WTO·ITC·UNCTAD(2020), p. 39(신상화 외(2017), p. 90에서 재인용)

- 각 산업군별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평균 양허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낙농제품(208.5%), 동물제품(22.8%)이며 비농산물은 의류(17.3%), 직물(10.6%)임
 - 농산물의 경우 면섬유(90%)가, 비농산물에서는 어류 및 수산물(79.8%)이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낙농제품, 석유제품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음
 -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동물제품(504%)이며 비농산물은 가죽, 신발 등의 최고세율이 20%로 가장 높음

- MFN 실행관세의 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낙농제품(249%), 동물제품(24.1%)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의류(16.6%), 운송기기(5.5%)임
 -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면섬유(100%)이며 비농산물에서는 비전기기계(94.1%)로 나타났음
 - 낙농제품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음
 - MFN 실행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동물제품(511%), 비농산물의 경우 운송기기(25%)임

〈표 2-Ⅳ-4〉 캐나다 산업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¹⁾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고 세율	비중 ²⁾	무관세 비중 ³⁾
동물제품	22.8	(50.1)	540	24.1	(66.0)	511	(0.7)	(63.6)
낙농제품	208.5	(0)	314	249.0	(0)	314	(0.1)	(0)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3.5	(57.2)	19	2.3	(73.2)	17	(2.3)	(84.2)
커피, 차	7.4	(55.0)	265	10.1	(81.9)	265	(0.7)	(73.5)
곡물 및 그 조제품	16.4	(20.8)	277	19.8	(46.8)	277	(1.6)	(24.2)
종자, 기름	5.1	(49.8)	218	3.0	(75.2)	218	(0.5)	(86.6)
설탕 및 과자류	4.2	(7.4)	13	3.5	(34.3)	13	(0.2)	(40.4)

〈표 2-IV-4〉의 계속

품목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¹⁾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고 세율	비중 ²⁾	무관세 비중 ³⁾
음료, 담배	6.2	(27.2)	256	3.6	(52.9)	256	(1.3)	(33.2)
면섬유	0.8	(90.0)	8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3.6	(66.7)	270	2.6	(90.7)	270	(0.6)	(64.2)
어류 및 수산물	1.0	(79.8)	11	0.9	(80.2)	11	(0.7)	(82.3)
광물, 금속	2.7	(51.0)	16	1.0	(85.0)	16	(12.3)	(84.6)
석유제품	6.4	(0)	8	0.9	(82.8)	5	(6.9)	(99.4)
화학제품	4.4	(28.2)	16	0.7	(88.8)	16	(12.1)	(74.9)
목제품, 종이제품	1.5	(78.0)	18	1.0	(86.6)	18	(4.3)	(79.6)
직물	10.6	(9.2)	18	2.3	(83.2)	18	(1.7)	(44.3)
의류	17.3	(0.2)	18	16.6	(5.4)	18	(2.2)	(2.6)
가죽, 신발 등	7.2	(23.9)	20	3.8	(67.6)	20	(2.2)	(28.1)
비전기기계	3.2	(50.2)	14	0.4	(94.1)	9	(15.3)	(96.7)
전기기계	3.7	(45.6)	11	0.8	(87.6)	9	(9.8)	(89.0)
운송기기	5.6	(28.1)	16	5.5	(41.6)	25	(19.1)	(14.7)
기타 제조업 제품	3.9	(45.1)	18	2.4	(63.6)	16	(5.5)	(77.3)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2020), p. 69

나. 관세율표의 구성

- 캐나다의 관세율표는 「관세율법」의 부록으로 HS협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의 목록, 관리지침, 관세율 일정표로 구성됨²⁷⁶⁾
-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은 관세혜택 목적에 따라 지정된 수혜국 목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혜택의 약어가 표시되어 있음

276) CBSA, *Departmental Consolidation of the Customs Tariff 2020*, 2020, p. 1

- 관리지침은 관세율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기호와 약어의 의미를 나열함

[그림 2-Ⅳ-1]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

Country Name	Tariff Treatment			
	MFN	GPT	LDCT	Other
Afghanistan	X	X	X	
Albania	X			
Algeria	X			
American Samoa	X			
Andorra	X			CEUT
Angola	X	X	X	
Anguilla	X	X		CCCT
Antigua and Barbuda	X			CCCT
Argentina	X			
Armenia	X	X		
Aruba	X			
Ascension Island	X	X		
Australia	X			AUT, CPTPT
Austria	X			CEUT
Azerbaijan	X			

자료: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

- 관세율 일정표는 관세번호와 통계접미사, 품목명, 통계단위, MFN 세율과 적용할 수 있는 특혜세율이 표시됨
- MFN 세율 열과 특혜관세 열에 특혜관세의 약어와 함께 “N/A”가 표시된 경우 관세혜택이 해당 관세번호에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냄²⁷⁷⁾

277) 캐나다 「관세율법」 제28조

[그림 2-IV-2] 캐나다 관세율표 예시

Tariff Item	SS	Description of Goods	Unit of Meas.	MFN Tariff	Applicable Preferential Tariffs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0101.21.00	00	-Pure-bred breeding animals	NMB	Free	CCCT, LDCT, GPT, UST, MXT, CIAT, CT, CRT, IT, PT, COLT, JT, PAT, HNT, KRT, CEUT, UAT, CPTPT: Free
0101.29.00		--Other		Free	CCCT, LDCT, GPT, UST, MXT, CIAT, CT, CRT, IT, PT, COLT, JT, PAT, HNT, KRT, CEUT, UAT, CPTPT: Free
	10	----For slaughter	NMB		
	20	----For racing	NMB		
	90	----Other	NMB		
0101.30.00	00	-Asses	NMB	Free	CCCT, LDCT, GPT, UST, MXT, CIAT, CT, CRT, IT, PT, COLT, JT, PAT, HNT, KRT, CEUT, UAT, CPTPT: Free
0101.90.00	00	-Other	NMB	Free	CCCT, LDCT, GPT, UST, MXT, CIAT, CT, CRT, IT, PT, COLT, JT, PAT, HNT, KRT, CEUT, UAT, CPTPT: Free

자료: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다. 관세율의 종류

1) 일반관세율

- 일반관세율은 관세특혜가 적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율로 다음의 경우 35%의 일반관세율이 적용됨²⁷⁸⁾
 - 관세율표의 국가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국가목록에 명시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만 「관세율법」에 따른 관세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

278) 캐나다 「관세율법」 제29조 제1항

- MFN 관세율에 대한 자격이 철회되거나 기타 「관세율법」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에 의한 물품
-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일반관세율 적용규정에도 불구하고 MFN 관세율이 적용됨²⁷⁹⁾
 - MFN 관세율이 35% 이상인 경우
 - 류의 주 또는 보충 주, 관세번호에 따르는 경우

2) MFN 관세율

- MFN 관세율(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관세율표의 국가목록에서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표시된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적용됨²⁸⁰⁾
 - MFN 관세율과 다른 관세율 모두 적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MFN 관세율이 다른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MFN 관세율이 우선 적용됨²⁸¹⁾
- 물품의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하나 이상의 MFN 관세 수혜국 또는 캐나다의 산업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수혜국이 원산지로서 인정됨²⁸²⁾
 - 또한 수혜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형태로 물품이 완성되어야 함
 - 생산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²⁸³⁾
 - 물품의 일반적인 소비를 위한 판매에 필요한 포장을 제외하고, 운송을 위한 외부 포장 및 관련 비용
 -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총 이익과 완성된 형태의 물품을 거래하는 중개인 등의 이익과 보수
 - 로열티
 - 수입재료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관세, 소비세 또는 세금

279) 캐나다 「관세율법」 제29조 제2항

280) 캐나다 「관세율법」 제30조 제1항

281) 캐나다 「관세율법」 제25조

282) Most-Favoured-Nation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1조

283) Most-Favoured-Nation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 원산지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지점부터 선적항까지의 운송, 보험 및 기타 비용
- 물품의 생산 완료 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비용 또는 요금

- 물품이 환적 여부와 관계없이 MFN 관세 수혜국에서 캐나다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MFN 세율이 적용됨²⁸⁴⁾
 - 직접운송이란 수혜국에서 캐나다의 수취인에게 통과선하증권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함²⁸⁵⁾
 - 수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환적된 경우 직접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²⁸⁶⁾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이 하역, 적재, 분할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중간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된 경우
 - 물품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간 국가에서 임시 보관된 경우

3) 일반특혜관세 및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는 관세율표의 국가목록에서 일반특혜관세 또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가 적용된다고 표시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됨²⁸⁷⁾
- 국가목록의 GPT, LDCT열에 표시가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다른 특혜관세, MFN 관세를 적용함²⁸⁸⁾

284) Most-Favoured-Nation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3조

285)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1항

286)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2항

287) 캐나다 「관세율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288) Memorandum D11-4-4 Rules of Origin Respecting the General Preferential Tariff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표 2-Ⅳ-5〉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
앵골라, 아르메니아, 어센션섬, 벨리즈, 볼리비아, 영국령 인도양 지역, 카메룬, 카나리아제도, 세타 메릴라, 크리스마스섬, 코코스제도, 콩고, 쿡제도,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포클랜드제도, 피지, 프랑스 남부 및 남극 지역, 조지아,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이라크, 케냐, 키르기스스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트세랫, 모로코, 나우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니우, 노퍽섬,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핏케언, 세인트 헬레나 속령,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시리아, 타지키스탄, 토켈라우제도, 통가, 트리스탄 다쿠나,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버진군도, 짐바브웨, 최빈개발도상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자료: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목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일반특혜관세와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는 당해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²⁸⁹⁾
 - 다음의 물품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이 원산지로 인정됨
 - 당해 국가의 토양 또는 해저에서 추출한 광물제품
 - 당해 국가에서 수확한 식물제품
 - 당해 국가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살아 있는 동물과 이로부터 획득한 물품
 - 당해 국가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통해 획득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획득한 수산물 또는 해양제품과 이로부터 생산된 물품
 - 당해 국가의 제조 작업에서 파생된 폐기물 또는 스크랩
 - 원재료 회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로 수입된 당해 국가의 중고물품
 - 상기의 물품으로만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 일반특혜관세의 경우 수혜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재료, 부품의 가격이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이하이

289) General Preferential Tariff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 면 수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최빈개발대상국 특혜관세는 최빈개발대상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재료, 부품의 가격이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이면 최빈개발대상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특정 의류제품의 경우 가공공정이 최빈개발대상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 다른 수혜국 또는 다른 최빈개발대상국,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부품 등은 물품을 생산하는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대상국이 원산지로 간주됨²⁹⁰⁾
 - 최빈개발대상국의 경우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등이 공장도 가격의 20% 이하이면 물품을 생산하는 최빈개발대상국을 당해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함
 - 또한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대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를 위한 판매용 포장을 제외하고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 또한 당해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대상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선적된 각 물품은 구분되어 고려되어야 함²⁹¹⁾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물품의 그룹, 세트, 조립품이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그룹, 세트, 조립품은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함
 - 도구, 부분품, 부속품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물품의 판매에 관례적으로 포함된 장비를 구성하며,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물품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운송 또는 생산상의 이유로 하나의 선적으로 수입할 수 없어 분할되어 선적된 조립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됨

290) General Preferential Tariff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제8항 내지 제9항

291) General Preferential Tariff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3조

- 물품은 환적과 관계없이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캐나다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²⁹²⁾
 - 직접운송이란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캐나다의 수취인에게 통과선하증권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함²⁹³⁾
 -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환적된 경우 직접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²⁹⁴⁾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이 하역, 적재, 분할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중간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된 경우
 - 물품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간 국가에서 임시 보관된 경우

4) 영국연방국가 적용 관세

가)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

-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Tariff, CCCT)는 관세율표의 국가목록에서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가 적용된다고 표시된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적용됨²⁹⁵⁾
 - CCCT가 적용되는 국가는 앵귤라, 벨리즈, 가이아나, 몬트세랫, 버진군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카이만 제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임²⁹⁶⁾

292) General Preferential Tariff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4조

293)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1항

294)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2항

295) 캐나다 「관세율법」 제41조 제1항

296)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목록

-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는 당해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²⁹⁷⁾
 - 다음의 물품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이 원산지로 인정됨
 - 당해 국가의 토양 또는 해저에서 추출한 광물제품
 - 당해 국가에서 수확한 식물제품
 - 당해 국가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살아 있는 동물과 이로부터 획득한 물품
 - 당해 국가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통해 획득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획득한 수산물 또는 해양제품과 이로부터 생산된 물품
 - 당해 국가의 제조 작업에서 파생된 폐기물 또는 스크랩
 - 원재료 회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로 수입된 당해 국가의 중고물품
 - 상기의 물품으로만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 영국연방 카리브해 관세의 수혜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재료, 부품의 가격이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이하이면 수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 다른 수혜국 또는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부품 등은 물품이 생산되는 수혜국이 원산지로 간주됨²⁹⁸⁾
 - 또한 수혜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를 위한 판매용 포장을 제외하고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 또한 당해 수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선적된 각 물품은 구분되어 고려되어야 함²⁹⁹⁾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물품의 그룹, 세트, 조립품이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그룹, 세트, 조립품은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함

297)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298)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제3항

299)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3조

- 도구, 부분품, 부속품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물품의 판매에 관례적으로 포함 된 장비를 구성하며,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물품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운송 또는 생산상의 이유로 하나의 선적으로 수입할 수 없어 분할되어 선적 된 조립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됨

- 물품은 환적과 관계없이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에서 캐나다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³⁰⁰⁾
- 직접운송이란 수혜국에서 캐나다의 수취인에게 통과선하증권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함³⁰¹⁾
- 수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환적된 경우 직접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³⁰²⁾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이 하역, 적재, 분할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중간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된 경우
 - 물품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간 국가에서 임시 보관된 경우

나) 호주 및 뉴질랜드 관세

- 호주 또는 뉴질랜드 관세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됨³⁰³⁾

- 물품의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산업이나 캐나다의 산업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수혜국이 원산지로 인정됨³⁰⁴⁾

300)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4조

301)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1항

302)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2항

303) 캐나다 「관세율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2항

304) Australia Tariff and New Zealand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1조

- 또한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형태로 물품이 완성되어야 함
- 생산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³⁰⁵⁾
 - 물품의 일반적인 소비를 위한 판매에 필요한 포장을 제외하고, 운송을 위한 외부 포장 및 관련 비용
 -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총 이익과 완성된 형태의 물품을 거래하는 중개인 등의 이익과 보수
 - 로열티
 - 수입재료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관세, 소비세 또는 세금
 - 원산지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지점부터 선적항까지의 운송, 보험 및 기타 비용
 - 물품의 생산 완료 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비용 또는 요금
- 물품이 환적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당해 세율이 적용됨³⁰⁶⁾
 - 직접운송이란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의 수취인에게 통과선하증권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함³⁰⁷⁾
 -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수출된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환적된 경우 직접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³⁰⁸⁾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이 하역, 적재, 분할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중간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 물품이 중간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된 경우
 - 물품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간 국가에서 임시 보관된 경우

305) Australia Tariff and New Zealand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2조

306) Australia Tariff and New Zealand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제3조

307)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1항

308) 캐나다 「관세율법」 제17조 제2항

5) 협정 관세율

- FTA 협정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로 관세율표의 마지막 열에 약어와 함께 관세율이 기재됨
- 원산지 결정기준 및 증명절차 등은 각 FTA 협정문에 의함

〈표 2-Ⅳ-6〉 협정관세율의 종류

구분	관세율 약어
캐-이스라엘 FTA	CIAT
캐-칠레 FTA	CT
캐-코스타리카 FTA	CRT
캐-EFTA FTA	스위스-리히텐슈타인: SLT, 노르웨이: NT, 아이슬란드: IT
캐-페루 FTA	PT
캐-콜롬비아 FTA	COLT
캐-요르단 FTA	JT
캐-파나마 FTA	PAT
캐-온두라스 FTA	HNT
캐-한국 FTA	KRT
캐-우크라이나 FTA	UAT
캐-EU FTA	CEUT
CPTPP	CPTPT(호주: CPAUT, 브루나이: CPBNT, 칠레: CPCLT, 일본: CPJPT, 멕시코: CPMXT, 말레이시아: CPMYT, 뉴질랜드: CPNZT, 페루: CPPET, 베트남: CPVNT)
CUSMA	미국: UST, 멕시코: MXT

자료: 캐나다 「관세율법」 제27조에 따라 저자 작성

V. 관세 감면 및 환급제도

1. 관세 감면제도

가. 과세가격의 경감

1) 개인 및 가정용품, 이사물품

- 제9804호 또는 제9805호에 분류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9804호의 각 소호와 제9805호에서 규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됨³⁰⁹⁾
 - 제9804.10.00호, 제9804.2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800캐나다달러만큼 경감되며, 주류 또는 담배의 중량 또는 수량도 규정된 양만큼 경감됨
 - 제9804.30.00호에 분류되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은 800캐나다달러만큼 경감되지만, 최초 300캐나다달러는 제9804.30.00호의 세율이 적용됨
 - 제9805.00.00호의 물품의 과세가격이 1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여 제1류 내지 제97류에 분류되는 경우 1만캐나다달러만큼 과세가격이 경감됨

309) 캐나다 「관세율법」 제83조; 제84조

〈표 2-V-1〉 제9804호의 분류 및 품목별 세율

HS code	품목명	MNF	특혜관세
9804	캐나다의 거주자·임시거주자 또는 캐나다에 다시 거주하고자 돌아오는 전 거주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가정용품, 기념품 또는 선물로 다른 사람의 위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캐나다로 돌아오는 때에 신고된 것		
9804.10.00	캐나다에서 출국한 후 48시간 이상 해외에서 머문 후 귀국한 자의 동반 수하물로 800캐나다달러 이하의 것(포도주 1.5L 이하, 주류 1.14L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담배·담배스틱 200개비 이하, 제조담배 200g 이하가 포함됨)	free	CCCT, LDCT, GPT, US T, MXT, CIAT, CT, CRT, IT, NT, SLT, PT, COLT, JT, PAT, HNT, KRT, CE UT, UAT, CPTPT: free
9804.20.00	캐나다에서 출국한 후 7일 이상 해외에서 머문 후 귀국한 자의 동반 수하물인지와 관계없이 800 캐나다달러 이하의 것(포도주 1.5L 이하, 주류 1.14L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담배·담배스틱 200개비 이하, 제조담배 200g 이하가 동반 수하물로 포함되며, 이외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동반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음)	free	CCCT, LDCT, GPT, US T, MXT, CIAT, CT, CRT, IT, NT, SLT, PT, COLT, JT, PAT, HNT, KRT, CE UT, UAT, CPTPT: free
9804.30.00	캐나다에서 출국한 후 48시간 이상 해외에서 머문 후 귀국한 자의 동반 수하물로 300캐나다달러 이하의 것(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나 주류, 시가, 담배, 담배스틱, 제조담배가 포함되지 않음)	7%	CCCT, LDCT, GPT, US T, MXT, CIAT, CT, CRT, IT, NT, SLT, PT, COLT, JT, PAT, HNT, KRT, CE UT, UAT, CPTPT: free
9805.00.00	캐나다 군, 캐나다 정부 직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캐나다에 다시 거주하고자 돌아오는 전 거주자,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가정용품으로 캐나다로 돌아오기 최소 6개월 전에 해외에서 실제로 소유·점유·사용한 것으로 수입된 후	free	CCCT, LDCT, GPT, US T, MXT, CIAT, CT, CRT, IT, NT, SLT, PT, COLT, JT, PAT, HNT, KRT, CE UT, UAT, CPTPT: free

〈표 2-V-1〉의 계속

HS code	품목명	MNF	특혜관세
	12개월 내에 판매·기타 방법으로 폐기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동반 수하물에 포함된 1.5L 이하 포도주, 1.14L 이하 주류, 50개비 이하 시가, 200개비 이하 담배·담배스틱, 200g 이하 제조담배의 관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에도 적용되며, 이외의 해외에서 구매한 동반 수하물이 아닌 물품이 입국 시 수입신고된 경우 수입 후에 당해 호에 분류될 수 있고, 1977년 3월 31일 이후에 구매되어 과세가격이 1만캐나다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료: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804호, 제9805호

2) 수리 또는 개조 물품

-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후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수입 시점의 물품가격이지만,³¹⁰⁾ 제9971호에 분류되는 특정 협정세율 적용물품은 수리 또는 개조 비용만 과세됨³¹¹⁾
 -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물품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함³¹²⁾
 - 물품이 캐나다 밖에서 수리된 경우
 - 캐나다 밖에서 물품에 장비가 추가된 경우
 - 캐나다 밖에서 물품에 대한 작업이 수행된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비용만 과세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EFTA, 한국, EU, CPTPP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임³¹³⁾

310) 캐나다 「관세율법」 제20조 제2항

311) 캐나다 「관세율법」 제87조

312) 캐나다 「관세율법」 제20조 제2항

313) 캐나다 「관세율법」 제87조

- E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물품은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5년이 되는 전날 효력을 상실함
-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전날 효력을 상실함
- EU로부터 재수입되는 물품은 협정이 발효된 해로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함

〈표 2-V-2〉 제9971호의 분류 및 품목별 세율

HS code	품목명	MNF	특혜관세
9971.00.00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CPTPP, EU,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스위스,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수리 또는 개조된 후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① 제8901호의 순향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사람 또는 물품 수송용 선박 ② 제8902호의 어선, 공선 및 기타 수산물의 가공용 또는 저장용 선박으로 등록된 길이가 30.5m를 초과하지 않는 선박 ③ 제8904호의 예인선, 푸셔크라프트 ④ 제8905호의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해당 없음	UST, MT, MUST, CIAT, C T, CRT, PT, COLT, JT, PA T, HNT: free IT, NT, SLT, KRT, CEUT, CPTPT: free(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조비용)

자료: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971호

나. 수출용 물품 감면

1) 일반 수출용 물품

- 수입물품이 다음과 같이 수출되거나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관세납부가 면제될 수 있음³¹⁴⁾
 - 수입물품이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로 동일한 상태란 다음을 말함³¹⁵⁾
 - CUSMA의 최소가공공정 규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가공이 이루어진 것
 - 전시 또는 시연, 수출될 상품의 개발이나 생산(플랜트 장비 제외)에 사용된 것
 - 재사용가능한 컨테이너가 물품의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것
 -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 가공이란 물품의 조정, 개조, 조립, 생산, 변경, 생산 또는 수리를 포함함³¹⁶⁾
 -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 동종의 물품이란 캐나다에서 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상호대체 사용할 수 있거나 물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상호대체되어 소비·투입되는 것을 말함³¹⁷⁾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 수출용 물품의 관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물품이 수출된 것으로 간주함³¹⁸⁾

314) 캐나다 「관세율법」 제89조 제1항

315)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9조

316) 캐나다 「관세율법」 제80조

317)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0조

318) 캐나다 「관세율법」 제89조 제3항

- 선박 저장소에 공급되어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 다음의 선박 또는 항공기³¹⁹⁾의 장비, 수리 또는 재건에 사용되는 경우
 - 수리 또는 재건 중인 오직 국제무역에만 운영되는 해양선박
 - Ship's Store Regulations에서 규정한 외국군함
 - Ship's Store Regulations에서 규정한 전신케이블 선박
 - 오직 유람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에 등록된 선박
 - 오직 국제비행에만 운영되는 항공기
 - Ship's Store Regulations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기
 - 전신케이블 선박에 공급되는 경우
 - 전신케이블 선박이란 어느 국가든 등록된 것으로 해외에서 오직 해양 전신케이블의 설치 및 수리에 사용되며, 해외 항해 중인 것을 말함³²⁰⁾
 - 공공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캐나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부처 또는 기관에 수출을 위해 공급된 경우
 - 수출하거나 선박저장소·선박 또는 항공기·전신케이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 보세창고 또는 면세점에 반입되는 경우
 - 공공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수출물품 관세면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기타 수출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 이러한 관세면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³²¹⁾
- 물품이 수출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
 - 연료, 플랜트 장비가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거나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319)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1조, Schedule III

320)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2조

321)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4조 내지 6조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거나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소비·투입된 다음의 경우
 - 캐나다 내에서 증류주의 가공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된 증류주 또는 캐나다 내에서 증류주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증류주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가공 또는 직접 소비·투입된 후 캐나다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된 물품 또는 캐나다에서 다른 물품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물품이 가공 또는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가공되거나 직접 소비·투입된 플랜트는 제외한 캐나다 내의 플랜트에서 가공되거나 직접 소비·투입된 수입물품

- 관세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가공업자, 화주, 생산자³²²⁾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³²³⁾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납부되어야 하는 때에 당해 인증서의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관세의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³²⁴⁾

- 공공안전부 장관은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수정, 정지, 갱신, 취소, 복원할 수 있음³²⁵⁾
 - 장관은 면제신청에 명시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증서를 수정할 수 있음³²⁶⁾
 - 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³²⁷⁾
 - 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증서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개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청산 중인 경우

322)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3조

323) 캐나다 「관세율법」 제90조 제1항

324) 캐나다 「관세율법」 제90조 제3항

325) 캐나다 「관세율법」 제90조 제2항

326)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4조

327)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5조

- 캐나다에서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장관에게 인증서의 복원 이유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 또한 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서를 일시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음³²⁸⁾
 -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 통제 또는 규제하는 의회법 또는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직하게 행동한 경우
 - 장관은 정지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지된 인증서를 복원할 수 있음³²⁹⁾
- 관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수출되어야 함³³⁰⁾
- 다음의 물품은 반출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것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것
 - 수출물품을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것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증류주, 포도주, 맥주는 반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거나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것은 반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2)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물품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가 승인된 경우 물품을 수

328)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6조

329)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8조

330)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7조

출한 자는 수출 후 60일 이내에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경감된 관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함³³¹⁾

- 물품을 수출한 자와 관세면제 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부터 경감된 관세의 일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물품이 수출된 후 60일 이내에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또는 멕시코 당국에 납부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경감됨³³²⁾
 -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보다 미국 또는 멕시코 당국에 납부한 관세가 많은 경우 관세는 전액 경감됨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기의 관세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³³³⁾
 - 미국 또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것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것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것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2009호의 오렌지 또는 자몽 제조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오렌지 또는 자몽 추출물
 - 미국으로 수출되어 MFN 세율 적용대상인 의류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수입 물품 또는 이와 같은 의류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수입물품
 - 미국으로 수출되어 MFN 세율 적용대상인 제5811.00호에 분류되는 면 누비제품 또는 인조섬유 누비제품, 제6307.90호에 분류되는 가구 이동 패드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수입물품 또는 이와 같은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

331) 캐나다 「관세율법」 제95조 제1항

332) 캐나다 「관세율법」 제95조 제4항, 제5항

333) 캐나다 「관세율법」 제95조 제6항

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수입물품

-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수입물품
 -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
 - 수출용 면세점에 반입된 경우
 - 선박 저장소에 공급된 경우
 - 운송에 사용되기 위하여 공급된 경우
 - 캐나다 정부와 미국 또는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미국 또는 멕시코 정부가 수행한 캐나다 정부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미국 또는 멕시코 정부의 소유가 될 예정인 것
 - 기타 캐나다 정부와 미국 또는 멕시코 정부의 합의에 따라 총독이 규정한 물품
-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면제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음³³⁴⁾
-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는 수입 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했던 관세와 수입물품이 수출된 CUSMA 당사국인 국가에 납부한 관세보다 적은 금액임³³⁵⁾
- 다만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된 수입물품이 「특별수입조치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관세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³³⁶⁾
- 미국 또는 멕시코로 수출되는 수입물품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60일 이내에 세 관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경감되거나 환급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물품을 수출한 자와 관세면제 승인 또는 환급을 받은 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부터 경감 또는 환급된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334) 캐나다 「관세율법」 제113조 제1항

335) 캐나다 「관세율법」 제96조

336) 캐나다 「관세율법」 제97조; 제98조

3) EU 또는 CETA 수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EU 또는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CETA) 수혜국에 CETA가 발효된 지 3년 후에 수출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가 승인된 경우 물품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60일 이내에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경감된 관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함³³⁷⁾
 - 관세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거나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것임
 - 물품을 수출한 자와 관세면제 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부터 경감된 관세의 일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EU 또는 CETA 수혜국에 수출되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기의 관세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³³⁸⁾
 - EU 또는 CETA 수혜국 원산지인 물품으로 EU 또는 CETA 수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거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것
 -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
 - 수출용 면세점에 반입된 경우
 - 선박 저장소에 공급된 경우
 - 운송에 사용되기 위하여 공급된 경우
 - 기타 캐나다 정부와 CETA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총독이 규정한 물품

-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면제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음³³⁹⁾
 - 그러나 다음의 경우 환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³⁴⁰⁾

337) 캐나다 「관세율법」 제98.1조 제1항

338) 캐나다 「관세율법」 제98.1조 제4항

339) 캐나다 「관세율법」 제113조 제1항

-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이러한 다른 물품이 CETA가 발효된 지 3년 후에 EU 또는 CETA 수혜국으로 수출되어 CE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다. 기타 감면

1) 수리 또는 개조 물품

- 캐나다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음³⁴¹⁾
 - 다음과 같은 경우 수출 후 1년 내에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때에 관세의 일부가 면제됨
 - 물품이 캐나다 밖에서 수리된 경우
 - 캐나다 밖에서 물품에 장비가 추가된 경우
 - 캐나다 밖에서 물품에 대한 작업이 수행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공기, 차량, 선박에 대하여 캐나다에 재수입되는 때에 납부해야 할 관세의 전부가 면제됨
 -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항공기, 차량, 선박이 캐나다 밖에서 수리된 경우
 - 항공기, 차량, 선박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물품이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때에 면제신청을 해야 함³⁴²⁾
 - 면제신청에는 물품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340) 캐나다 「관세율법」 제98.1조 제3항

341) 캐나다 「관세율법」 제101조

342) 캐나다 「관세율법」 제102조

- 물품이 수리된 경우 수출 전에 캐나다에서 소재했던 장소 또는 당해 장소와 합리적인 거리의 장소에서 수리할 수 없었음
 - 물품에 장비가 추가된 경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장비가 추가될 수 없었음
 - 물품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캐나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 관세 면제요건을 갖추어 면제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³⁴³⁾
- 다만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관세의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관세가 납부되어야 함
 - 반품과 관련하여 지불해야하는 금액과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수리, 장비 추가, 작업의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에 관세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세율로 계산된 금액³⁴⁴⁾

2) 손상 또는 파손 물품

- 공공안전부 장관은 물품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 전에 손상,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음³⁴⁵⁾
-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캐나다로 선적된 후 반출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손상, 저하, 파손된 경우
 - 보세창고에서 자연적 원인으로 부피 또는 무게가 손실된 경우
- 물품가격의 손실에 대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 의하며, 이러한 손실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경감되는 관세가 결정됨³⁴⁶⁾

343) 캐나다 「관세율법」 제103조; 104조

344) 캐나다 「관세율법」 제105조

345) 캐나다 「관세법」 제73조

346) Abatement of Duties Payable Regulations 제3조

- 캐나다로 선적된 후 반출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손상, 저하, 파손된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만큼 경감됨
 - 그릇, 도자기, 유리, 유리제품과 같이 파손되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의 경우 손실된 물품의 과세가격의 85%에 상응하는 관세가 경감됨
 - 설탕, 사카린 등의 물품이 소금물에 의하여 손상 또는 저하된 경우 편광시험에 따라 경감되는 관세가 결정됨
- 보세창고에서 자연적 원인으로 부피 또는 무게가 감소한 물품은 최초 보관되었던 부피 등에서 손실된 부피 등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만큼 경감됨³⁴⁷⁾
- 다만 다음의 경우 손실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은 허용되지 않음³⁴⁸⁾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권장하는 유통기한 또는 사용 전 보관 허용기간이 있는 물품이 당해 기간의 만료로 인해 물품이 손상 또는 저하된 경우
 - 녹으로 인해 손상 또는 저하된 철, 강철 또는 이들의 제조품
 - 손상 또는 저하된 액체 포장물로 손상 또는 저하가 포장에만 국한되고 내용물인 액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관세 환급제도

가. 과오납 등의 환급

- 손상·부족·품질불량 등이 발생한 수입물품 또는 수입신고의 오류 등이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자는 당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³⁴⁹⁾

347) Abatement of Duties Payable Regulations 제4조

348) Abatement of Duties Payable Regulations 제5조

349) 캐나다 「관세법」 제74조 제1항

- 공공안전부 장관은 환급을 신청한 자에게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은 Refund of Duties Regulations에서 규정함

1) 손상 또는 파손물품

- 수입물품이 캐나다로 선적된 후 반출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손상, 저하, 파손된 경우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에게 환급신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³⁵⁰⁾
 -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반출 후 3일 이내, 기타 물품은 반출 후 4년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
 -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³⁵¹⁾
 - 운송인, 보세창고·면세점의 운영인 또는 물품이 입은 손상·저하·파손의 상황,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진술서
 - 이러한 당국의 서면진술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물품의 손상 등으로 발생한 물품의 가치 손실을 확인하는 감정인의 평가, 물품의 손상 등의 보상금액이 표시된 판매자의 신용전표 등 문서의 사본 또는 손실된 가격에 대한 보상금액을 표시한 운송인 또는 보험사의 지불약정
- 캐나다로 선적된 후 반출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손상, 저하, 파손된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만큼 경감됨³⁵²⁾
 - 그릇, 도자기, 유리, 유리제품과 같이 파손되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의 경우 손실된 물품의 과세가격의 85%에 상응하는 관세가 경감됨
 - 설탕, 사카린 등의 물품이 소금물에 의하여 손상 또는 저하된 경우 편광시험에 따라 경감되는 관세가 결정됨

350)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3조

351)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4조

352)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5조

- 다만 다음의 경우 손실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허용되지 **않음**³⁵³⁾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권장하는 유통기한 또는 사용 전 보관 허용기간이 있는 물품이 당해 기간의 만료로 인해 물품이 손상 또는 저하된 경우
 - 녹으로 인해 손상 또는 저하된 철, 강철 또는 이들의 제조품

2) 수량부족물품

- 반출된 물품의 수량이 관세가 납부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관세환급 신청과 그 사유가 세관공무원에게 반출 후 4년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함³⁵⁴⁾
 -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³⁵⁵⁾
 - 캐나다로 운송된 물품의 실제 수량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과 부족하게 선적된 물품에 대한 보상금액을 표시한 판매자의 신용전표 등 문서의 사본
 - 캐나다 밖에서 운송되는 동안 물품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물품수량 부족을 확인하고 당해 상황을 설명하는 운송인의 서면진술서
 - 운송인, 보세창고·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물품의 부족분을 확인하는 운송인, 보세창고·면세점 운영인의 서면진술서
- 관세 환급액은 납부된 관세와 실제로 반출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의 차액임³⁵⁶⁾
 - 다만 운송인, 보세창고·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의 책임이 있는 하에서 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되어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관세는 환급되지 **않음**³⁵⁷⁾

353)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6조

354)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7조; 제8조

355)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9조

356)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0조

357)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1조

3) 품질저하물품

- 물품의 품질이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품질보다 떨어지는 경우 관세환급에 대한 신청은 청구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함³⁵⁸⁾
 -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반출 후 3일 이내, 기타 물품은 반출 후 4년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
 -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³⁵⁹⁾
 - 관세가 납부된 물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상금액이 명시된 판매자의 신용전표 등 문서의 사본
 - 관세를 납부한 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서가 제출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품질이 떨어짐을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입자의 서면진술서와 자격 있는 감정인의 평가서
- 관세 환급액은 납부된 관세와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의 차액임³⁶⁰⁾
 - 다만 다음의 경우 품질저하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허용되지 않음³⁶¹⁾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권장하는 유통기한 또는 사용 전 보관 허용기간이 있는 물품이 당해 기간의 만료로 인해 물품이 손상 또는 저하된 경우
 - 녹으로 인해 손상 또는 저하된 철, 강철 또는 이들의 제조품

4) FTA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 특정 FTA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 시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차액이 환급될 수 있음³⁶²⁾

358)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3조; 제14조

359)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5조

360)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6조

361)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7조

362)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20조; 제23조; 제23.3조

-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의 FTA 협정국에서 수입된 경우임³⁶³⁾
 - 1994년 1월 1일 이후 미국,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
 - 1997년 7월 5일 이후 칠레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으로, 2014년 3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 후 4년 내에 신청한 경우
 - 1997년 1월 1일 이후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으로부터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과 2002년 7월 15일 이후 당해 국가로부터 미국을 통해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
 - 2002년 11월 1일 이후 코스타리카, 2009년 7월 1일 이후 EFTA, 2009년 8월 1일 이후 페루, 2011년 8월 15일 이후 콜롬비아, 2012년 10월 1일 이후 요르단, 2013년 4월 1일 이후 파나마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

-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³⁶⁴⁾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으로부터 미국을 통해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경미한 가공만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Declaration Minor Processing) 또한 첨부되어야 함³⁶⁵⁾
 - 경미한 가공 외에 미국영토 내에서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물품과 관련하여 미국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가공이 물품 거래가격을 10% 이상 상승시키지 않은 경우

5) 오납물품

- 오타 등의 오류에 의해 관세산출이 이루어지거나 결정오류에 의해 관세가 납부 또는 과다 납부된 경우 물품반출 후 4년 내에 환급신청 시 오류납부 또는 과다납부 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³⁶⁶⁾

363)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8조; 제18.1조; 제21조; 제23.1조

364)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19조; 제22조; 제23.2조

365)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21조; 제22조

366)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24조 내지 제27조

- 오기, 오타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기반으로 관세산출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이 적용됨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의 오류로 관세가 납부 또는 과다납부된 경우 환급될 수 있음

6) 사용 전 판매물품

- 물품을 캐나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관세율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된 경우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³⁶⁷⁾
 - 환급되는 관세는 납부한 관세와 관세율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품목 번호에 분류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의 차액임³⁶⁸⁾
-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³⁶⁹⁾
 - 물품이 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품목번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물품의 최종 사용자가 서명한 진술서
 - 해당되는 경우 캐나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처분과 관련된 구매주문서, 판매 송장,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7) 기타 과오납 물품

- 기타 Refund of Duties Regulations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유로 관세가 과다납부 또는 잘못 납부된 경우 다음의 금액의 환급이 승인될 수 있음³⁷⁰⁾
 - 「관세율법」에 따른 소급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된 경우 과다납부되거나 납부된 관세에 상응하는 금액
 - 주 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된 경우 납부된 관세에 상응하는 금액

367)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28조

368)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30조

369)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29조

370)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31조; 제34조; 제35조

- 「관세율법」 제21.1조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 또는 추징된 수입 벌크 증류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된 관세에 상응하는 금액
- 기타 과오납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다음의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³⁷¹⁾
 - 소급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당해 물품이 적용대상임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 주 법에 따라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된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증명 또는 물품이 세관의 감시 하에 폐기되었다는 증명
 - 수출국가로의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외국의 관세당국 공무원에게 제출된 통관서류의 사본
 - 물품의 수출과 관련한 운송회사의 문서의 사본
 - 물품이 수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
 - 추가관세가 납부된 수입 벌크 증류주의 경우 다음의 문서
 - 당해 물품이 관세가 납부되었고 「관세율법」 제21.1조에 따라 반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수출용 물품 환급

1) 일반 수출용 물품

- 「관세율법」 제89조에 규정된 관세 면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는 다음의 경우 「관세율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환급될 수 있음³⁷²⁾
 -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 전에 손상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거나 수출물품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수입물

371) Refund of Duties Regulations 제32조 내지 제33.1조

372)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3조 내지 제4조

품은 수출 전에 전시 또는 시연을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이 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경우

- 섬유제품을 제외한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다음과 같이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가공되는 캐나다 내의 플랜트에서 가공된 수입물품
 - 또한 수입물품이 반출된 후 2년 내에 수출된 물품
 -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 섬유제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다음과 같이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 섬유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가공하는 섬유가공업자에 의하여 캐나다 내의 플랜트에서 가공된 수입 섬유제품
 - 또한 수입 섬유제품이 반출된 후 2년 내에 수출된 물품
 -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수출물품의 가공과정에서 직접 소비·투입되는 캐나다 내의 플랜트에서 물품의 가공과정에서 직접 소비·투입되는 수입물품
 - 또한 수입물품이 반출된 후 2년 내에 수출된 물품
- 그러나 수입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³⁷³⁾
- 동일한 등급의 국내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국내물품이 수입물품보다 먼저 가공된 경우
 - 동일한 등급의 국내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수출물품을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국내물품이 수입물품보다 먼저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 연료, 플랜트 장비가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거나

373)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14조

나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 동일한 수준의 국내 또는 수입 증류주, 포도주, 맥주가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 「관세율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 또는 추징된 수입 벌크 증류주, 포장 증류주, 포장 포도주는 다음의 범위의 경우³⁷⁴⁾
 - 이전에 당해 관세와 관련된 자에게 「관세율법」 또는 기타 의회 법에 따라 환급, 송금, 지급 등이 된 세액
 - 당해 관세와 관련된 자가 기타 의회 법에 따라 환급, 지급, 면제 등을 적용받은 세액
- 환급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캐나다로 직접 운송하는 시점부터 수출되거나 수출로 간주되는 동안 물품을 가공, 소유 또는 생산한 자가 신청할 수 있음³⁷⁵⁾
- 다만 증류주, 포도주 또는 맥주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증류주 등을 반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³⁷⁶⁾

2) 캐나다에서 생산된 물품

- 국세부 장관(Minister of National Revenue)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다음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소비세를 수출자, 제조자, 또는 생산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³⁷⁷⁾
- 캐나다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후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 또는 결합된 수입 부분품 및 재료

374)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14.1조

375)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9조

376)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10조

377) Canadian Manufactured Goods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제3조

-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를 제외한 수입 재료
-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부분품 및 재료를 수입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 직전 12개월 동안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것
 -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상호대체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수입물품과 동일한 등급의 국내 부분품 및 재료로 수출물품에 사용 또는 결합된 것
 -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상호대체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수입물품과 동일한 등급의 국내 재료로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를 제외한 것
- 수입 부분품 또는 재료가 투입된 생산과정의 결과 부산물이나 판매 가능한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되는 금액은 경감되어야 함³⁷⁸⁾
 - 부산물이 발생한 생산에 투입된 수입 부분품 또는 재료의 환급액은 총생산에 대한 부산물의 가격과 동일한 비율로 경감됨
 - 제조과정 중 판매 가능한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 부분품 또는 재료의 환급액은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의 캐나다 판매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경감됨
 - 다만 수입 부분품 또는 재료보다 높은 관세율로 산출되는 경우 경감하지 않음
- 수입 부분품 또는 재료에 대한 환급이 신청되기 직전 4년 이내에 관세, 소비세가 납부되는 경우 환급신청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짐³⁷⁹⁾
 - 환급신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수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이 첨부되어야 함³⁸⁰⁾
 - 신청인을 제외한 환급신청의 자격이 있는 자의 권리포기서

378) Canadian Manufactured Goods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제3조

379) Canadian Manufactured Goods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제7조 제1항

380) Canadian Manufactured Goods Exported Drawback Regulations 제6조 제1항

- 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사본, 수입·판매·양도 증명서, 수출용 판매 증명서, 수입 신고 목록

3) 자동차

- 자동차가 새것인 상태로 캐나다에서 구매자에게 판매된 후 수출된 경우 다음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관세가 환급됨³⁸¹⁾
 - 수입 후 수출되는 자동차
 - 자동차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트럭, 모터버스, 모터홈을 의미하지만 총중량 4.5359톤을 초과하는 트럭은 포함하지 않음
 - 수출되는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사용되는 수입물품
 - 수출되는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를 제외한 수입물품
 - 수출되는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물품
 - 동일한 등급이란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가공하는 때에 상호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자동차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상호대체되어 직접 소비·투입되는 것을 말함³⁸²⁾
 - 수출되는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동일한 등급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를 제외한 수입물품
- 환급신청은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자 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자, 캐나다에서 가공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공자가 할 수 있음³⁸³⁾
 - 환급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매자가 거주자이면 구매자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자가 아니면 배송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³⁸⁴⁾

381)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3조

382)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7조

383)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4조

384)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5조

- 자동차가 수출되기 전 구매자가 소유·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구매자 외의 자에 의한 사용
 - 보수를 받는 사람 또는 물품의 운송
 - 판매용 물품의 운송
 - 캐나다 사업자를 대리하여 판매 또는 가입 요청
 - 신청서에는 신청인 이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권리포기서가 포함되어야 함
-
- 자동차의 가공에 동일한 등급의 국내 또는 수입물품이 사용 또는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자동차는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2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³⁸⁵⁾
 - 또한 동일한 공장에서 물품이 자동차의 가공에 사용, 소비·투입되어야 함
 - 동일한 등급의 국내 또는 수입물품이 환급대상 수입물품보다 먼저 자동차의 가공에 사용, 소비·투입되는 경우 환급은 인정되지 않음³⁸⁶⁾

4) 노후 또는 잉여물품

- 수입물품 등이 캐나다에서 사용되지 않고, 노후되거나 남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음³⁸⁷⁾
 - 노후 또는 잉여물품이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함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 그 외의 물품의 경우 제조자, 생산자, 또는 화주가 노후 또는 잉여물품이라고 확인한 것
 - 캐나다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
 - 공공안전부 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폐기된 것
 - 폐기 전에 손상되지 않은 것

385)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5조

386) Exported Motor Vehicles Drawback Regulations 제6조

387) 「관세율법」 제109조

- 노후 또는 잉여물품에 대하여 환급될 수 있는 관세는 다음과 같음³⁸⁸⁾
 -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세(GST)를 제외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된 모든 관세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가공한 물품은 「소비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된 모든 관세
 - 연료 및 플랜트를 제외한 수입물품을 직접 소비·투입하여 캐나다에서 가공한 물품은 「소비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된 모든 관세

- 구식 또는 잉여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수입물품이 반출된 후 5년 내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함³⁸⁹⁾
 - 환급신청은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 그 외의 물품의 경우 제조자, 생산자, 또는 화주가 할 수 있음
 -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환급청구권자의 권리포기서가 첨부되어야 함

388) 「관세율법」 제110조

389) 「관세율법」 제111조

VI. 원산지제도

1. 원산지 표시

- 총독은 재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수입물품에 원산지 국가 또는 지리적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표시를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³⁹⁰⁾
-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방식과 원산지 표시에 적용되는 요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을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Non-CUSMA Countries) Regulations
 -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

가. 원산지 표시 대상

- CUSMA 물품은 최종구매자를 위해, 비CUSMA 물품은 최종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가 없는 경우 최종수령자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³⁹¹⁾

390) 캐나다 「관세율법」 제19조

391)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3조

- 최종구매자란 캐나다에서 물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형태로 물품을 마지막으로 구매한 자를 의미함³⁹²⁾
- 최종수령자란 캐나다에서 수입된 형태로 물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자를 말함
- CUSMA 협정국 또는 비CUSMA 국가에서 캐나다로 수입하는 ① 개인·가정용품 ② 철물 ③ 장식용품 및 운동용구 ④ 종이제품 ⑤ 의류 ⑥ 원예제품 ⑦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³⁹³⁾
- 다만 다음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³⁹⁴⁾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물품
 - 선물 또는 유증물품
 - 골동품 또는 수입되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이프 및 튜브를 제외한 중고물품
 -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이프 및 튜브를 제외한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고용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할 수 없는 것
 - 수입자가 수입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것
 - 외교물품,³⁹⁵⁾ 외국 국방물품³⁹⁶⁾
 -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이프 및 튜브를 제외한 캐나다에 수입된 후 수출될 물품
 - 임시면세입국을 목적으로 운송 중이거나 보세상태 또는 세관의 감시하에 있는 물품
 -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³⁹⁷⁾

392)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2조

393)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Non-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2조, Schedule I,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3조, Schedule I

394)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Non-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2조, Schedule II,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3조, Schedule II

395) 제9808호(외국 또는 영연방국가 정부의 대표단의 개인 또는 사무용품과 그의 가족 및 고용인의 개인용품)

396) 제9810호(총독이 지정한 외국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무기, 군용품, 군수품; 해당 국가의 캐나다 내 방위시설에 고용된 자의 개인용품으로 총독이 지정한 군사기관에 위탁한 것)

397) CUSMA 물품은 어떤 사유든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이 표시되어야 함

- 수출 전에 물품의 손상 없이 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
-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수출을 저해할 만큼의 상당한 비용이 없으면 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
- 기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외관을 상당히 손상시키지 않고 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
- 최종구매자에게 원산지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시된 용기에 담긴 상품
- 미가공 형태의 물품
-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생산한 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
- 물품에 원산지의 표시가 없더라도 최종구매자가 물품의 특성이나 수입상황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물품
- 표시 없이 수입된 물품으로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이 없으면 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목적이 표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것)
- 예술작품의 원본
- 도자재 건축용 벽돌,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전자집적회로³⁹⁸⁾
- 최종구매자가 없는 물품

398) CUSMA 물품은 물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분해되어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히 희석되는 경우, 부분품의 집합체로서 당해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함

〈표 2-VI-1〉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구분	물품
개인·가정용품	알루미늄제의 제빵 및 조리기구, 주철제의 제빵 및 조리기구, 편물 또는 직물의 목욕 매트 및 수건, 건전지, 담요, 빗 및 칫솔, 양초, 신용카드 및 신분증,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크롬도금의 식기 및 도구, 시가 및 담배라이터, 시계 및 무브먼트, 온도조절용 용기, 크롬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제의 칼붙이, 도기·경질도기·자기·반자기·사기제의 접시 및 장식품, 전자제품, 다리미판 커버 및 패드, 금속·플라스틱제의 주방용품, 칼, 잔디 깎는 기계, 성냥, 연필, 펜, 먼제의 베갯잇 및 시트, 면도날, 온도계, 타일, 우산,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제의 가정 및 주방용품, 시계팔찌
철물	금속제의 뚜껑, 구리 관, 알루미늄·황동·철강·기타 금속·플라스틱제의 I-형 강 레일 및 그 부분품, 전기 측정 장치, 판유리, 전기용 자기제 물품, 줄, 여과기, 전기용 관, 노끈, 방충망, 철강 파이프 및 관
장식용품 및 운동용구	북미 인디언 수공예품, 운동용 글로브 및 미트(Non-CUSMA 국가에 한함), 자전거, 장식품, 캐나다·주·준주·시·마을 또는 기타 지리적 위치의 기념품, 장난감, 게임·운동·스포츠용품
종이제품	선적 용기로 사용하기 위한 종이·판지·골판지·섬유판제의 상자 및 카톤, 석판화 또는 인쇄된 종이 및 제품
의류	부츠·신발·슬리퍼, 브래지어·코슬릿·가터벨트·거들·코르셋, 부츠 및 신발끈, 가죽 장갑, 헤어피스, 핸드백 및 지갑, 모자, 편물 의류, 플라스틱제의 우비, 천연 또는 인조섬유제의 의류
원예제품	작약의 휴면 상태이거나 꽃이 피거나 자라고 있는 괴경·괴근·관근·근경, 베고니아를 제외한 휴면 상태인 붓꽃 또는 기타 다년생 식물의 괴경·괴근·구경·관근·근경, 베고니아의 꽃이 피거나 자라고 있는 괴경·괴근·근경, 튜립을 제외한 휴면 중이거나 자라고 있는 인경, 과실수·견과류·수목·관목의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또는 접붙임용 가지, 수목·관목·덤불·덩굴·묘목, 크리스마스 트리, 장미덤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선을 제외한 제7206호 내지 7215호·제7216.10호 내지 제7216.50호·7216.99호·제7217호·내지 제7229호·제7301.10호·제7302.10호·제7302.40호·제7302.90호·제7304호 내지 제7306호의 철강제품, 선을 제외한 제7601호·제7604호 내지 제7609호의 알루미늄제품·제7616.99호의 주물 또는 단조제품

자료: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Non-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2조, Schedule I;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CUSMA Countries) Regulations 제3조, Schedule I

나. 원산지 표시 절차

1) 원산지 표시 시기

- 누구도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없음³⁹⁹⁾
 - 공공안전부 장관 또는 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메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음⁴⁰⁰⁾
 - 또는 수입자가 향후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CUSMA 협정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⁴⁰¹⁾
 - 원산지 표시 불이행 통지를 받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표시 불이행 통지를 받은 물품을 원산지 표시 없이 반출한 경우
 - 타인이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을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원산지는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표시되어야 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된 후 반출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표시될 수 있음⁴⁰²⁾
 - 물품이 우편으로 수입되지 않아야 함
 - 수입물품의 유사 또는 동일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불이행 통지가 수입자에게

399) 캐나다 「관세법」 제35.01조

400) 캐나다 「관세법」 제35.02조 제2항

401) 캐나다 「관세법」 제35.02조 제4항

402)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3조; 제14조

발급된 적 없거나 수입일 30일 전 또는 2년 이내에 발급된 적이 없어야 함

-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 전에 원산지를 수입자가 캐나다에서 표시할 것이라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

-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러한 통지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통지할 수 있음

- 캐나다 내에서의 원산지 표시 통지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서면 지시사항을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⁴⁰³⁾

- 세관공무원의 지시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캐나다 내의 세관 또는 보세창고

- 원산지 표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

- 원산지 표시를 완료하였는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기 위한 캐나다 내의 세관 또는 보세창고

- 수입 전에 원산지를 표시하겠다고 통지한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와 관세를 납부하는 때 지시사항 사본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함⁴⁰⁴⁾

- 반면 수입하는 때에 원산지를 표시하겠다고 통지한 수입자는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지시사항 사본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2) 원산지 표시 방법

- 원산지 표시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영구적이어야 하며, 물품이나 용기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동안 쉽게 눈에 띄어야 함⁴⁰⁵⁾

- CUSMA 물품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비CUSMA 물품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⁴⁰⁶⁾

403)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5조

404)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6조

405)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5조

406)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 다만 온두라스가 원산지인 물품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표시되어야 함
- 국가의 약어는 최종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원산지 국가를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로 사용될 수 있음⁴⁰⁷⁾
- 물품에 최종구매자 또는 최종수령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원산지는 이러한 표현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함⁴⁰⁸⁾
 - Canada, Canadian, Canadien 또는 이들의 약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의 이름이 원산지 표시 대신 물품에 나타난 경우 최종구매자 또는 최종수령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산지는 made in, produced in, printed in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함
- 철 또는 철강의 파이프 또는 튜브의 원산지는 페인트 스텐실, 금형 각인, 주조, 식각 또는 조각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⁴⁰⁹⁾
 - 그러나 내경이 4.8cm 이하인 파이프 또는 튜브가 묶음으로 수입되는 경우 각 묶음에 꼬리표를 달거나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표면 마감이 중요한 파이프 또는 튜브는 각 파이프 또는 튜브에 꼬리표를 달거나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⁴¹⁰⁾
- 인쇄되거나 석판 인쇄된 종이제품은 종이제품에 인쇄 또는 석판 인쇄된 다른 문자나 이미지만큼 진한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⁴¹¹⁾
 - 이 경우 원산지 표시는 1.6mm보다 작지 않아야 함
- 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Marking Goods

407)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7조

408)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409)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8조

410)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조

411)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CUSMA Countries) Regulations에 따라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용기의 상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달라짐⁴¹²⁾

- 용기가 비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용기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용기에 내용물이 들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내용물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내용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용기를 쉽게 열 수 있는 경우
 -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가 용기를 통하여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2. 원산지 증명

- 수입자 또는 화주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 진술, 증명을 포함한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함⁴¹³⁾
 - 수입자, 화주 또는 기타 관련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가 거절되거나 철회될 수 있음
 - 공공안전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총독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원산지 증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진술, 증명과 원산지 증명의 양식 등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은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 정하고 있음

412) 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1조; 제12조

413) 캐나다 「관세법」 제35.1조

가. FTA 협정국이 아닌 국가 물품

1) 일반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

- 수입자 또는 화주는 일반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¹⁴⁾
 - 원산지증명서는 수혜국의 수출자가 서명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가 연장된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⁴¹⁵⁾
 -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물품은 수입자 또는 화주가 다음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
 - 수혜국의 수출자가 서명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수출자의 진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자의 진술서를 수입자 또는 화주가 가지고 있음을 세관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 섬유 및 의류는 수입자 또는 화주가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자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음을 세관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 캐나다로 입국하는 개인의 동반 또는 위탁 수하물인 일상(casual) 물품이 수혜국 외의 국가가 원산지라는 증거가 없고, 재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수입 시 신고된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됨⁴¹⁶⁾
 - 일상물품이란 상업용 물품을 제외하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⁴¹⁷⁾

414)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제2항

415)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제3항

416)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제4항

417)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조

- 상업용 물품은 판매용, 산업용, 직업용, 상업용, 기관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물품을 말함

[그림 2-VI-1] 수출자 원산지 진술서

I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or in the attached invoice # _____ were produced in the beneficiary country of _____ and that at least _____ per cent of the ex-factory price of the goods originates in the beneficiary country/countries of _____ _____ <i>Name and title</i> _____ <i>Corporation name and address</i> _____ <i>Telephone and fax numbers</i> _____ <i>Signature and date (day/month/year)</i>

자료: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Schedule

- 일반특혜관세가 신청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홍콩에서 선적되어 캐나다를 수하인으로 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는 원산지 증명에서 면제됨⁴¹⁸⁾
 - 홍콩의 수출자 또는 중국의 생산자가 서명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진술서를 관세 납부 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부분이 최소한 공장도 가격의 60%가 되어야 함

2) MFN 관세, 호주 관세, 뉴질랜드 관세

- 수입자 또는 화주는 MFN 관세, 호주 관세, 뉴질랜드 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¹⁹⁾

418)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제5항

419)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5조 제2항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판매자 또는 양수인이 서명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수입자 또는 화주가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다음의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요구에서 면제됨⁴²⁰⁾
 - 수입자 또는 화주가 작성한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임을 나타내는 캐나다 세관송장
 - 캐나다세관송장이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임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수출국의 판매자 또는 양수인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업송장
 -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임을 나타내는 기타 서류

〈표 2-VI-2〉 비FTA 국가의 원산지 증명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 증명 양식	발급자
일반관세	WTO 협정국이 아니고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	캐나다세관송장, 상업송장, 기타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송장에 나타난 판매자
MFN 관세	WTO 협정국	캐나다세관송장, 상업송장, 기타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송장에 나타난 판매자
일반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 수혜국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원산지 진술서	수혜국의 물품 수출자
최빈개발도상국 관세	최빈개발도상국 수혜국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원산지 진술서, 섬유 및 의류 원산지증명서	수혜국의 물품 수출자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	영국연방 카리브해 국가 관세 수혜국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진술서	수혜국의 물품 수출자
호주 관세, 뉴질랜드 관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세관송장, 상업송장, 기타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송장에 나타난 판매자

자료: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420)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5조 제3항

나. FTA 협정국 물품

1) CUSMA,⁴²¹⁾ CCFTA, CCRFTA, CPFTA, CCOFTA, CPAFTA

- 수입자 또는 화주는 CUSMA, CCFTA, CCRFTA, CPFTA, CCOFTA, CPA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²²⁾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 또는 화주는 원산지증명서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함⁴²³⁾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4년간 다음에 대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⁴²⁴⁾
 - 물품의 단일 수입
 - 서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일한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의 2 이상의 수입
-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또는 파나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됨⁴²⁵⁾
 - 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화주에 의해 서명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수입자의 신고서는 수입자가 가지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증거서류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⁴²⁶⁾

421)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는 아직 NAFTA로 규정하고 있음

422)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제1항

423)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7조

424)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8조; 제9조

425)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제2항

426) 캐나다 「관세법」 제35.1조 제3.1항

-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한 일상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자격이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됨⁴²⁷⁾
 - 미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취득한 일상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각 협정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며 협정국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²⁸⁾
 - 각 협정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물품이 각 협정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었음이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없는 물품으로 물품이 각 협정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경우
 - CUSMA의 경우 미국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멕시코에서의 생산이 표시된 미국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 멕시코에 대한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⁴²⁹⁾
 - 마찬가지로 멕시코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의 생산이 표시된 멕시코에서 취득한 물품은 미국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예상되는 관세 과세가격이 3,300캐나다달러 미만⁴³⁰⁾인 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요구는 면제됨⁴³¹⁾
 - 상업용 물품이 원산지 증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된 일련의 수입의 부분이 아니어야 함
 - 일련의 수입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한 하나의 상업송장에 포함되는 물

427)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제3항

428) CUSM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C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CR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P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P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CO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CPA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429) CUSM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430)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는 NAFTA의 경우 2,500캐나다달러, CCFTA, CCRFTA, CPFTA, CCOFTA, CPAFTA의 경우 1,600캐나다달러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CBSA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상업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됨(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431)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제4항

품의 2 이상의 수입을 말함

- 또한 상업용 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또는 파나마가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진술이 포함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서명한 영어 또는 프랑스로 작성된 상업송장
 - 미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또는 파나마가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영어 또는 프랑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
-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CUSMA 특혜관세가 신청된 경우 당해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 육로를 통하여 운송된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요건이 면제됨⁴³²⁾
- 제8601호 또는 제8602호에 분류되는 철도용 기관차, 제8606호에 분류되는 철도용 화차

2) CJFTA

- 수입자 또는 화주는 CJ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³³⁾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 또는 화주는 원산지증명서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함⁴³⁴⁾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4년간 다음에 대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⁴³⁵⁾

432)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제5항

433)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1조 제1항

434)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2조

435)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3조, 제9.4조

- 물품의 단일 수입
 - 서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일한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의 2 이상의 수입
-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물품의 원산지가 요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됨⁴³⁶⁾
- 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화주에 의해 서명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한 일상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자격이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됨⁴³⁷⁾
- 요르단에서 취득한 일상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르단을 원산지로 간주하며 요르단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³⁸⁾
 - 요르단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물품이 요르단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었음이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없는 물품으로 물품이 요르단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경우
- 예상되는 관세 과세가격이 3,300캐나다달러 미만⁴³⁹⁾인 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특혜 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요구는 면제됨⁴⁴⁰⁾
- 상업용 물품이 원산지 증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된 일련의 수입의 부분이 아니어야 함

436)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1조 제2항

437)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1조 제3항

438) CJ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439)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는 1,600캐나다달러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CBSA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상업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됨(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440)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1조 제4항

- 또한 상업용 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요르단이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진술이 포함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서명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상업송장
 - 요르단이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

3) CIFTA

- 수입자 또는 화주는 CI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⁴¹⁾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가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 또는 화주는 원산지증명서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함⁴⁴²⁾
 -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에 대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⁴⁴³⁾
 - 물품의 단일 수입
 - 서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일한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의 2 이상의 수입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으로부터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선적된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경미한 가공만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Declaration Minor Processing)가 원산지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⁴⁴⁴⁾
 - 경미가공 신고서는 미국의 수출자가 서명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경미한 가공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함

441)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제1항

442)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1조

443)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조

444)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제1.1항

- 경미한 가공 외에 미국영토 내에서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물품과 관련하여 미국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가공이 물품 거래가격을 10% 이상 상승시키지 않은 경우
 - 다만 제50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 제외함
-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물품의 원산지가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됨⁴⁴⁵⁾
- 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화주에 의해 서명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미국을 경유한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경미가공 신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함
-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한 일상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자격이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됨⁴⁴⁶⁾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에서 취득한 일상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며 CI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⁴⁷⁾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이스라엘, CIFTA 수혜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었음이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없는 물품으로 물품이 이스라엘, CIFTA 수혜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경우
- 예상되는 관세 과세가격이 3,300캐나다달러 미만⁴⁴⁸⁾인 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요구는 면제됨⁴⁴⁹⁾

445)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제2항

446)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제3항

447) CI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448)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는 1,600캐나다달러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CBSA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상업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됨(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449)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0조 제4항

- 상업용 물품이 원산지 증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된 일련의 수입의 부분이 아니어야 함
- 또한 상업용 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진술이 포함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서명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상업송장
 -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이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

4) CEFTA

- 수입자 또는 화주는 CE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⁴⁵⁰⁾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4년간 다음에 대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⁴⁵¹⁾
 - 물품의 단일 수입
 - 서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일한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의 2 이상의 수입
-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물품의 원산지가 EFTA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됨⁴⁵²⁾
 - 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화주에 의해 서명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450)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1조 제1항

451)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2조, 제12.3조

452)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1조 제2항

-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한 일상물품이 CEFTA 특혜관세 적용 자격이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됨⁴⁵³⁾
 - 각 EFTA 국가에서 취득한 일상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각 EFTA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며 각 EFTA 국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⁵⁴⁾
 - 각 EFTA 국가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물품이 각 EFTA 국가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었음이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없는 물품으로 물품이 각 EFTA 국가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경우
 - 특정 EFTA 국가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다른 EFTA 국가에서의 생산이 표시된 특정 EFTA 국가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인 다른 EFTA 국가에 대한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예상되는 관세 과세가격이 3,300캐나다달러 미만⁴⁵⁵⁾인 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요구는 면제됨⁴⁵⁶⁾
 - 상업용 물품이 원산지 증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된 일련의 수입의 부분이 아니어야 함
 - 또한 상업용 물품의 수입자 또는 화주가 관세를 납부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FTA 국가가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진술이 포함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서명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상업송장
 - EFTA 국가가 물품의 원산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

453)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1조 제3항

454) CEFTA Rules of Origin for Casual Goods Regulations 제2조 내지 제4조

455)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에서는 1,600캐나다달러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CBSA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상업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됨(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456)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9.1조 제4항

〈표 2-VI-3〉 FTA 국가의 원산지 증명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 증명 양식	발급자
CCFTA	칠레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COFTA	콜롬비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CRFTA	코스타리카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EFTA	E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CETA	EU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CHFTA	온두라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IFTA	이스라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JFTA	요르단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KFTA	한국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PAFTA	파나마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PFTA	페루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CUFTA	우크라이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CPTPP	CPTPP 체결국	특정양식 없이 최소 요구정보 포함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CUSMA	미국, 멕시코	특정양식 없이 최소 필수정보 포함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자료: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origin-origine-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2.

3. 원산지 사전심사

가.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 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수입되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원산지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할 수 있음⁴⁵⁷⁾
 -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 및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457) 캐나다 「관세법」 제43.1조 제1항

○ FTA 협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물품이 수출된 경우 각 협정의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

〈표 2-VI-4〉 FTA별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구분	국가 및 지역	조항	사전심사 대상
CCFTA	칠레	제E-0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의 생산의 결과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이 되었는지 여부 (b)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거래가격 또는 순원가에 따라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한 관세 평가 원칙에 따른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및 방법 (d)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원가 또는 중간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Uniform Regulations의 할당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할당비용의 적절한 근거 및 방법 (f)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한쪽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g) 상품이 섬유 및 의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등급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h)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CCOFTA	콜롬비아	제41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품목분류, 적용 가능한 관세율, 수입에 적용가능한 조세, 할당신청에 대한 정보 (b)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한쪽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d)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

〈표 2-VI-4〉의 계속

구분	국가 및 지역	조항	사전심사 대상
CCRFTA	코스타리카	제V.9조 제1항, 제IX.2조 제10항	제V.9조 제1항 (a)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의 생산의 결과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이 되었는지 여부 (b)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한 관세평가 원칙에 따른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및 방법 (d)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e)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한쪽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f)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제IX.2조 제10항 품목분류, 적용 가능한 관세율, 수입에 적용 가능한 조세, 상품이 당해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의 자격을 갖추거나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CUSMA	미국, 멕시코	제7.5조 제4항	(a) 품목분류 (b) 관세평가 규정에 따른 특정 경우에 대한 관세평가 기준의 적용 (c) 당해 협정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상품의 원산지 (d) 상품이 할당 또는 할당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e)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CEFTA	EFTA	부속서 C 제28조 제2항	제품의 원산지 지위
CHFTA	온두라스	제5.10조 제1항, 제6.2조 제11항	제5.10조 제1항 (a)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의 생산의 결과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이 되었는지 여부

〈표 2-VI-4〉의 계속

구분	국가 및 지역	조항	사전심사 대상
CHFTA	온두라스	제5.10조 제1항, 제6.2조 제11항	(b)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한 관세 평가 원칙에 따른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및 방법 (d) 상품의 원산지 상품 여부 (e)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한쪽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f)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제6.2조 제11항 (a) 품목분류 (b) 적용가능한 관세율 또는 수입에 적용가능한 조세 (c) 상품의 당해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의 자격 또는 원산지 상품 여부
CJFTA	요르단	제6-2조 제10항	품목분류, 수입에 적용 가능한 관세율(부가세(surtax)나 추가비용은 제외)
CKFTA	한국	제4.10조 제1항	(a)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발생한 생산의 결과로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b)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거래가격, 공장도 가격 또는 순원가에 기초한 가치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하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d)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e)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표 2-VI-4〉의 계속

구분	국가 및 지역	조항	사전심사 대상
CKFTA	한국	제4.10조 제1항	(f) 품목분류, 적용 가능한 관세율 또는 수입에 적용 가능한 조세 (g)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CPAFTA	파나마	제5.02조 제10항	품목분류, 적용 가능한 관세율 또는 수입에 적용 가능한 조세 (부가세(surtax)나 추가비용은 제외)
CPFTA	페루	제419조 제1항	(a) 품목분류, 적용 가능한 관세율, 수입에 적용 가능한 조세, 할당 적용에 대한 정보 (b)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한쪽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규정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상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d)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
CUFTA	우크라이나	제4.8조	품목분류, 관세율(부가세(surtax)나 추가비용은 제외)

자료: 캐나다 「관세법」 Schedule Part 3 및 각 FTA 협정

나.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은 물품이 수입되기 120일 전 이내에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여야 함(458)
-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캐나다의 물품 수입자
 -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 체약상대국 내의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물품이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에서 생산된 경우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내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
 - 물품이 이스라엘 또는 CIFTA 수혜국에서 생산된 경우 이스라엘, CIFTA 수혜국, 미국 내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

458)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2조; 제4조

- 사전심사 신청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하여야 함⁴⁵⁹⁾
- 사전심사 신청은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⁴⁶⁰⁾
 - 세관공무원은 신청인이 추가정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⁴⁶¹⁾
- 세관공무원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과 사실을 근거로 일괄된 사전심사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결정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발급해야 함⁴⁶²⁾
 - 또한 사전심사 신청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⁴⁶³⁾
-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과 사전심사 결정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⁴⁶⁴⁾
 - 사전심사 결정은 발급일 또는 사전심사 결정에 명시된 일 중 물품의 수입일보다 늦지 않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⁴⁶⁵⁾
 - 사전심사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물리적 사실·상황이 변경되지 않고 모든 조건·요건이 준수되며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유효함⁴⁶⁶⁾
-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그 결과가 사전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발급을 연기할 수 있음⁴⁶⁷⁾

459)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5조
 460)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6조
 461)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2항
 462)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7조; 제8조
 463)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9조
 464)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1조
 465)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0조
 466)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2조
 467)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1항

- 사전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
 - 원산지의 검토, 재결정, 추가 재결정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또는 법원의 심리

- 세관공무원은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수정 또는 취소의 발효일을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⁴⁶⁸⁾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⁴⁶⁹⁾
 - 사전심사 결정이 사실의 오류 또는 물품이나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목분류의 오류에 근거한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수출된 물품의 사전심사 결정이 역내가치 포함 요건의 적용 오류에 근거한 경우
 - CUSMA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의 사전심사 결정이 물품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의 적용 오류에 근거한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에서 수출된 물품의 사전심사 결정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캐나다에서 수출된 후 당해 국가에서 캐나다로 재반입되는 물품의 무관세 대우를 결정하는 규정의 적용 오류에 근거한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에서 수출된 물품의 사전심사 결정이 각 FTA의 시장접근 규정 또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 동의한 해석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물리적 사실·상황이 변경된 경우
 - 원산지 검증 규정에 따라 FTA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가 거절되거나 철회된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수출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역내

468)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4조; 제16조

469) Free Trade Agreement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4조

가치포함 요건에 관한 사전심사 또는 기타 사전심사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수출된 물품의 수출 또는 생산이 역내가치포함에 관한 사전심사의 물리적 사실 또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CUSMA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수출된 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 및 가치 계산 또는 비용 할당의 근거 또는 방법이 역내가치포함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에 기인한 경우
- 각 FTA 협정의 시장접근 규정,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경우
- 캐나다 법원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있거나 캐나다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의 수정 또는 취소는 수정 또는 취소의 발급일 또는 통지에 기재된 날짜 중 늦은 날짜부터 유효하며,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⁴⁷⁰⁾

- 수정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효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도 적용됨⁴⁷¹⁾
 - 수정 또는 취소가 사전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의 손해가 되는 경우
 - 수정 또는 취소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
- 반면 세관공무원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을 선의로 신뢰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전심사 결정의 수정 또는 취소의 발효를 연기할 수 있음⁴⁷²⁾
 - 세관공무원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470)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1항; 제14조

471)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3조 제2항

472) Tariff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s Regulations 제16조

VII. 보세제도

1. 보세창고

가. 보세창고별 물품의 장치

1) 세관보세창고

가) 물품의 장치

- 세관보세창고는 CBSA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되며 세관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캐나다에 수입된 것으로 간주됨⁴⁷³⁾
- 세관보세창고의 물품은 통상 수입은 되었으나 캐나다 내로 반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소비세 및 물품서비스세와 같은 내국세는 반출되기 전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됨
- 세관보세창고는 CBSA에서 규제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개인 또는 회사의 자체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용 창고 또는 다수의 수입업자의 수

473)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 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용 창고로 구분할 수 있음⁴⁷⁴⁾
- 수출대상물품과 내국물품은 외국물품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세관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음
 - 세관보세창고는 위탁수입, 재고보관 및 수출용 물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최대 4년까지 물품 보관이 가능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⁴⁷⁵⁾
 - 세관보세창고에서는 물품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 취급 또는 운송을 위한 조립 또는 분할 또는 재조립, 물품검사, 마킹, 라벨, 태그부착작업, 포장, 포장해체,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물품제조는 허용되지 않음⁴⁷⁶⁾
 - 세관보세창고에서는 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 희석, 보존작업, 제품 결함여부 판단, 등급평가, 절단작업 등의 간단한 보수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물품과 및 내국물품을 혼합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간단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서 전시할 물품을 임시수입하려는 경우에도 관세 및 세금부과가 보류된 채로 물품장치가 가능함⁴⁷⁷⁾
 - 세관보세창고에는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임시 세관보세창고 면허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물품이 임시 세관보세창고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고 필 요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시물품에는 스탠드, 테이블, 배경장식, 전시부스와 같은 전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이 포함되며 관세 관련 법령상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은 반 입이 허용되지 않음

474)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75)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76)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20조

477)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 세관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은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요구되는 허가, 증명, 승인, 면제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⁴⁷⁸⁾
 - 세관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할 때 수입물품과 관련된 모든 허가, 증명, 승인 또는 면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충족 여부 또는 권한 부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창고운영인은 즉시 CBSA에 통지하여야 함
 - 허가 및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요건에 대하여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해 세관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음
 - 수입물량할당(TRQ)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에 따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은 캐나다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수입허가를 보유하여야 세관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음

- 장치하려는 물품이 주류인 경우 주류면허소지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류의 판매를 허가하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주류를 반입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보세창고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⁴⁷⁹⁾
 - 해당 세관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주류당국은 모든 세관보세창고 거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구역을 지정함
 - 주류당국은 매주 보고기간 동안 수행된 모든 세관보세창고별 모든 거래기록을 포함하는 주간 회계정보를 보관 및 관리해야 함
 - 주류당국은 이전에 수입된 재고 또는 주류의 브랜드번호가 CBSA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경우 모든 수입주류재고에 대하여 재고관리기법상 평균가치법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함

- 세관보세창고에 반입된 담배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외교관에게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로부터 수출하려는 경우, 면세점에 판매하려는 경우, 선박 내 판매점에 납품하려

478)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79)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관보세창고에서 수령할 수 있음⁴⁸⁰⁾

나) 창고의 운용방법

- 세관보세창고의 경우 이를 운영하려는 창고 운영인은 해당 창고를 관할하는 가장 가까운 CBSA의 사무실에 회사명, 세관과의 거리, 보관할 물품유형, 담보제공 여부를 기재하여 보세창고운영면허를 신청해야 함⁴⁸¹⁾
 - 세관보세창고를 운영할 자세한 약도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창고장치 물품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운영계획상 지정된 영역에 장치하여야 함
 - 주류를 취급하려는 보세창고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 주류기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형화기와 무기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용 소형화기 면허를 획득한 후 면허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보세창고의 신청인이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유면허번호를 가진 세관보세창고 면허가 발급됨

- 세관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캐나다 세입징수관에게 제공해야 함⁴⁸²⁾
 - 제공해야 하는 담보액은 세관보세창고 면허발급 이후 연중 지불해야 하는 관세 및 제세의 최대액의 60%로 산정함
 - 유가증권은 최소한 매년 그 가액을 재평가하며 지난 회계 연도에 지불한 최대 관세 및 세금에 따라 담보액이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음
 - 담보로 제출한 채권의 금액이 다수의 세관보세창고에 대해 필요한 금액의 합계인 경우 동일한 CBSA 사무실 관할 지역 내에서 개인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모

480)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81)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82)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든 세관보세창고에 대해 하나의 채권을 제출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음

-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로는 현금, 수표, 캐나다 정부발행채권 등이 있음⁴⁸³⁾
 -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은 현지 CBSA 사무소에 보관하며 모든 변경 및 변동 사항은 세관보세창고의 관할 CBSA 지역사무소에서 관리함
- 공공안전부 장관은 세관보세창고 운영인의 이름이 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면허를 수정할 수 있음⁴⁸⁴⁾
- 공공안전부 장관은 세관보세창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⁴⁸⁵⁾
-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면허를 받은 자의 재무상태가 관리대상인 경우, 수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창고 운영시 통관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들과의 거래에서 부정하게 행동한 경우, 창고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공공안전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면허를 받은 운영인이 창고로 허가된 장소를 더 이상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
 -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물품의 양이 더 이상 보세창고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보세창고가 위치한 지역에 더 이상 보세창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CBSA가 더 이상 해당 세관보세창고와 관련하여 세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보세창고 운영인이 창고 면허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조작, 개봉, 포장, 변경 또는 결합하는 경우

483)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4조

484)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6조

485)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8조 제1항

- 공공안전부 장관에 의해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세관보세창고 면허를 받은 자에게 즉시 정지 또는 취소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함⁴⁸⁶⁾
 - 면허가 정지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창고를 잠그고 봉인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기간 동안에는 봉인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음
 - 세관보세창고 운영인은 면허정지에 대해 정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세관보세창고 면허자는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공공안전부 장관은 면허자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수행되거나 더 이상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지 또는 취소를 철회할 수 있음⁴⁸⁷⁾
 -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에서 복구되면 세관보세창고 면허를 받은 자는 등기우편으로 서면통지를 받고 창고를 운영할 수 있음

- 반면 신청인이 면허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60일 전에 가장 가까운 CBSA 사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⁴⁸⁸⁾
 - CBSA는 그 철회요청을 승인할 수 있고 세관보세창고에 저장된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지정세관양식을 활용하여 CBSA에 보고하여야 함
 - 세관보세창고시설의 소유권 변경 또는 활동사항 또는 장치물품의 유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CBSA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세관보세창고에서 적법하지 않게 반출된 물품은 압류될 수 있음⁴⁸⁹⁾
 - 반출된 물품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출된 물품의 부과될 관세와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음⁴⁹⁰⁾

486)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9조; 제10조

487)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9조; 제10조

488)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489) 캐나다 「관세법」 제110조 제1항

490) 캐나다 「관세법」 제124조 제1항

다) 보관기간 및 기록관리

- 세관보세창고의 원칙적인 창고보관기간(4년)에도 불구하고 장치되는 물품유형에 따라 장치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수입물품이 맥주 및 와인 등 주류인 경우에는 5년 동안 장치할 수 있음⁴⁹¹⁾
 - 장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세관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장치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

- 전시물품은 최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컨벤션,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서 전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야 함⁴⁹²⁾
 - 전시회 등 운영인, 기획자 또는 컨벤션호텔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수입물품에 적절한 원산지 규정을 표시하여야 함⁴⁹³⁾

- 세관보세창고의 창고기록관리시스템은 CBSA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반입물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⁴⁹⁴⁾
 - 세관보세창고 운영인은 수입물품이 창고에 반입되었을 때 수입업자에게 물품수령증을 제공하여 창고에 물품을 수령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장치된 물품의 최종 반출 시까지 물품관리의무에 대한 책임은 세관보세창고 운영인이 진다는 것임을 의미함
 - 세관보세창고에의 반입 또는 반출, 창고 내 이동, 다른 세관보세창고로의 반입 및 반출, 창고 내에서 반입물품 조작, 포장해체, 재포장, 변경 또는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함

491)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19조
492) Customs Bonded Warehouses Regulations 제19조
493) Memorandum D11-3-1 Marking of Imported Goods
494) Memorandum D7-4-4 Customs Bonded Warehouses

- 외교관에게 판매할 물품으로서 세관보세창고 반입 시 제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외교관의 의무면제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함

2) 세관보세창고

가) 창고의 운용방법

- 선적용보세창고(Sufferance Warehouses, SW)는 보세물품의 통제, 양도, 검사를 위해 허가받은 운영시설로서 세관보세창고와 유사한 기능을 하나 최대 40일까지의 단기보관 및 수입품 검사 목적으로 이용됨⁴⁹⁵⁾
- 선적용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운영허가 신청서⁴⁹⁶⁾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제출해야 함⁴⁹⁷⁾
 - 선적용보세창고의 운영인은 개인의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사업상 파트너를 대표하여 한 명이 신청할 수 있고 CBS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총기, 금지된 탄약, 장치, 무기를 보관하려는 선적용보세창고 신청인은 총기등록소로부터 운송업면허 또는 총기면허를 취득한 후 창고면허 신청 시 해당 면허증을 제출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신청서는 창고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CBSA사무소에 3부씩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건축물 유형, 물품보관에 사용될 장소, 칸막이, 문, 창문 및 계단위치, CBSA를 위한 검사실 또는 사무실의 위치 및 크기 등을 나타낸 청사진
 -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같은 화재안전장비 유형에 대한 정보

495)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496) 신청양식은 E400, E400B 및 E400C 유형으로 나뉘고 어떠한 양식을 사용할지는 창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캐나다 CBSA 홈페이지(<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4/d4-1-4-eng.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497)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창고건물, 주차 구역의 위치를 보여주는 부동산의 부지 평면도
 - 화물 취급 계약서 사본 등
-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CBSA에 의해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창고운영을 할 수 없음⁴⁹⁸⁾
- 선적용보세창고 신청인은 창고시설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CBSA의 운영 승인을 받기 전까지 창고시설의 개조 또는 새로운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됨
- CBSA는 창고시설이 위치, 적합성, 난방, 조명요건 등이 CBS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고를 조사한 후 10업무일 간 창고운영허가신청결과를 게시함⁴⁹⁹⁾
- 신청인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CBSA는 신청비용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선적용보세창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고 면허를 발급함⁵⁰⁰⁾
- 선적용보세창고를 신청할 때에는 500캐나다달러의 신청비용을 CBSA에 납부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에는 담보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연간 1천회의 반입 또는 반출건을 기준으로 1천캐나다달러로 계산하며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담보액으로 최소한 2만캐나다달러 이상 보유해야 함
 - 동일한 CBSA 사무실 지역 관할 내에 위치한 여러 선적용보세창고에 대해 하나의 담보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관할하는 지역 CBS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담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CBSA 사무소에 변동신청을 하여 새로운 담보 제공사항 또는 담보액수정사항을 보고해야 함⁵⁰¹⁾

498)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499)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0) 캐나다 「관세법」 제91조 제4항

501) 캐나다 「관세법」 제91조 제4항

- CBSA는 선적용보세창고의 보증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가 창고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 경우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창고 운영인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이전에 제공한 담보의 종료일 전에 CBSA에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창고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면허에 대해 매년 1회 면허비용을 지불해야 함⁵⁰²⁾
- 회계연도상 10월 1일 이후에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면허비용은 50% 면제됨
 - 관할 CBSA 사무소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연간 면허비용을 창고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창고 운영인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비용을 지불해야 함
 - 연간 면허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창고운영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이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면허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구비·유지해야 함⁵⁰³⁾
- 출입문, 튼튼한 구조의 건물, 문과 창문의 안전한 잠금장치 포함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충분한 공간, 장비 및 인력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보세창고 운영 및 재고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함
- 공공안전부 장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CBSA는 면허 소지자에게 즉시 정지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정지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502)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3)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창고 운영인은 면허정지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90일 내에 제공해야 할 수 있음⁵⁰⁴⁾

- 창고 운영인이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CBSA가 정지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철회됨
 - CBSA는 정지된 면허가 복원되면 등기우편으로 창고 운영인에게 통지함
- 공공안전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CBSA는 취소하려는 날짜 90일 전에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CBSA는 창고 운영인에게 취소 사유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⁵⁰⁵⁾
- 창고 운영인은 90일 이내에 CBS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CBSA는 이를 고려하고 취소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취소통지를 철회할 수 있음
- 선적용보세창고의 시설소유권 또는 시설에 대한 통제권한의 변경이 계획된 경우 창고 운영인은 변경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CBSA에 통보해야 함⁵⁰⁶⁾
- 창고 운영인은 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창고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관할 지역 CBSA 사무소에 선적용보세창고 임대신청을 해야 함
 - 창고 임차인은 500캐나다달러의 면허비용 및 창고 내 임대구역을 지정하는 평면도 및 선적용보세창고의 담보액을 CBSA에 제공해야 하며 CBSA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면허 및 관련 정보가 창고 임차인에게 전송됨
 - 창고 임대인은 CBSA에 창고 내 하위 임대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배치, 축소, 확장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504)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5)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6)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선적용보세창고의 위치 변경을 계획할 때 창고 운영인은 CBSA에게 최소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E400 양식)으로 통보해야 하며 CBSA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창고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CBSA는 기존 창고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⁵⁰⁷⁾
 - 창고 운영인의 창고 위치 변경신청이 승인되면 CBSA는 이 위치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며 창고 운영인은 이전된 창고에 새로운 담보금액을 제공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최소 60일 전에 CBSA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CBSA는 선적용보세창고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⁵⁰⁸⁾
 - 갑작스럽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창고가 폐쇄된 경우(예: 화재, 파산) 창고 운영인은 CBSA가 시설 및 창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CBSA 사무소에 즉시 폐쇄사실을 통보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이 창고를 폐쇄하려는 경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CBSA에 통보해야 함⁵⁰⁹⁾
 - 모든 창고 내 반입물품은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거나 창고를 폐쇄하기 전에 CBSA가 승인한 장소로 물품을 이전하거나 캐나다로부터 수출하여야 하며 CBSA는 창고 내 모든 반입물품이 이전되었는지 창고점검을 실시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내 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창고건물과 보관구역 내에 보관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음⁵¹⁰⁾
 - CBSA는 장치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창고 운영인에게 창고 내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물품을 하역하는 데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창고 내에 CBSA의 검사를 위해 포장을 해체하고 재포장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507)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8)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09)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0)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CBSA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승인된 사람만 창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 외에 운송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수입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항상 수입물품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의 건축물은 관할 CB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⁵¹¹⁾
 - 건물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화물출입구가 있는 보관구역
 - 온도조절이 가능한 사무실구역, 검사구역, 또는 CBSA 담당검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며 검사실의 경우 CBSA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장소를 제공하면 됨
 - CBSA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BSA 문서의 안전한 보관구역
- 선적용보세창고는 창고 건물 또는 창고 구역 내에 보세화물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보세화물은 일반화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보세화물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사람만이 가능해야 함⁵¹²⁾
 - 창고가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고 현재 건설 중인 경우 CBSA에 제출된 원래 건설계획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원 건설계획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BSA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내 사무실의 축소 또는 확장, 화물출입구, 창문, 물리적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CBS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내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그림을 관할 CBS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창고구조의 변경이 아니면 별도의 구조변경신청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함

511)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2)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운송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창고에 반입된 모든 화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창고로 반입 또는 창고로부터 반출된 모든 화물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⁵¹³⁾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운송인의 화물관리 문서, 선하증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에 서명과 날짜를 승인하여 화물확인을 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에 대한 책임을 짐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에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창고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보관을 거부할 수 있음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장치된 물품 중 수입담배제품 또는 와인 등 주류의 경우에는 CBSA의 승인을 받고 물품에 스탬핑 등 별도 표시를 할 수 있음⁵¹⁴⁾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관기한이 지난 후 첫 업무일에 모든 물품의 목록을 CBSA에 제공해야 하며 CBSA는 해당 목록의 물품을 미반출 물품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⁵¹⁵⁾

- CBSA는 정기적으로 창고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설 및 장비가 운영목적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의 면허를 일시 중단 또는 취소함⁵¹⁶⁾

- 선적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에 저장된 모든 화물을 보관하고 물품이 캐나다로 반입되거나 합법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책임을 짐⁵¹⁷⁾
 - 운영인은 CBSA에 물품이 적법하게 캐나다에 반입되었거나 합법적으로 창고에서 반출되었거나 창고에 있는 동안 폐기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에

513)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4)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5)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6)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7)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부과된 모든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짐

- 운영인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보세창고 내에서 보세창고로의 이동, 보세창고 내에서의 이동, 다른 보세창고로의 이동 등 모든 화물의 이동경로를 포함하여 기록해야 함

나) 창고의 유형

- 선적용보세창고의 유형은 A, B, C, S 및 PS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⁵¹⁸⁾
- A형 창고는 항공사, 해상 또는 철도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의 독점대리인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의 창고는 회사의 시스템으로 운송되는 수입물품을 장치하는데 이용됨⁵¹⁹⁾
 - A형 창고는 창고업자 또는 캐나다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하역장비, 인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창고도 포함되며 세부적인 창고유형으로 AA(항공사), AM(선사), AR(철도회사), AH(화물취급자), AW(하역회사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AA형 창고는 항공시설을 공항 부지에 갖추고 있고 공항에서 상업화물을 수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음
 - AR형 창고는 철도회사가 CBSA 관할 지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구내에서 창고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CBSA는 검사를 위해 적합하게 지정된 지역으로 화물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음
 - AH형 창고의 수입화물 취급업자가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송업체의 독점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점 대리인이란 관할 CBSA 구역 내에서 운송업자 1인당 화물 취급자 1명을 의미함
 - 화물 취급자는 창고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시설의 경우 CBSA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518)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19)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화물 취급자는 화물취급계약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갱신사실을 CBSA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CBS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화물 취급자가 운송업체와 화물취급계약이 없는 경우 창고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B형 창고는 고속도로를 통해 도착한 수입물품을 장치하는 데 활용되며 BW(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송업체가 위탁받은 수입물품), BL(고속도로 운송업체에 의해 보관되는 수입물품), BL off-site(컨테이너화물)로 구분할 수 있음⁵²⁰⁾
- BW형 창고의 수는 관할 CBSA 사무실 영역 내 하나로 제한하나 관할 CBSA 사무소에서 처리된 건수가 연간 지속적으로 4만개의 선적물을 초과하고 충분한 화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창고의 수를 늘릴 수 있음
 - 한 지역에서 BW형 창고 면허가 발급되면 CBSA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년간 추가적인 창고 면허를 발급 하지 않음
 - BL형 창고는 CBSA에서 지정한 운송업체코드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과 고속도로 운송업체가 임대한 BW형 창고공간으로 운송된 수입물품을 보관함
 - BL off-site형 창고는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고 창고에 적절한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BW형 창고에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충분한 장비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운영할 수 있음
 - BL off-site형 창고는 CBSA 사무소 또는 BW형 창고와 적당한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CBSA가 물품을 검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BW형 창고로 반입시켜야 함
- C형 창고는 수입화물의 보관, 분리 및 분류, 통합을 위해 화물혼재업자, 보세운송업자, 세관중개인이 운영하며 그 유형으로는 CW형 창고가 있음⁵²¹⁾

520)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21)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 신청인이 사업 규모, 재무안정성, 물리적 구조 및 건물 위치를 포함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W 유형의 창고 라이선스가 발급됨
 - CBSA가 창고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CW형 창고 운영인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가능한 기존의 다른 창고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창고와의 계약은 CBS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CBSA가 창고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공항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CW형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 공항 외 창고의 위치에 지리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창고운영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S형 창고는 특정 종류의 수입물품을 저장하기 위해 개인에 의해 운영됨⁵²²⁾
- S형 창고는 SF(과일 및 채소, 신선한 육류, 생선, 가금류, 꽃, 사람의 혈장 등 부패하기 쉬운 물품), SH(중고 가정용품 및 개인물품), SL(주류 등) SO(벌크 및 액체 제품, 석유 시추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 및 목재 등), SO(CSA)-EDI-LTL(관세 자체평가프로그램 운송 업체가 운송하는 물품)형 창고로 분류됨
 - SO(CSA)-EDI-LTL형 창고는 신청자가 관세자체평가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으며, CBSA가 이들 창고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창고 운영인은 검사해야 할 화물을 검사가 가능한 창고로 돌려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음
- PS형 창고는 수입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철도화물전용창고를 의미하며, 창고 위치는 CBSA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하고 전체 화물이 하나의 철도 화물운송서류로 운송되는 경우에 PS형 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⁵²³⁾

522)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523) Memorandum D4-1-4 Customs Sufferance Warehouses

나. 보관물품의 처리

1) 물품보관 및 예치

- 보관기간 내에 세관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CBSA가 지정하는 안전한 보관장소에 예치될 수 있음⁵²⁴⁾
 -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 장소로는 CBSA 사무소, 퀸즈웨어하우스(Queen's warehouse),⁵²⁵⁾ 고속도로 경계검사창고, 보세창고의 일부 및 공공안전부 장관을 대신하여 CBSA의 위임된 공무원이 지정한 기타 장소가 될 수 있음
 - 보관물품이 「원자력 관리법」상 규정된 물질이거나 「원자력 관리 규정」상 규정된 품목이고 그 물품이 CBSA에 신고된 후 14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는 경우 안전한 보관장소에 예치될 수 있음

- 보세창고의 보관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CBSA에 의해 안전한 보관장소에 예치하여 보관하는 경우 물품보관료를 내야 함⁵²⁶⁾
 - 보관수수료 및 안전한 보관장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관수수료는 물품 종류에 따라 달라짐⁵²⁷⁾
 - 물품이 자동차, 트럭 또는 기타 차량 및 모든 자체 추진기계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캐나다달러 이하의 보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그 외의 물품은 50kg당 하루에 0.45캐나다달러 이하의 수수료(단 최소수수료는 5캐나다달러)를 지불해야 함
 - 물품이 착오로 안전한 보관 장소에 예치되었으나 파업, 법원 절차, 세관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 제3자의 실수,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보관료를 면제함

524)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525) Queen's warehouse는 CBSA에서 운영하는 창고로서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에 따라 CBSA에 의해 처분되기 전에 압류, 몰수, 구금 및 미반출 물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창고임

526)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527)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 CBSA 담당자는 CBSA 사무소, 퀸즈웨어하우스, 고속도로 경계검사창고, 보세창고의 일부 저장된 물품의 보관상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⁵²⁸⁾
 - 물품이 보관된 장소의 CBSA 담당자는 보관물품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 재고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압류, 몰수, 구금 또는 그 외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다른 물품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며 CBSA 담당자는 해당 보관 구역이 엄격하게 통제되도록 해야 함
 - 「공무상 책임법(Crown Liability Act)」상 CBSA 담당자의 과실, 잘못된 행위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관상 손해를 입힌 경우 CBSA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함
 - 퀸즈웨어하우스로 이동되지 않은 물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물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물품 유형에 대한 유형별 물품 보관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빨리 처분하거나 퀸즈웨어하우스로 이동해야 함
 - CBSA 담당자는 보관된 물품 중 총기류는 별도의 용기, 저장소, 금고에 안전하게 잠긴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쉽게 개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CBSA에서 물품 목록을 2부 작성하고 창고 운영인은 각 항목을 확인하고 목록의 두 사본에 서명한 후 원본은 CBSA가 보관하고 사본은 창고 운영인이 영수증의 형태로 보관함⁵²⁹⁾
 - 물품이 경매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물품 목록을 3부 작성하고 경매인에게 1부를 제공하며 이 경우 수입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물품이 퀸즈웨어하우스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운송업자 입회하에 CBSA가 해당 물품의 양도 중 발생하는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금액이 산정할 수 있도록 검사함

- 수입물품이 CBSA 사무소 또는 선적용보세창고에 반입되는 경우 처음 반입된 날

528)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529)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로부터 40일이 원칙적인 보관기간이나 부패하기 쉬운 제품, 방사성 물질, 무기, 화약류, 주류, 이사물품 등은 별도의 예외적인 보관기간을 두고 있음⁵³⁰⁾

- CBSA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거나 캐나다를 거쳐 다른 국가로 운송하는 벌크형태의 곡물인 경우 물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물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에 수입업자,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보관기간 연장요청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CBSA 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CBSA 청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함

2) 물품의 몰수

- 물품이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보세창고 등에 보관되고 별도의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CBSA는 물품미반출통지서(Form E44)를 발행하며 물품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관된 장소로부터 반출되어야 함⁵³¹⁾
 -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물품 취급에 있어서 발생된 운송료, 보관료가 CBSA에 모두 지불되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물품미반출통지서(Form E44)는 CBSA 사무소, 보세창고 등에 물건이 계속 미반출 상태인 경우 물품미반출통지서(E44)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몰수된다는 것을 수입업자 및 운송업자에게 통지하여 알리는 것임
- 보관기한이 지나도 반출되지 않아 안전한 보관 장소로 예치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 몰수됨⁵³²⁾
 - 안전한 장소에 예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보관 장소에서 반출되지 않은 부패성 물품은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몰수됨
 - 「원자력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물질 또는 「원자력관리규정」상 규정되는 품목이

530) Memorandum D4-1-7 Extension of Time Limits for the Storage of Goods

531)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532) Memorandum D4-1-5 Storage of Goods

예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안전한 장소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나면 몰수됨

- 한번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자나 소유주가 더 이상 보관된 화물의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음
- 총기, 수입이 금지된 탄약 및 장치, 금지 또는 제한된 무기 그리고 담배 제품은 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으면 몰수됨
- 주류는 신고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세관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으면 몰수됨

2. 면세점

가. 면세점 면허절차

- CBSA가 발행한 면세점 면허는 면세판매된 물품을 휴대하여 수출할 여행자에게 관세 및 세금이 없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이며, 공공안전부 장관이 면세점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⁵³³⁾
- 면세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으로 캐나다 상업등록부(The Commercial Registration Unit, CRU)에 신청해야 함⁵³⁴⁾
 - 상업등록부는 제출일로부터 90업무일 이내에 면세점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함
 - 상업등록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관할 CBSA 사무소의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면세점 설치로 인해 주변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함
- 공항에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캐나다 교통국 또는 개별 공항당국이 관리하는

533) 캐나다 「관세법」 제24조 제1항

534)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입찰 절차를 통해 임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항 당국에서 임대인을 선정하면 공항 면세점 신청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함⁵³⁵⁾

- 육상경계 면세점의 경우 둘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김⁵³⁶⁾
 - 점수는 경영역량과 소매경력, 부지 및 건물평가, 사업 계획 및 지역 고용 수준 등 4가지 주요 기준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됨
 - 상업등록부는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과정의 결과를 통지하며 선정받지 못한 자는 면허가 발급된 후 9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면세점으로 선정받은 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금융담보가 상업등록부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세점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면세점 면허를 받은 자는 면세점 내 재고에 대한 관세에 대해 보증을 해야 함⁵³⁷⁾
 - 면세점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으로 판매되었거나 면세점 내에 보관하고 있거나 폐기되었거나 합법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국내물품과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세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음
 - 면세점 운영인이 납부해야 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으로 하여금 납부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증 금액은 첫 해의 경우 면세점 또는 면세점 외부장소의 총 재고자산의 최고 예상가치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연도의 금융보증금액은 전년도 재고 총액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보증금액은 1만캐나다달러임
 - 상업등록부는 보유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 1회 이상 보증금액을 검토함⁵³⁸⁾

535)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536)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537) 캐나다 「관세법」 제28조

538)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 보증금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BSA 사무소로부터 재정확보권고를 하고 운영인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 금액을 반영하여 증가된 보증금액을 제출해야 함
- 운영인은 운영 첫 년도 이후 재고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보증금액 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면세점 면허는 최대 10년간 유효하며 운영인은 면허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상업등록부에 면허갱신을 요청해야 하고 면허는 양도할 수 없음⁵³⁹⁾
 - 갱신시 주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주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세점을 갱신하기 전에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인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주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갱신요청이 제출되면 상업등록부는 면세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운영인이 모든 규정상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갱신은 유효기간은 재량에 따라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CBSA는 면세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나 정지사유와 취소나 정지 날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CBSA는 면세점을 봉쇄할 수 있음⁵⁴⁰⁾
 - 면세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재고가 적절히 폐기될 때까지 봉인상태로 유지되며 정지하는 경우 CBSA가 면허를 복원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역 CBSA 사무소에 의해 봉쇄상태로 유지됨
 - 면세점 운영인이 면허 만료일 전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면허갱신이 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CBSA 사무소에 의해 봉쇄상태로 유지됨
 - 면세점 취소, 정지 또는 기간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발생일 직후 CBSA 사무소는 면세점 재고에 대하여 전체감사를 수행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함

539)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540)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 면세점이 재정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인은 상업등록부에 전자우편을 보내 CBSA에 즉시 통지해야 함⁵⁴¹⁾
 - CBSA 사무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이동을 수행할 수 없고 파산하는 경우 면세점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

- 면세점 운영인은 법인명, 소유권 구조, 운영시간, 위치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상업등록부에 통지해야 함⁵⁴²⁾
 - 운영인이 사망한 경우 즉시 상업 등록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면세점은 해당 지역의 CBSA 사무소를 잠그고 봉인해야 함
 - 운영인의 상속인이 면세점의 운영을 승계받지 않거나 제출한 운영신청이 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 면세점 면허가 취소됨

나. 면세점의 운영 및 관리

- 면세점 운영 및 관리절차는 재고의 물리적 보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정상적인 소매사업관행을 반영해야 함⁵⁴³⁾
 - 회계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은 운영인이 유지보수해야 하며 모든 관련문서는 물품을 판매 또는 폐기한 후 6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운영인은 면세점에 상품이 도착하면 선하증권, 운송장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서류를 통해 상품수령을 하거나 재고기록문서에 기록해야 함⁵⁴⁴⁾
 - 면세점은 소매판매업 특성상 재고가 빠르게 회전하므로 단순사무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재고가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운영인은 CBSA 승인을 받아 관세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⁵⁴⁵⁾

541)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542) Memorandum D4-3-2 Duty Free Shop - Licensing

543) Memorandum D4-3-5 Duty Free Shop - Inventory Control and Sales Requirements

544) Duty Free Shop Regulations 제16조

545) Memorandum D4-3-5 Duty Free Shop - Inventory Control and Sales Requirements

- 면세점에서 판매된 모든 상품은 수출용이며 캐나다로 반품되는 경우 CBSA에 신고해야 함
 - 면세점에서 판매된 송장 또는 영수증에는 순차적으로 물품의 고유번호가 매겨지며 송장에는 “판매된 상품은 수출용이며 캐나다로 반품될 경우 CBSA에 신고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운영인은 면세점에서 사용된 모든 샘플, 테스트용 향수 및 기타 판촉 품목에 대해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함⁵⁴⁶⁾
- 샘플 등에 대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캐나다 수입업자가 구매한 재화의 신고된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함
- 공항에서는 면세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행자가 외국 목적지를 보여주는 탑승권 또는 티켓을 제시해야 함⁵⁴⁷⁾
- 주류 및 담배 제품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면세점 운영인은 면세점 물품판매사업 외에 운영 중인 다른 상업활동(예: 스넥바, 커피숍) 등이 있는 경우 면세품 판매시스템과 별도의 회계시스템과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캐나다에서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운영인은 물품의 반품을 수락하고 물품대금을 환불할 수 있음
- 물품이 개봉되거나 부분적으로 소비되고 반품을 하지 않거나 반품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해당 관세 및 세금을 CBSA에 납부해야 함⁵⁴⁸⁾

546) Memorandum D4-3-5 Duty Free Shop - Inventory Control and Sales Requirements

547) Memorandum D4-3-5 Duty Free Shop - Inventory Control and Sales Requirements

548) Memorandum D4-3-4 Duty Free Shop -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3. 보세운송

가. 보세운송 대상

-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의 화물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함
- 보세운송은 수입신고된 물품을 배송하거나 세관에서 다른 세관사무소 또는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경우,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경우, 세관 또는 보세창고에서 직접 수출하려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음⁵⁴⁹⁾
 - 캐나다 영해를 포함한 캐나다 해역 또는 캐나다 외부로부터 직접운송을 위해 캐나다 상공으로 진입한 다음 캐나다에 있는 동안 착륙하지 않고 다음 운송을 위해 캐나다를 떠나는 자는 세관경유의무가 없으며 별도 보세운송대상이 아님⁵⁵⁰⁾
- 보세상태로 캐나다 내에서 운송하거나 운송하게 하는 자는 그 운송에 대해서 관세 등을 책임져야 함⁵⁵¹⁾
 - 보세운송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을 위탁한 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등 모든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짐
 -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관세율은 수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 운송되는 동안 물품이 파괴되는 경우, 선적용보세창고 또는 면세점에서 수령하는 경우,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타인이 물품을 수취한 경우,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 등 납부의무가 면제됨
 - 수입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된 시점부터 관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함

549) 캐나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3항

550) 캐나다 「관세법」 제11조

551) 캐나다 「관세법」 제20조

나. 보세운송절차

- 보세운송은 물품의 운송이 시작될 지역 또는 장소를 관할하는 CBSA에 보세운송의 허가를 받은 이후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청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음⁵⁵²⁾
 - 보세운송은 CBSA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운송업자나 화물운송주선인이 할 수 있음
 - 보세운송을 할 때 컨테이너가 밀봉할 수 없는 크기인 경우, 살아 있는 동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발행하거나 승인한 인장으로 봉인됨
 - 보세운송 물품 도착 시 물품의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현금, 수표,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양도가능채권 등 정해진 형식의 담보금액을 제공해야 함⁵⁵³⁾
 - 담보액은 물품에 부과될 관세 또는 1천캐나다달러 중 큰 금액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의 경우 최소 담보금액은 5천캐나다달러임
 -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담보액은 담보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보세운송 도착시점에 CBSA에 의해 통관이 끝나지 않은 물품은 다른 CBSA 사무소나 특정한 보세창고로 이동되어야 함⁵⁵⁴⁾
 - 선박 혹은 철도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온 화물은 고속도로 운송업자를 통해서 화물통제서류상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이동됨
 - 목적지에 있는 고속도로 경계검사창고는 선박 혹은 철도운송의 화물통제서류와 관련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통제서류상 목적지 및 CBSA 사무소의 명확한 지역이 표시되어야 함

552) Memorandum D3-1-1 Policy Respecting the Importation and Transportation of Goods

553) Transportation of Goods Regulations 제6조

554) Memorandum D3-1-1 Policy Respecting the Importation and Transportation of Goods

- 보세운송 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보세운송 물품이 보고, 적재, 하역 또는 보관되는 장소에 대해 해당 물품의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음⁵⁵⁵⁾
 -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 위탁자는 보세운송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요청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당 보관기록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질문하는 경우 진실하게 답변해야 함
 - 운송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비실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록보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봉인이 손상되거나 컨테이너 등 운송 수단이 손상된 경우 또는 더 이상 물품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보세운송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⁵⁵⁶⁾
 - 컨테이너 물품을 보세운송 중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밀봉이 유지된 채 세관장으로부터 인계감독을 의뢰받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음

555) 캐나다 「관세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556) Memorandum D3-1-1 Policy Respecting the Importation and Transportation of Goods

VIII. 수출입 요건

1. 수입금지

- 캐나다의 관세율표에 열거된 위조화폐, 무기, 죄수가 제조한 제품 등과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품목도 수입이 금지됨⁵⁵⁷⁾
- 동물의 경우 몽구스과에 속하는 동물들로 Galidia, Galidictis, Mungotictis, Salanoia, Suricata, Herpestes, Helogale, Donogale, Atilax, Mungos, Crossarchus, Liberiictis, Ichneumia, Bdeogale, Rhynchogale, Cynictis, Paracynictis, Cryptoprocta 등은 수입이 금지됨
 - Turnus vulgaris, Gracula religiosa, Leucopsar rothschildi를 제외한 찌르레기과에 속하는 동물들, 양식용, 동물원 및 관람용 관상조를 제외한 비사냥용 조류는 수입이 금지됨
 - 타조의 털, 꿩의 털, 인도공작의 털, 사냥용 살아 있는 조류, 박물관 및 연구 목적의 조류를 제외한 해오라기의 털, 새의 부리, 머리, 날개, 꼬리, 가죽 등 기타 조류의 일부분은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이 금지됨
-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기를 막는 도구는 수입이 금지됨
- 제9897.00.00호에 분류되는 위조 지폐 및 동전은 캐나다로의 수입이 금지됨⁵⁵⁸⁾

557)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897.00.00호, 제9898.00.00호, 제9899.00.00호
558) Memorandum D9-1-3 Coin, Base or Counterfeit

- 인으로 제조한 백색 인광성 성냥은 수입이 금지됨⁵⁵⁹⁾
-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는 수입이 금지됨
 - HS Code 제9801.10.10호, 제9801.10.20호, 제9801.10.30호, 제9807호, 제9808호, 제9809호, 제9810호로 수입된 경우
 - 「관세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캐나다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영업용으로 운행하였던 차량이어야 함)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 2019년 이후 출고된 중고차
- 비행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는 수입이 금지됨
 - HS Code 제9803호, 제9809호, 제9810호로 분류되어 수입된 경우 중 여객 및 화물운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따라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포,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기기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기기는 수입이 금지됨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 부서로부터 수입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취득해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

559) Memorandum D9-1-13 White Phosphorous Matches

다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 무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화기를 수입할 수 있는 캐나다 비시민권자나 수입 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를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 캐나다 「상표법」을 위반하거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됨

- 교도소의 죄수들이 제조 또는 생산한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은 수입을 금지함⁵⁶⁰⁾
 - 해당 물품의 예로는 자전거, 쓰레기 봉지, 녹음, 기념품, 가죽 제품 및 목재 제품과 같은 품목이 있음
 - 교도소 죄수로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하거나 사업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됨
- 제9805호, 제9806호, 제9807호, 제9808호, 제9810호로 분류되는 중고물품 또는 중고 매트리스는 수입이 금지됨⁵⁶¹⁾
 - 제조된 후 15년이 지난 중고물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예외적으로 공공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증서를 첨부하거나 공공안전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훈증소독 및 살균소독 후 수입되는 중고물품 또는 중고 매트리스의 재료는 수입할 수 있음
 - 이사물품으로서 이사자 도착 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중고물품이더라도 수입이 가능함⁵⁶²⁾
 - 멕시코-미국 FTA협정에 의하여 관세상의 혜택을 받고 멕시코에서 수입된 경우에도 중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실질적으로 허위로 표시된 모든 물품의 수입은 금지됨⁵⁶³⁾

560) Memorandum D9-1-6 Goods Manufactured or Produced Wholly or in Part by Prison Labour

561) Memorandum D9-1-7 Used or Second-hand Mattresses and Materials Therefrom

562) Memorandum D9-1-11 Importation of Used or Second-hand Motor Vehicles

563) Memorandum D9-1-9 False Description of Geographical Origin of Goods and Goods With

- 수입된 상태로 바로 판매되지 않고 캐나다 제품에 부착 또는 결합될 라벨, 실크, 태그, 포장지 및 용기와 같은 물품은 원산지로 '캐나다'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수입이 금지되지 않음
 - 상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한 물품 또는 개인 수하물 또는 개인 선물용에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수입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상품의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CBSA는 수입업자가 창고 또는 수입업자의 부지에서 CBSA 감독하에 물품에 원산지를 적절하게 보수작업하여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캐나다의 권리현장에 반하는 혐오, 선전, 선동 또는 국가전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문서, 시청각자료 포함)은 캐나다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⁵⁶⁴⁾
- 제9899.00.00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종류의 서적, 인쇄물, 그림, 책, 프린트물,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은 캐나다로의 수입을 금지함⁵⁶⁵⁾
- HS Code 제9899.00.00호에는 범죄나 폭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큰 포스터나 전단지 및 음란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되며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모두 금지함⁵⁶⁶⁾
 - 음란한 것이란 수입물품이 전반적으로 과도한 인종차별, 성착취, 성행위, 범죄, 공포, 잔인함,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함
 - 성교육을 위하여 제작된 물품, 성행위 보조기구 및 장난감은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음

Trade Marks -Tariff Item No. 9897.00.00

564) Memorandum D9-1-13 White Phosphorous Matches

565) 캐나다 Customs Tariff - Schedule 제9897.00.00호, 제9898.00.00호, 제9899.00.00호

566) Memorandum D9-1-1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Policy on the Classification of Obscene Material

- 음란물로 의심되는 물품분류에 대한 결정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CBSA는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⁵⁶⁷⁾
 - 수입업자는 음란물품으로의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품목분류의 재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CBSA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CBSA가 30일 이내에 결정 또는 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수입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이 재결정 이후 음란물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병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이 음란물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출하거나 상품을 폐기해야 함⁵⁶⁸⁾
 - 음란물품의 수입자가 최종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폐기됨

2. 수입규제

- 캐나다의 수입규제방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있으며 해당 관세부과 시 부과대상, 조사절차, 부과절차에 대해서 「특별수입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음
 -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의 상당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567) Memorandum D9-1-1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Policy on the Classification of Obscene Material

568) 캐나다 「관세법」 제36조

가. 개요

1) 덤핑가격과 정상가격

- 덤핑은 수출기업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이 될 수 있음⁵⁶⁹⁾
 - 덤핑차액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며 CBSA의 최종판정에서 덤핑차액이 수출가격 대비 2% 미만으로 나올 경우 유의하지 않은 덤핑차액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종료됨

- 정상가격은 수출기업의 국내 통상거래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정상가격은 사업장별, 품목별, 매 60일 기간별로 각각 산정함⁵⁷⁰⁾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자유경쟁조건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판매의 경우, 국내판매 수량이 수출수량 대비 5%, 판매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는 국내판매되었다 할지라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됨

- 정상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가격은 수출기업의 제3국 수출가격이나 판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성정상가격을 사용함⁵⁷¹⁾
 - 구성정상가격 생산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그리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여 산정함⁵⁷²⁾

- 시장경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었거나 비시장경제시장이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정상가격은 캐나다의 시장경제국가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며 비시장경제시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출을 독점하고 국내 판매가격을 별도로 정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함⁵⁷³⁾

569)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2조 제1항

570)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15조

571)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19조

572)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19조

573)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20조

- 수출가격은 수출기업의 수출가격이나 수입기업의 수입가격 둘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함⁵⁷⁴⁾
 -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동의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가격이 덤핑차액 산정 시 사용되는 수출가격으로 사용되지 않음⁵⁷⁵⁾
 - 수출입기업이 상호 특수관계자이거나 제조기업, 수출입기업, 캐나다 내 고객 사이에 판매가격, 이윤, 또는 수입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상 또는 변제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덤핑차액 산정 시 사용되는 수출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경우에는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하게 되며, 구성수출가격은 수입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캐나다의 고객에게 수입물품을 판매한 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판매비 및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이 됨
 - 2018년 6월 14일부터 CBSA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재검토라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동 절차는 CBSA가 특정 기업의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이 특정시기에 현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함⁵⁷⁶⁾

2) 보조금

- 보조금은 정부가 재정적인 기여 또는 가격 지원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함⁵⁷⁷⁾
 - 보조금의 종류는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며 허용보조금의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에만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⁵⁷⁸⁾
 - 수출가격 대비 1% 미만의 보조금은 무의미한 보조금으로 간주됨

574)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24조

575)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25조

576)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ima-lmsi/nvrp-prvn-eng.html>, 검색일자 : 2020.11.11.

577)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2조 제1항

578)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30.4조 제3항

나. 조사절차

- 국제무역재판소는 덤핑수입 등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캐나다 덤핑 및 보조금 사실에 관한 조사는 국제무역재판소와 캐나다 국세청이 담당함⁵⁷⁹⁾
 -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절차는 조사개시, 예비조사 및 예비판정, 최종조사 및 조치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캐나다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캐나다 국세청에 조사신청을 하고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무역재판소가 덤핑 및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혹은 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행함⁵⁸⁰⁾
 - 예비조사개시 결정 후 60일 이내에 국제무역재판소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세청 또한 조사개시 결정 후 별도로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결정 후 60일 이후 90일 이내 예비결정함
 - 덤핑 및 또는 보조금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임시적으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동종수입물품은 잠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예비결정을 할 때 특정수출업자의 물품에 대한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의 금액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종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캐나다로 수입물품의 대한 조사는 계속되며 수출가격의 2% 미만의 덤핑차액과 수출가격의 1% 미만의 보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의 종료를 고려할 수 있음
 - 잠정조치 중 잠정덤핑방지관세 또는 잠정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잠정덤핑방지관세 또는 잠정상계관세는 추정되는 덤핑차액 및 또는 수입품에 대한 추정보

579) Memorandum D14-1-7 Assessment and Payment of Duties Under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580) Memorandum D14-1-7 Assessment and Payment of Duties Under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함

- 예비조사기간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135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실질적 피해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조사는 종결됨
- 예비판정의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제무역재판소와 국세청은 최종조사를 진행하며 예비판정일로부터 국제무역재판소의 경우에는 120일, 국세청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 함⁵⁸¹⁾
 - 예비판정 이후 잠정조치는 예비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만 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기간은 최종조사 및 최종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함
 - 국제무역재판소는 덤핑이나 보조금의 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최종조치 혹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반덤핑이나 상계조치가 이루어지면 캐나다 관보에 공고함
 - 조사기간 중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상당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설정은 수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다. 조사 시 고려사항

- 캐나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무역재판소는 수입물량과 수입증가량, 수입물품이 캐나다 국내산업의 동종물품에 끼치는 가격적인 영향, 수입물품이 캐나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⁵⁸²⁾
 - 덤핑차액과 보조금의 규모, 수출기업의 생산능력, 수출의존도, 시장매력도 등도 고려요인이 되고 있음

581) Memorandum D14-1-7 Assessment and Payment of Duties Under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582)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37.1조 제1항

- 캐나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우려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무역재판소는 보조금의 성격과 무역왜곡영향, 덤핑물량 또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량이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⁵⁸³⁾
 - 이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수출기업의 생산능력
 - 수입물품이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을 현저히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하여 수입물품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
 - 재고 상황
 - 캐나다 국내산업에 잠재적으로 생산개발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 덤핑 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물품과 국내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 조사개시 90일 전부터 CBSA의 예비판정 사이 지정된 기간 내 국가별 수입물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대량수입으로 봄⁵⁸⁴⁾
 - CBSA의 예비판정 전 대량수입이 발생한 경우 예비판정 90일 전 수입된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나 보조금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제무역재판소의 최종판정 후 5년이 지나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규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전에 종료심사를 해야 함⁵⁸⁵⁾
 - 종료심사에 앞서 국제무역재판소는 종료심사의 적절성을 먼저 결정하고 종료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이 나면 종료심사를 개시함

- 종료심사가 개시되면 CBSA와 국제무역재판소가 차례로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산업피해의 지속가능성을 판정함⁵⁸⁶⁾
 -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 조사 시 고려해야할 요소의 주요 사항은

583)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37.1조 제2항, 제3항

584)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37.11조

585)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76.03조

586)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37.2조

다음과 같음

- 관세부과 후 해당 수입품이 우회 수입되었는지 여부
 -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덤핑이나 보조금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
 - 수출기업의 생산가동률, 생산비용, 판매가격,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성과, 수익 등 상태와 성과, 예상 가능한 수출기업의 상태와 성과, 해당 품목이나 유사한 품목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덤핑 또는 보조금 판정
 - 다른 국가의 조치와 그에 따른 캐나다로의 무역전환가능성
 - CBSA가 덤핑 및 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을 경우 종료심사 절차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며 기존 최종판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입규제가 자동적으로 종료됨
- 산업피해 지속가능성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세부과 종료 시 예상되는 수입물량과 수입물량의 증가
 - 관세부과 종료 시 예상 수입품의 가격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의 가격에 끼칠 영향
 - 수출기업의 생산가동률, 생산비용, 판매가격,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성과, 수익 등 상태
 - 캐나다 국내산업의 생산, 생산가동률, 고용률, 가격, 판매,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수익 등 예상 상태와 성과
 - 수출기업이 현재 해당품목 외 다른 품목의 생산을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해당품목 생산에 사용할 가능성
 - 관세부과 종료 시 캐나다 국내산업이 진행 중인 생산과 개발에 끼칠 예상 영향
 - 해당 품목이나 유사한 품목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덤핑 또는 보조금 판정
 - 다른 국가가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캐나다로의 무역전환 가능성
 - 수출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
 - CITTA가 수입규제 종료 시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기존 최종판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규제

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지만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개된다는 판정을 하게 되면 반덤핑·상계 관세는 다시 5년 동안 부과됨

- 기존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우회수입의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조사 개시가 가능함⁵⁸⁷⁾
 - 우회는 덤핑 또는 보조금 조사 이후 특정한 행위로 무역패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성립하며 특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⁵⁸⁸⁾
 - 해당국가로부터 해당품목의 부품이 캐나다로 수입되어 캐나다에서 경미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
 - 해당국가로부터 해당품목의 부품이 제3국으로 수입되어 해당국가에서 경미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후 캐나다에 수입되는 경우
 - 해당품목이 해당국가나 제3국에서 사소한 과정을 거친 후 더 이상 해당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캐나다에 수입되는 경우
 - 무역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⁵⁸⁹⁾
 - 해당국가나 제3국으로부터 해당품목이나 해당품목 부품의 수입물량 변화
 - 우회되고 있다는 혐의가 있는 품목의 수입량 변화
- 우회조사는 CBSA의 재량이나 관계인의 제소로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사 개시 후 일반적으로는 180일이지만 24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⁵⁹⁰⁾
 - 제소로 시작될 경우 제소장 접수 후 45일안에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함
 - 우회가 있다는 긍정적 판정이 있을 경우 CBSA의 판정에 따라 국제무역재판소는 우회품목을 포함시키도록 기존의 수입 규제 판정을 수정할 수 있음

587)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72조

588)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57.12조

589)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57.12조

590) Special Import Measure Act 제72조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 2020년 11월 현재 캐나다는 CBSA 예비판정으로 관세 부과 중인 품목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 25개로 최대 규제대상국임

〈표 2-VIII-1〉 캐나다의 수입규제품목 현황

연번	품목	수입규제종류: 국가
1	Aluminum extrusion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	Carbon steel welded pipe(CSWP 1)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	Carbon steel welded pipe 2(CSWP 2)	덤핑방지관세: 대만, 인도, 오만, 한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상계관세: 인도
4	Carbon steel welded pipe 3(CSWP 3)	덤핑방지관세: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5	Cold-rolled steel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한국, 베트남
6	Concrete reinforcing bar	덤핑방지관세: 중국, 한국, 터키 상계관세: 중국
7	Concrete reinforcing bar 2	덤핑방지관세: 벨라루스, 대만, 홍콩,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8	Copper pipe fittings	덤핑방지관세: 중국, 한국, 미국 상계관세: 중국
9	Copper pipe fittings 2	덤핑방지관세: 브라질, 중국, 그리스, 멕시코, 한국 상계관세: 중국
10	Copper tube	덤핑방지관세: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상계관세: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11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덤핑방지관세: 중국, 대만, 인도, 한국
12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2	덤핑방지관세: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상계관세: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13	Decorative and other non-structural plywood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14	Dry wheat pasta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터키
15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덤핑방지관세: 중국, 한국, 스페인 상계관세: 중국

〈표 2-VIII-1〉의 계속

연번	품목	수입규제종류: 국가
16	Fasteners	덤핑방지관세: 중국, 대만 상계관세: 중국
17	Flat hot-rolled carbon and alloy steel sheet and strips	덤핑방지관세: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상계관세: 인도
18	Gypsum board	덤핑방지관세: 미국
19	Heavy plate	덤핑방지관세: 대만, 독일, 터키
20	Hollow structural sections	덤핑방지관세: 한국, 터키
21	Large line pipe	덤핑방지관세: 중국, 일본 상계관세: 중국
22	Line pipe 1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3	Line pipe 2	덤핑방지관세: 한국
24	Oil country tubular goods(OCTG 1)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5	Oil country tubular goods 2(OCTG 2)	덤핑방지관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26	Photovoltaic modules and laminate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7	Piling pipe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8	Pup joint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29	Refined sugar	덤핑방지관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상계관세: EU
30	Seamless casing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1	Silicon metal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2	Stainless steel sink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3	Steel grating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4	Steel plate 3	덤핑방지관세: 중국
35	Steel plate 5	덤핑방지관세: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36	Steel plate 6	덤핑방지관세: 우크라이나
37	Steel plate 7	덤핑방지관세: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38	Sucker rod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39	Sucker rods 2	덤핑방지관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40	Thermoelectric coolers and warmer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41	Transformers	덤핑방지관세: 한국
42	Unitized wall modules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중국
43	Whole potatoes	덤핑방지관세: 미국

주: 2020년 10월 26일 기준

자료: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if-mev/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11. 13.

- 2020년 11월 현재 캐나다의 CBSA가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표 2-Ⅷ-2〉 캐나다의 對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품목

(단위: %)

품목	규제내용	관세율
탄소강 용접파이프 (Certain Carbon Steel Welded Pipe 2)	조사 개시: 2012년 5월 예비 결정: 2012년 8월 최종 결정: 2012년 12월 CITT 산업피해 최종결정: 2012년 12월 종료심사 및 규제유지: 2018년 10월	반덤핑 54.2
냉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조사 개시: 2018년 5월 예비 결정: 2018년 8월 CBSA 최종 결정: 2018년 10월 CITT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8년 12월	반덤핑 53.0 상계 11.3
콘크리트 철근 (Certain Concrete Reinforcing Bar)	조사 개시: 2014년 6월 예비 결정: 2014년 9월 CBSA 최종 결정: 2014년 12월 CITT 산업피해 최종결정: 2015년 1월 종료심사: 2020년 5월(진행중)	반덤핑 8.9
동제 관연결구류 (Copper Pipe Fittings)	조사 개시: 2006년 6월 예비 결정: 2006년 10월 CBSA 최종 결정: 2007년 1월 CITT 산업피해 최종결정: 2007년 2월 재심사 및 규제유지: 2011년 10월 재심사 및 규제유지: 2016년 7월	반덤핑 242
내부식 강판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조사 개시: 2018년 7월 예비 결정: 2018년 10월 CBSA 최종 결정: 2019년 1월 CITT 산업피해 최종결정: 2019년 2월	반덤핑 9~40
철구조 부분품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조사 개시: 2016년 9월 예비 결정: 2017년 1월 CBSA 최종 결정: 2017년 4월 CITT 산업피해 최종 결정: 2017년 5월	반덤핑 1.9~45.8
구조용 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s)	조사 개시: 2003년 5월 예비 결정: 2003년 8월 CBSA 최종 결정: 2003년 11월 CITT의 산업피해 최종 결정: 2003년 12월 재조사 및 규제유지: 2011년 3월 종료심사, 규제유지: 2013년 8월 CITT 명령(규제유지): 2019년 10월	반덤핑 89

〈표 2-VIII-2〉의 계속

품목	규제내용	관세율
라인 파이프 (Line Pipe 2)	조사 개시: 2017년 6월 예비 결정: 2017년 9월 CBSA 최종 결정: 2017년 12월 CITT 산업피해 최종 결정: 2018년 1월	반덤핑 4.1~88.1
석유 관제품 (Oil Country Tubular Goods 2, OCTG 2)	조사 개시: 2014년 7월 예비 결정: 2014년 12월 CBSA 최종 결정: 2015년 3월 CITT 산업피해 최종 결정: 2015년 4월 재조사 및 규제유지: 2015년 12월 종료심사: 2020년 8월	반덤핑 8.8~37.4
변압기 (Transformers)	조사 개시: 2012년 4월 예비 결정: 2012년 7월 최종 결정: 2014년 3월 CITT 산업피해 최종 결정: 2012년 11월 재조사 및 규제유지: 2017년 7월	반덤핑 9.1~34.8

자료: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if-mev/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11. 13.

3. 허가 및 승인 등 요건

가. 수입통제목록

- 일반물품과 다르게 「수출입허가법」에서 명시한 품목이나 식품, 의료용 기기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 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함⁵⁹¹⁾
-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캐나다 법무부에서 수입통제목록(Import Control List)품목으로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음

591) 캐나다 법률정보,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h-558579, 검색일자: 2020. 10. 15.

- 「관세법」 및 기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 통제 또는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였거나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수출입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CBSA에 의해 유치될 수 있음⁵⁹²⁾

- 주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품목록을 포함하여 수입통제목록을 제정할 수 있음⁵⁹³⁾
 - 캐나다의 수요에 따라 세계 시장이나 캐나다에서 부족하거나 원산지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수량이 할당되는 물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농산물 마케팅대행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수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무기, 탄약, 장비 또는 군수품 또는 이를 개조하거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산물 마케팅프로그램법」 또는 「캐나다 낙농위원회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가격을 유지하려는 경우
 - 정부 간 합의 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 협정이 맺어져 있는 섬유 및 의류 등의 물품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캐나다에서는 수입통제목록을 운영하는데 해당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 대부분은 별도의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함⁵⁹⁴⁾
 -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상품으로서 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상품(일시적으로 반입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품 포함)은 허가를 받고

592) 캐나다 「관세법」 제101조

593)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제5조 1항

594)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수입할 수 있음

- 허가에는 일반수입허가(General Import Permits, GIP)와 특정수입허가(Specific Import Permits, SIP)의 두 가지 유형의 수입 허가가 있음

〈표 2-VIII-3〉 캐나다 수입통제목록 일부

품목(분야)	내용
군용물품	소총, 칼빈, 리볼버, 권총, 자동권총, 기관총, 로켓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화학물질	클로로사린, 리신 등 유해독성화학물질
철강	탄소강 관련제품, 특수강 제품, 주물 및 단조품으로 제한되는 가공알루미늄 제품
의류	멕시코와 미국에서 편직 또는 직조된 의류, 인조섬유 원사 및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직물
낙농제품	닭, 칠면조, 소, 각종 유제품, 아이스크림, 계란, 마가린, 치즈, 요거트, 버터, 통밀, 메슬린, 밀분, 파스타, 면, 밀을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보리
원예류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장미

자료: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h-558579, 검색일자: 2020. 12. 1.

나. 수입허가

- 일반수입허가는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특정물품의 수입을 일정한 금액기준과 특정 조건으로 허용하며 GIP번호는 물품의 수입을 허가번호에 해당됨⁵⁹⁵⁾
 - CBSA는 상품의 수입이 해당 GIP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상업물품 수입의 경우 GIP 번호는 반드시 송장, 화물통제문서 등 식별 가능한 문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인물품 수입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모든 거주자를 기준으로 일반수입허가의무는 적용됨

595)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 수입업자는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특정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하거나 식물 및 의류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캐나다 국제국에서 발행한 특정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⁵⁹⁶⁾
 - 수입업자는 보세창고에 상품을 반입하는 시점에 특정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적용보세창고의 경우 창고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물품 중 임시수입조항(예: A.T.A 까르네)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입허가법」을 따름

- 수입업자는 캐나다 국제국의 무역수출관리국에 특정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부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세관중개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완료된 신청서는 캐나다 국제국에 제출해야 함⁵⁹⁷⁾
 - 캐나다 국제국에 의해 허가 정보가 전자적으로 CBSA 사무소에 전달되었을 때 특정수입허가가 유효해진 것으로 간주함
 - 특정수입허가 정보는 EXCAPS(Customs Automated Permission System)를 통해 캐나다 국제국으로부터 CBSA로 직접 허가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입업자는 물품을 반출할 때 CBSA에 서면으로 허가서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음
 - 캐나다 국제국은 수입자나 세관중개인에게 거래기록문서를 발급해 허가서가 발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 역할을 하게 되며 관세율 쿼터(TRQ)대상 농산물을 제외하고 반출 시점에 거래기록사본을 제시하여 허가서의 진위를 입증해야 함
 - CBSA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거래기록문서에 대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기록은 CBSA가 도장을 찍어 캐나다 국제국으로 매주 송부해야 함
 - 특정수입허가서에 기재되는 수입자 이름은 세관신고서 또는 EDI 전송에 나타나는 수입자 이름과 일치해야 하며 허가서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거부됨

596)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597)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 특정수입허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캐나다 무역수출통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⁵⁹⁸⁾
 - 허가수량과 반출수량, 물품변경,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서를 수정할 수 있음
 - 수량이 할당된 물품에 대한 허가수정은 최종 제세납부 전에 수정해야 하고 일반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허가수정이 이루어져야 함

- 특정수입허가가 없는 경우 물품이 허가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 이름이 특정수입허가서상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수량할당물품 제외)은 CBSA에 의해 압수되며 물품반출 요청이 거부됨⁵⁹⁹⁾
 - 허가서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고된 수량이 허가서에 기재된 수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허가서에 기재된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CBSA에 의해 역류되며 물품반출 요청이 거부됨
 - 허가서에 오류가 있는 물품은 반출정보나 허가에 대해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출될 수 없음

- 「수출입허가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상품이 폐기되거나 몰수된 경우 캐나다 국제국은 물품을 폐기할 수 있고 폐기방법 또한 결정할 수 있음⁶⁰⁰⁾
 -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허용된 허가수량이나 할당값을 초과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할당수량을 초과한 물품을 반송하도록 권고함
 - 반송 외의 방법으로 CBSA 사무소에 이러한 상품을 폐기할 수 있음

- 「수출입허가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약식유죄판결의 경우에는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함

598)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599)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600)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수 있음⁶⁰¹⁾

- 기소 시 유죄판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한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음

-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은 「수출입허가법」에 의해 수량할당방식(TRQ)으로 통제됨⁶⁰²⁾
 - 수입업자는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캐나다 국제국으로부터 TRQ 수입허가를 획득한 경우 수입통제목록에 포함된 농산물을 할당수량의 범위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밀, 보리 등의 수입품은 쿼터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음
 - CBSA는 특정수입허가증이 없더라도 TRQ 화물을 통관할 수 있지만 허가서가 없는 경우 수입화물은 할당수량이 아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동식물, 동식물 가공품, 사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유의 검역권한을 갖고 CBSA에서 위임받아 일반 상품 검역과 함께 수행하고 있음⁶⁰³⁾
 - 식품검역청의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식품검역청은 웹 페이지에서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를 통해 HS Code에 따른 통관 요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검역이 필요한 식용 제품 수입의 검역 요건확인을 위한 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NISC)를 운영하고 있음

601)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602) Memorandum D19-10-2 Administra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Importations)

603) 캐나다 식품검역청,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검색일자: 2020. 11. 25.

IX. 권리구제제도

1. 납세자권리헌장

- 현재 캐나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전문성, 상호존중, 성실성,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캐나다 국세청이 제정·공포한 것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의 16개의 권리를 설명하고 서비스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구현하고 있음⁶⁰⁴⁾
 - 관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관세를 납부할 때에도 동일하게 납세자권리헌장상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권리헌장은 입법화된 형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효력은 없음
 - 최초의 납세자권리헌장은 1985년 연방재무부장관의 납세자의 권리선언 제정·공포로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보제공, 공평, 성실성 추정 등이 있었음

-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납세자의 16가지 기본권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⁶⁰⁵⁾

604)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17/taxpayer-bill-rights-guide-understanding-your-rights-a-taxpayer.html>, 검색일자: 2020. 11. 16.

605)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17/taxpayer-bill-rights-guide-understanding-your-rights-a-taxpayer.html>, 검색일자: 2020. 11. 16.

- 납세자는 공식적인 납부자격을 부여받을 권리와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영어, 프랑스어 2가지 언어로 서비스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세금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받을 권리 및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전문적이고 정중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명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분쟁 중 공정한 검토를 받기 전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서비스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조세법률을 준수할 때 조세순응비용을 고려할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한 정보제공 및 결정사항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세법에 따른 처벌 및 이자로부터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국세청이 서비스 표준을 발표하고 매년 보고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의심스러운 조세제도에 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적시에 경고받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서비스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현장에 납세자의 권리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5가지 의무를 설정하여 중소기업과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세금납부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⁶⁰⁶⁾

606)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17/taxpayer-bill-rights-guide-understanding-your-rights-a-taxpayer.html>, 검색일자: 2020. 11. 16.

-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조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함
- 캐나다 국세청은 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함
-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
-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국세청이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 캐나다 국세청은 소기업 관련 우리의 수행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함

2. 불복절차

가. 재결정 및 추가 재결정의 청구

- 물품의 관세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결정 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⁶⁰⁷⁾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의 청구는 세관공무원의 결정 또는 재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할 수 있음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의 청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을 해야 함⁶⁰⁸⁾
 - CBSA 행정구제 담당부서에서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 청구를 받은 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함⁶⁰⁹⁾

607)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1항

608)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4항

609) Memorandum D11-6-7 Request under Section 60 of the Customs Act for a Re-determination, a further Re-determination or a Review by the President of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통지를 받게 됨
- 심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락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를 할 수 있음
- 심사담당자는 증거,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률 및 정책 등 기타 추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함

□ 관세청장은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를 한 자에게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결정통지를 해야 함⁶¹⁰⁾

- 심사담당자는 청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⁶¹¹⁾
- 반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담당자는 최종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기간 내에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의 청구를 하지 못한 자는 관세청장에게 재결정 등의 청구와 함께 기한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⁶¹²⁾

- 기한 연장 신청 시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기한 연장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통지를 해야 함⁶¹³⁾

- 관세청장이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재결정 등의 청구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유효함
- 관세청장은 기한 연장 신청이 청구 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다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음

610)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5항

611) Memorandum D11-6-7 Request under Section 60 of the Customs Act for a Re-determination, a further Re-determination or a Review by the President of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612) 캐나다 「관세법」 제60.1조 제1항 내지 2항

613) 캐나다 「관세법」 제60.1조 제4항 내지 제6항

- 기간 내 청구 또는 청구 대리인에게 청구의 위임이 불가능했거나 선의로 청구를 함
 - 신청의 승인이 정당하고 공정함
 - 상황이 허락하는 한 즉시 연장신청을 했음
- 기한 연장 신청을 한 자는 관세청장이 신청을 거절하거나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제무역재판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⁶¹⁴⁾
-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관세청장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한 신청서의 사본, 관세청장이 거절통지를 한 경우 통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을 받은 국제무역재판소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승인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명령일을 기준으로 재결정 등의 청구를 유효한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⁶¹⁵⁾
- 국제무역재판소는 기한 연장 신청이 청구 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다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음
- 기간 내 청구 또는 청구 대리인에게 청구의 위임이 불가능했거나 선의로 청구를 함
 - 신청의 승인이 정당하고 공정함
 - 상황이 허락하는 한 즉시 연장신청을 했음
-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물품에 대한 추가 부족관세를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관세와 이자를 환급받아야 함⁶¹⁶⁾
- 통지를 받은 자가 항소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부족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함

614) 캐나다 「관세법」 제60.2조 제1항 내지 제2항

615) 캐나다 「관세법」 제60.2조 제3항 내지 제4항

616) 캐나다 「관세법」 제65조 제1항

- 관세청장의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은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⁶¹⁷⁾

나. 항소

- 관세청장의 재결정 또는 추가 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⁶¹⁸⁾
 - 항소는 국제무역재판소와 관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짐
- 항소통지를 받은 국제무역재판소는 결정을 하기 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최소 청문회 21일 전 이를 관보에 게시해야 함⁶¹⁹⁾
 - 누구든지 청문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국제무역재판소를 방문하면 항소에 대한 청문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음
- 국제무역재판소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명령, 판결 또는 선언을 할 수 있음⁶²⁰⁾
 - 이러한 명령 등은 연방항소법원에게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 대상이 되거나 제한·금지·삭제·무효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음
-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자는 항소 통지와 함께 항소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⁶²¹⁾
 - 신청서는 관세청장과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 통지에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함
 - 또한 신청서에는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함

617) 캐나다 「관세법」 제62조

618) 캐나다 「관세법」 제67조 제1항

619) 캐나다 「관세법」 제67조 제2항

620) 캐나다 「관세법」 제67조 제3항

621) 캐나다 「관세법」 제67.1조 제1항 내지 제3항

- 국제무역재판소는 항소 기한을 연장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⁶²²⁾
 - 국제무역재판소는 기한 연장 신청이 항소 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다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 명령을 할 수 있음⁶²³⁾
 - 기간 내 항소 또는 대리인에게 항소의 위임이 불가능했거나 선의로 항소를 함
 - 신청의 승인이 정당하고 공정함
 - 상황이 허락하는 한 즉시 연장신청을 했음
 - 항소의 근거가 합리적임

- 항소인 등은 국제무역재판소의 명령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음⁶²⁴⁾
 -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를 한 자
 - 관세청장
 - 국제무역재판소의 청문회에 참석한 자
 - 연방항소법원은 항소가 제기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명령이나 판결을 하거나 재심리를 위하여 국제무역재판소에 환송할 수 있음

- 재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서면으로 상소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으로부터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 국제무역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한 후 판결할 수 있음

622) 캐나다 「관세법」 제67.1조 제1항

623) 캐나다 「관세법」 제67.1조 제4항

624) 캐나다 「관세법」 제68조

X. 벌칙

1. 벌금제도

가. 벌금가중제도

- 캐나다는 「관세법」 및 관련 통관규정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징역과 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벌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가중제도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를 운영하고 있음
- AMPS는 캐나다의 관세 관련 규정, 관세율표의 위반이나 조약 및 협정의 위반 등에 적용됨⁶²⁵⁾
 - CBSA가 벌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형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벌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부여 과정에서는 그 동안의 법규준수 여부가 고려됨
 - AMPS 위반 시의 제재와 관련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최초 위반 시에는 단순히 경고만을 하고 AMPS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며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위반 기록문서에 기재되어 집중관리 대상이 됨

625) Memorandum 22-1-1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 최초 위반 이후 부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험군에 분류되어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 부과율의 증가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AMPS상 위험단계가 증가할 때마다 벌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벌금의 폭이 0~8천캐나다달러의 범위로 늘어나게 될 수 있음
- 한 건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부과 한도액은 2만 5천캐나다달러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벌금통지에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포함될 경우 이와 관련한 벌금 총액은 최대 2만 5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할 수 있음
- 벌금 외에 별도의 기간이자도 발생하며 서면으로 통지 후 벌금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되어 추가적으로 부가되며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 벌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나. 벌금투자제도

- CBSA는 청구인이 AMPS에 따라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투자(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⁶²⁶⁾
 - 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또는 관련된 절차의 문제로 벌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가 법규준수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이 정책의 목적은 행정적 금전적 벌칙을 적용하게 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포함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PRA를 이용할 수 없음⁶²⁷⁾

626)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27)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 「관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PRA의 대상인 벌금 이외에 CBSA에 지불해야 할 미납관세가 있는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PRA를 받을 자격이 없음

- PRA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벌금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PRA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제출한 신청서는 반려하며 CBSA는 반려이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함⁶²⁸⁾
 - 벌금통지서가 발행되고 자사의 상업용시스템의 체계적인 문제로 야기된 반복적 위반 또는 법규 미준수 사례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벌금이 발급되어야 함
 - 발행된 벌금통지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재결정이 확정되지 않아야 함⁶²⁹⁾
 - 자사의 상업용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정조치가 법규준수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PRA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PRA를 요청하는 이유 및 발급된 벌금통지서의 평가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⁶³⁰⁾
 - CBSA는 신청서 검토 중 언제라도 신청서의 지원을 위해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는 가능한 한 빨리 CBSA에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접수 즉시 CBSA는 신청서와 모든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하며 CBSA가 요청한 추가 정보가 지정된 기간 내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CBSA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PRA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통지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음

628)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29) 캐나다 「관세법」 제131조

630)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 PRA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적으로 후속 벌금이 고지되고 CBSA가 해당 PRA의 신청서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후 발급된 벌금을 PRA 신청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⁶³¹⁾
 - 이전에 제출한 PRA 신청서에 후속 벌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벌금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CBSA에 서면으로 이전에 제출된 PRA 신청서에 벌금발생원인을 기재하여 PRA에 추가 벌칙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해야 함
- 복수의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법규 미준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반복적인 위반으로 하나 이상의 벌금이 발행된 자는 개별 시스템문제가 법규 미준수의 일부에 기여한다면 PRA를 신청할 수 있음⁶³²⁾
- 벌금납부는 PRA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할 수 있으나 PRA에 의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벌금은 벌금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불한 날까지 법정요율로 이자가 발생함⁶³³⁾
 - PRA가 평가된 벌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여되고 발행된 벌금이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규정된 이자율이 적용됨
- 부과된 벌금에 대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는 벌칙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PRA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PRA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됨⁶³⁴⁾
 - 장관의 재결정을 요청한 자는 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PRA를 신청할 수 있음⁶³⁵⁾
 - CBSA는 잘못 발급된 것으로 결정된 벌금의 액수를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631)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32)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33)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34)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35) 캐나다 「관세법」 제129조; 제130조

- PRA 심사 시 CBSA는 기업의 시스템적 문제를 파악한 후 신청자의 법규 준수 이력과 시정조치 시간을 고려함
- CBSA는 PRA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벌금총액과 신청서에 기술된 시정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짜를 통지하고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특정 경우에는 PRA 신청자가 시스템적 문제를 시정조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보장을 위해 신청자로 하여금 제3자의 증명서를 CBSA에 전달해야 함⁶³⁶⁾
 - 기업상용시스템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후 PRA 신청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적격비용을 영수증, 송장, 지급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신청자가 CIS의 체계적 문제해결 비용이 이 정책에 따라 적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벌금에서 상쇄됨
 -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시정조치비용은 PRA에 따라 상쇄할 수 없음
 - PRA 신청인은 CBSA 정책에 따라 시정조치작업의 PRA 목적적합한 비용과 또는 수행된 작업의 성격과 작업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PRA 신청인이 PRA가 적용 가능한 모든 비용을 입증한 후 CBSA는 시정조치가 이행되었고 효과적인지 확인함⁶³⁷⁾
 - CBSA는 시정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법규 준수를 검증하고 완전한 법규 준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PRA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검증 후 시정조치가 완전한 법규 준수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CBSA는 청구인이 법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한 총 적격비용과 동일한 금

636)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637) Memorandum D22-1-2 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 Policy

액의 벌칙금액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조치가 법규 준수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PRA는 허가되지 않으며 CBSA는 모든 미납벌금을 이자를 붙여 지급할 것을 요청함
- CBSA는 신청인에게 PRA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결정과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벌금상쇄를 통지하며 CBSA가 PRA 부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2. 처벌규정

가. 「관세법」상 처벌규정

- 관세 관련 법령 중 수출입 물품의 보고, 진술 등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⁶³⁸⁾
- 기소해야 하는 범죄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원산지증명을 비롯한 관련 규정 위반 시 약식기소하는 경우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을 부과하며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음⁶³⁹⁾
- 약식기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며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이 관세 관련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집행하는 모든 일에 대

638)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

639)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

하여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해당 벌금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⁶⁴⁰⁾

- 약식기소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명시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규정 외에 기타 모든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됨⁶⁴¹⁾
 - 이 경우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관중개인으로 등록된 것처럼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세 관련 규정에 따른 허위진술 및 직무회피, 공무집행방해, 캐나다로의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도 벌금부과대상이 됨⁶⁴²⁾
- 이 외에도 캐나다 법 외의 제정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2만 5천캐나다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⁶⁴³⁾

나. 「형법」상 처벌규정

-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권한없는 자가 고의로 금지된 총기, 무기, 장치, 탄약 또는 자동차기의 제조 또는 조립에 사용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구성 요소를 수출입하여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 최초의 경우 3년,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범죄일 때 5년의 징역이 부과됨⁶⁴⁴⁾

640) 캐나다 「관세법」 제160.1조; 제153.1조

641) 캐나다 「관세법」 제161조

642) 캐나다 「관세법」 제9조 제4항; 제153조; 제153.1조; 제159조

643) 캐나다 「관세법」 제109.1조

644) Criminal Code 제103조

-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권한 없는 자가 고의성 없이 무기류를 수입하였거나 자동화기의 부품을 수출입하여 기소 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 최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벌할 수 있음⁶⁴⁵⁾
- 불법인 마약사용을 위한 기구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촉진 또는 판매하여 약식기소 하는 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⁶⁴⁶⁾
- 두 번째 이상 위반하거나 지속적 위반일 경우 3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처벌규정

- 캐나다는 체결한 각 FTA 협정마다 이행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에 따른 법적절차는 관련 캐나다 법규를 따르고 있음
 - USMCA Rules of Origin Regulations, CCFTA Rules of Origin Regulations, CIFTA Verification of Origin Regulations 등의 규정이 있음
- 캐나다는 「관세법」 이외에 「특별수입조치법」에 USMCA 국가의 물품에 관한 분쟁에 대한 위반, 미국의 물품에 관한 분쟁에 대한 위반, 일반적인 협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⁶⁴⁷⁾
 -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했거나 대통령이 부과하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⁶⁴⁸⁾

645) Criminal Code 제104조 제2항

646) Criminal Code 제462.2조

647)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제77.034조; 제77.26조; 제96.4조

648)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제96.4조

- USMCA 회원국의 법령하에서 정보공개규정 위반 또는 정보의 사용 및 공개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⁶⁴⁹⁾
- 미국의 법령하에서 정보공개규정 위반 또는 정보의 사용 및 공개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⁶⁵⁰⁾
- 캐나다는 「관세법」의 일반적인 위반과 처벌과 공무방해죄에 대한 처벌, 약식기소와 처벌 모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수입조치법」에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음⁶⁵¹⁾

라. 압수와 몰수

- 세관공무원이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음⁶⁵²⁾
 -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든 또는 그 이후에 세관공무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송 또는 운송수단이 그 위반 물품과 관련하여 이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징벌로서 그 운송수단을 몰수에 갈음하여 압수할 수 있음
- 특정 운송수단 또는 물품이 몰수에 갈음하여 압수되었을 때에는 물품이 압수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몰수해야 함⁶⁵³⁾
 - 압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 또는 압수가 통지된 날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649)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제77.034조

650)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제77.26조

651)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 제160조 제1항; 제161조

652) 캐나다 「관세법」 제110조

653) 캐나다 「관세법」 제113조

- 압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몰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해야 함
- 수출의 경우 캐나다 수출자의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수출자가 벌금납부를 거부할 때에 해당 수출물품은 압수됨
- 미국으로 수출되며 수출신고가 면제된 수출통제품목에 대해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됨

XI. AEO 제도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뜻하는 AEO 제도는 캐나다에서는 PIP(Partners in Protection)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⁶⁵⁴⁾
 - PIP는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임
 - 이는 국경의 안전과 국제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함임

1. PIP 인증절차

가. 인증신청

- PIP 신청절차는 Trusted Trader Portal(TTP)을 사용하여 PIP 멤버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함⁶⁵⁵⁾
 - TTP 등 캐나다의 전자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통신하려면 캐나다 정부 자격

654)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55)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e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증명이 필요함⁶⁵⁶⁾

- 정부자격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TTP 계정 활성화 및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사 또는 회사를 등록하고 제출을 선택하여 등록된 메일을 통해 계정에 대한 활성화 코드를 받아야 함
 - 활성화 코드를 사용하여 TTP계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뢰받는 무역업자(Trusted Trader)번호는 등록된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CBSA는 PIP 신청이 있으면 상황을 고려하여 인증 또는 거부 결정을 할 수 있음⁶⁵⁷⁾
- CBSA의 신청 거부사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다양한 거부사유가 있을 수 있음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또는 수정된 기업정보 요청에 미응답
 - 공급망, 사업구조, 보안관행, 운영위치 또는 연락처 정보의 변경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사업운영상 변경 사항을 CBSA에 알리지 않은 경우
 - PIP 자격 요건 또는 MSR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위험평가 또는 현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 시정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안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 국경 간 화물관련보안위반 또는 화물도난사례와 같은 PIP 승인 이전의 보안 사고발생이 있었던 경우
 - PIP 신청인은 사업 또는 연락처 정보 확인 또는 업데이트 요청, 현장 검증 일정 수립, 추가 세부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CBSA의 PIP 프로그램 상태와 관련된 모든 요청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CBSA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656) 캐나다 정부자격증명 신청사이트(<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online-services-forms.html>)에서 신청할 수 있음

657)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PIP 거부 결정 후에 통지서가 기업에 발송되며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와 CBSA의 결정일 및 PIP 신청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됨
- 거부 결정 후 재신청은 거부사유에 따라 또는 CBSA의 재량에 따라 유예될 수 있음⁶⁵⁸⁾
 - 재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나 CBSA는 사례별로 재신청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거부사안이 심각한 경우 재신청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음
- PIP 신청인이나 PIP 기업의 공급망에서 취약성이 확인되면 CBSA는 기업과 상호 합의하여 MSR 준수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음⁶⁵⁹⁾
 - 기업은 시정계획에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 동의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PIP 신청이 거부되거나 PIP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CBSA의 재량에 따라 PIP 기업에 대해 보안결함의 특성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음
 - 시정 조치의 실행계획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행을 완료해야 함
 - PIP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CBSA의 재량에 따라 시정계획기간의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CBSA가 사안별로 검토하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됨
 - CBSA 담당자는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여 PIP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시정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함
- PIP 신청 및 지원서류에 기재된 정보는 PIP 관리 또는 실행을 목적으로 CBSA에 수집됨⁶⁶⁰⁾
 - 정보수집은 PIP 신청인의 요건 준수 여부 검토에 사용되며 신청인 및 회원과

658)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59)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60)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관련된 조사를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정보는 통계적 목적, PIP 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고 PIP 신청 및 지원 서류상 정보의 공개는 특정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⁶⁶¹⁾

나. 인증정지 및 취소

- PIP 기업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신속통관이 가능한 FAST레인(Lane)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관련 혜택을 중단하며 CBSA 웹사이트의 PIP 회원목록에서 기업의 상호가 삭제될 수 있음⁶⁶²⁾
 - 정지는 최대 180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최소 60일 이내에 CBSA의 재검토를 받음
 - PIP의 취소는 FAST레인에 대한 접근, 이용 약관 해지 및 멤버십 종료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 관련 혜택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CBSA 웹사이트의 PIP 회원 목록에서 회사명이 제거됨
 - PIP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또는 수정된 정보 요청에 미응답
 - 공급망, 사업구조, 보안 관행, 운영 위치 또는 연락처 정보의 변경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사업상 변경사항을 CBSA에 알리지 않은 경우
 - 보안 관련 사고 또는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기업의 보안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PIP 회원 약관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PIP 자격기준 또는 MSR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현장검증 또는 갱신시 위험평가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661) 캐나다 「관세법」 제107조

662)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PIP 갱신시 업데이트된 기업 내 보안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시정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보안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 「관세법」 및 관련 규정 또는 CBSA 또는 기타 국제관세기구가 시행하는 법률에 따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CBSA에서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요청된 문서에 대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접근거부와 같은 CBSA와의 협력이 부족한 경우
- PIP 회원은 연락처 정보 확인, 현장 검증 또는 사후검증 일정수립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CBSA의 PIP와 관련된 요청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PIP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CBSA는 상황을 검토하여 고려한 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림
 - CBSA가 PIP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통지서를 기업에 발송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정지 또는 취소 사유와 결정일 및 기간 및 정지 및 취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CBSA의 정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보안상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 확인 후에 PIP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음⁶⁶³⁾
- CBSA는 거부, 정지 또는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 또는 회원은 결정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PIP 회원번호와 이의제기 사유를 명시하여 전자적으로 CBSA 상업프로그램 및 정책관리부에 항소할 수 있음⁶⁶⁴⁾
- 이의제기 기간 동안 PIP의 자격은 정지 또는 취소 상태를 유지하며 CBSA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추가적인 PIP 신청처리 또는 PIP 자격관리는 발생하지 않음

663)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64)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CBSA가 이의제기를 수락하면 그 효력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재개됨⁶⁶⁵⁾
 - CBSA가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락하면 정지가 즉시 종료되고 PIP 회원자격이 복원되거나 CBSA의 재량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단축되며 CBSA가 이의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PIP 회원정지는 유효함
 - CBSA가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락하면 취소가 즉시 종료되고 PIP 회원 자격이 복원되거나 CBSA의 재량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CBSA가 이의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PIP 취소는 계속 유효함
 - CBSA는 결정을 내리고 이의제기 접수 후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기업에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서에는 CBSA의 결정내용과 결정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CBSA가 내린 모든 결정은 최종적임
 - 이의제기 이후 최종 취소 결정 후 재신청유예는 취소사유에 따라 CBSA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BSA는 사안별로 재신청 기간을 지정하고 심각한 경우에 무기한으로 재신청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함

다. 인증분야

- PIP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⁶⁶⁶⁾
 -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또는 복합운송 계약에서 상업용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업체(CBSA가 발행한 유효한 운송업체코드를 가진 개인 또는 기업으로 특송업을 포함함)
 - 유효한 사업자 번호를 가진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 개인 또는 기업
 - 유효한 사업자 번호를 가진 창고운영인(해상터미널 운영인 포함) 개인 또는 기업
 - CBSA에 등록된 유효한 (보세 또는 비보세) 화물운송업체 코드를 가진 개인 또는 기업
 - 선주 또는 용선업자를 대신하여 항만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해운대리인
 - 수출입 기업을 대신하여 세관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세관중개인

665)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66)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미국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경우 유효한 캐나다 운송업체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업체와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입업체에 한해 PIP를 신청 할 수 있음
- PIP 신청인은 언제든지 PIP 신청 또는 회원 자격을 철회할 수 있음⁶⁶⁷⁾
 - 철회된 신청 또는 회원 자격은 복원되지 않으며 PIP를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진행단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재신청이 필요함
- PIP의 권한은 양도할 수 없으며 기업합병, 법인변경 또는 사업매각을 통해 기업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PIP 신청인 또는 회원은 기존 PIP를 탈퇴하고 다시 PIP 인증을 신청해야 함⁶⁶⁸⁾

라. 사후분석제도(PIA)

- CBSA는 공급망 보안사고 또는 위반 후 사후분석(Post-Incident Analysis, PIA)을 수행하며 PIA가 시작되면 PIA의 이유를 명시하여 PIP 회원에게 통지서가 발송됨⁶⁶⁹⁾
 - PIA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세관규정 및 법 집행에 대한 PIP 기업의 대응 및 협력도를 평가하고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목적으로 함
 - PIA의 보안 관련 사고 이후 PIP 기업의 최소보안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CBSA 외 특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PIA를 수행할 수는 없음
- PIA가 필요한 경우는 「관세법」 또는 그 관련규정 또는 CBSA 또는 기타 국제관세 기구가 시행하는 법률 위반, PIP 정책 위반 또는 PIP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⁶⁷⁰⁾
 - CBSA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PIA가 필요한 사항인지 결정할 수 있음

667)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68)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69)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70)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PIP 회원의 명시된 의무에 따라 기업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자발적 신고
- CBSA 내 기업 담당자와 CBSA와의 커뮤니케이션
- 미국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 또는 타국과의 MRA에 따른 AEO 정보교환
- 법원의 결정 또는 뉴스, 언론매체 또는 기타 오픈소스의 정보
- CBSA는 재량에 따라 캐나다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AST라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한 PIP 회원혜택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PIA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PIA의 결과는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CBSA에 의해 결정되며 PIA 과정에서 범죄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면 CBSA는 그 결과를 적절한 기관에 회부함
- PIA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 보안 관련 문제 및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CBSA 담당자가 기업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인식개선 교육 조치
 - 사안에 따른 시정 조치
 - PIP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 PIP 회원이 사안의 발생원인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PIA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 PIP 자격이 정지되거나 CBSA의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PIA가 종료되면 통지서가 PIP 회원에게 발송되며 이 통지에는 PIA의 결과를 설명하고 CBSA의 결정에 대한 효력발생일이 포함되어 있음
- CBSA의 PIA 이후 결정은 이의제기 대상이 됨

2. PIP 인증요건

- 전 세계의 관세당국이 공급망 물류보안에 대한 보편적인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 SAFE Framework가 있으며, 캐나다의 PIP 제도도 SAFE Framework

와 일치하게 운영하고 있음⁶⁷¹⁾

○ SAFE Framework에 기초한 PIP는 PIP 인증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보안요건(MSR)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물리적 보안 및 접근 제어
- 절차적 보안
-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철도 차량 보안
- 데이터 및 문서 보안
- 인사상 보안
- 보안 교육 및 인식
- 협력사 관리
- 공급망 보안 계획

○ MSR에 요약된 요구 사항 외 PIP는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안된 충족권 장사항이 있음

- 직원 대상 보안 인식 프로그램
- 보안 위반에 관한 행동 강령
- 보안 정책 설명서
- PIP MS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사 모니터링
- 전자자산 및 정보기술(IT) 인프라의 보호를 포함한 전자 보안

□ 캐나다 기업이 PI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⁶⁷²⁾

- 국가간 상업목적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데 관련이 있고 캐나다 또는 미국에 기반을 둔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해야 함
-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수입업자 및 운송업자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캐나다로부터 또는 캐나다로 한 번 이상 상업용품을 수출입하거나 운송하는 실적이 있어야 함

671)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72)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 재무적 상환 능력이 있고 정부에 대하여 채무나 파산상태가 아니어야 함
 - CBSA 및 그 밖의 정부부서와 협력 기록이 좋아야 함
 - 캐나다 「형법」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함
 - 의회 법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외국법에 따라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함
 -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CBSA 또는 기타 국제관세기구가 시행하는 규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함
 - 사업의 운영 또는 보안구조는 PIP 보안수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MSR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소유 또는 운영되는 시설을 보유하는 고속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업체, 수출입업자, 화물 운송업자 창고 운영인, 세관중개인, 해운대리인이어야 함
 - PIP 참가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관세법」 및 여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이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됨
- PIP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각 운송수단에 대해 유효한 운송업체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함⁶⁷³⁾
- 화물 운송업자는 유효한 (보세 또는 비보세) 화물운송업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함⁶⁷⁴⁾
 - 수입업자는 유효한 캐나다 사업자 번호를 보유하고 캐나다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모든 PIP 신청인과 회원은 PIP 최소보안요구에 따라 반드시 인감을 보유해야 하

673)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674) 운송업체 또는 화물운송업자 코드와 관련된 정보는 CBSA의 상업등록부(carrier-cargo@cbsa-asfc.gc.ca)에서 얻을 수 있음

며 서류의 위조봉인(Seal)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봉인의 적절한 폐기절차를 수립해야 함⁶⁷⁵⁾

- PIP 기업은 PIP 봉인요건에 따라 봉인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물품배송의 주기 동안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봉인의 무결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CSA 운송인은 높은 수준의 봉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PIP 회원인 CSA 운송인은 높은 보안수준의 봉인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PIP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로 가는 FAST레인에 접근하려면 PIP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높은 보안성을 가진 봉인을 사용해야 하며 PIP 및 CSA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PIP 기업은 국내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국경을 넘는 발송물을 포함하여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봉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봉인은 ISO/PAS(국제 표준화기구)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함
 - PIP 기업은 봉인의 적용 및 사용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공인된 개인이 봉인을 부착하도록 해야 함
 - 합법적인 제조업체로부터 봉인을 획득할 때 향후 봉인이 ISO/PAS 17712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시험보고서를 확보 및 보관해야 함
 - 봉인은 별도의 CBSA의 승인을 받은 직원이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 화물이 실린 모든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봉인을 검사하며 물품의 수령인은 소유권 이전 시 봉인의 무결성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음
 - 봉인 불일치 또는 변조 증거가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 시점에 CBSA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 PIP 인증신청업체가 트럭 단위적재량미만화물(LTL) 또는 컨테이너적재량미만화물(LCL)을 운송할 때에는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봉인 대신에 보안성을 갖추고 있는 자물쇠 또는 유사한 잠금 장치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음⁶⁷⁶⁾

675)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76)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일부 상업용 화물은 보안 수준이 높은 봉인이나 자물쇠(예: 탱크 트레일러, 벌크, 덤프 트레일러)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PIP 회원은 운송 중 보안업무결성 위해 변조방지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다른 효과적인 방법의 사용으로 입증해야 함
- 항공사의 경우 수출입 도중 관련 공무원에 의해서라도 봉인이 제거된 경우라도 모든 관련 화물의 봉인을 교체하고 새 봉인번호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임
 - CBSA 검사 후 CBSA가 제공한 봉인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는 CBSA가 검사한 화물을 다시 봉인할 필요는 없음
- PIP의 봉인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준수사항 발생빈도 및 심각도에 따라 보안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조치 또는 PIP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 CBSA 담당자는 보안상황을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⁶⁷⁷⁾

3. PIP 인증혜택

-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미국 관세청 간에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상품 공급망의 안전 확보와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 및 무역업자에 대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제도임⁶⁷⁸⁾
- PIP 참여기업들에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소화된 수입통관제도인 FAST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짐
- CBSA와 민간부문의 개인 혹은 기업 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운송인, 수송회사 및 수입자 등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반드시 위험평가를 거쳐야 참여할 수 있음

677) Memorandum D23-1-1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67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 운송인의 경우 FAST 회원 자격은 5년간 유지될 수 있고 등록과정에서 50캐나 다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운송회사나 수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 신청 과정 없이 PIP 참여자격을 가진 경우 자동적으로 FAS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갖게 됨

- CBSA의 CLVS(Courier 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체(택배업을 하는 자에 한정)는 PIP 운송업체여야 함⁶⁷⁹⁾
 - CLVS 프로그램에서는 PIP가 승인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입해야 하며 PIP 프로그램 멤버십을 신청할 때 택배업체는 자신의 사업구조방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운송 모드를 선택하여 Trusted Trader Portal에서 운송업체로 등록해야 함

- PIP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⁶⁸⁰⁾
 - CBSA가 제공하는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물품이 캐나다 국경 도착 시 신뢰받는 거래자(Trusted Trader)로 인정받아 통 관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음
 - 기업의 위험 점수가 낮게 측정이 되므로 통관과정에서 검사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 회사를 안전하고 위험이 낮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로 대외마케팅 할 수 있음
 - PIP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세자체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FAST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캐나다로 수입할 때 지정된 FAST트랙에서 신속하게 통 관할 수 있음
 - CBSA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자로 인정받아 통관과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79)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680)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 CBSA의 CLVS(Courier 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운송업체 (택배업을 하는 자에 한정)는 PIP 운송업체여야 함⁶⁸¹⁾
 - PIP 업체는 CLVS(Courier Low Value Delivery)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CLVS 프로그램은 저가 선적물품의 수출절차를 간소화시켜 신속한 출하 서비스를 제공함
 - CLVS 프로그램에서는 PIP가 승인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입해야 하며 PIP 프로그램 멤버십을 신청할 때 택배업체는 자신의 사업구조방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운송 모드를 선택하여 Trusted Trader Portal에서 운송업체로 등록해야 함

681)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pip-pep/about-apropos-eng.html>, 검색일자: 2020. 8. 26.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I. 수입 통관절차

1. 일반 수입 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는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해야 하며 캐나다에 도착한 자가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 또는 수하물은 그 소지자가 수입신고해야 함⁶⁸²⁾
 - 택배 또는 우편으로 수입한 상품의 경우 캐나다로 상품을 수출한 자가 수입신고해야 함
- 수입자는 물품을 캐나다로 수입하기 전에 수출입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사업자번호를 얻어야 함⁶⁸³⁾

682) 캐나다 「관세법」 제12조 제3항

683)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guide-eng.html>, 검색일자: 2020. 3. 31.

- 수입자는 CBSA에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하거나 세관중개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684)
 - 중개인의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관세평가, 관세납부, 원산지 등과 같은 후속 수정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

- 세관중개인은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통관업자로서 사업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685)
 -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세관중개인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세관중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을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함
 -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세관중개인의 자격이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세관중개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됨

-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수입금지품인지 여부, 수입하는 상품에 허가,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해야 함686)

2) 도착 전 보고

- 하역절차를 개시하려면 전화 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관할 항에 도착보고를 해야 함687)
 - 운송수단의 종류, 미국 경유 여부에 따라 보고 방법이 상이하며 도착 전 보고는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인이 대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 전에 국가안전 및 보안측면에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송정보사전제출제도(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

684)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guide-eng.html>, 검색일자: 2020. 3. 31.

685) 캐나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686)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guide-eng.html>, 검색일자: 2020. 3. 31.

687) 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2조

ACI)를 운영하고 있음⁶⁸⁸⁾

- 이에 따라 운송인은 선박(항공기), 적하물품, 운항스케줄 등의 정보를 CBSA에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⁶⁸⁹⁾
 - 운송인은 선박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직접 캐나다에 도착하는 경우 또는 수입 물품의 모든 수입자가 PIP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수출자 책임이므로 수출자는 캐나다 수입자의 신분, 사업자번호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 운송 업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 전 보고를 해야 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보고 기한이 상이함⁶⁹⁰⁾
 - 컨테이너선인 경우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최소 96시간 전
 -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
 - 항공의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전
 - 철도의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전
 - 국도의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

- 선박이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직접 캐나다에 도착하고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선적된 경우 운송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⁶⁹¹⁾
 - 화물이 없고 공컨테이너로 구성된 경우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68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검색일자: 2020. 7. 2.

689) 캐나다 CBSA 홈페이지, <https://www.cbsa-asfc.gc.ca/prog/manif/eccrdhi-deccerout-chap8-eng.html>, 검색일자: 2020. 8. 18.

690) 캐나다 CBSA 홈페이지, <https://www.cbsa-asfc.gc.ca/prog/manif/eccrdhi-deccerout-chap8-eng.html>, 검색일자: 2020. 8. 18.

691) 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14조

- 그 외의 경우에는 도착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
- 캐나다 수입·수출물품에 대한 기록 역할을 하는 화물관리서류를 CBSA에 제출해야 하며 가장 일반적인 화물관리서류 유형은 화물관리문서(Form A8A(B)),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임⁶⁹²⁾
 - 화물관리서류는 CBSA 또는 보세창고로 이동 시에도 사용됨
- 누구도 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캐나다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할 수 없으나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품이 충돌, 화재, 날씨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는 신고 전에 하역할 수 있음⁶⁹³⁾
 - 운송물품이 하역된 경우 운송 책임자는 운송수단, 하역된 물품 외에 CBSA에 하역한 후 남아 있는 물품을 즉시 보고해야 함
 -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는 합리적 근거에 근거하여 물품이 수출입금지 물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본인이 그 물품을 발견했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CBSA에게 보고해야 함⁶⁹⁴⁾
- 도착 전 검토시스템(Pre-arrival Review System, PARS)는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수입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검토 및 처리를 위해 화물정보를 CBSA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통관 및 검사 절차의 과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⁶⁹⁵⁾
 - 운송인, 수출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등을 EDI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업자 혹은 세관중개인에게 보내면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반출요청서를 수입물품 도착 30일 이전에 CBSA에 제출해야 함
 - 수입물품이 도착하자마자 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선적정보가 EDI를 통해서는

692)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3/d3-1-1-eng.html>, 검색일자: 2020. 8. 1.

693) 캐나다 「관세법」 제14조

694) 캐나다 「관세법」 제15조

695)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services-eng.html#opt_01, 검색일자: 2020. 7. 1.

- 도착 최소 1시간 이전, 서류를 통해서는 도착 최소 2시간 이전에 제출돼야 함
- 세관은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는 시점에 해당 물품을 반출 혹은 이관하면서 송장전자제출시스템의 정보를 업데이트함
- 선적화물이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허가서나 면허, 인증서 등은 수입업자 및 세관중개인에게 반환됨

3) 수입신고 방법

-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캐나다 도착 후 관할지 CBSA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되어야 함⁶⁹⁶⁾
 - 파이프 라인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그 달의 20일에 수입을 시작하여 다음 달 19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그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에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선적물 전체가 도착할 때 신고할 수 있음

가) 일반신고제도

- 일반신고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는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로서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앞에 서류 간소화 신고제도와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됨⁶⁹⁷⁾
 - 제출서류는 화물통제서류, 세관(상업)송장, 세관분류양식,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면제되지 않음
- 일반수입 시에 수입자는 세관(상업)송장, 화물관리서류(Cargo Control Document), 캐나다 관세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원산지증명서, 수입허가서

696) 캐나다 「관세법」 제12조 제1항

697)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 검색일자: 2020. 8. 18.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CBSA에 제출해야 함⁶⁹⁸⁾

○ 상업물품에 영어나 불어로 필요내용을 기재한 세관(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⁶⁹⁹⁾

- 세관에서 그 세관(상업)송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 물품가격이 2,5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반송물품의 가격증가분이 2,500 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통관은 세관(상업)송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세관(상업)송장에는 수출자, 수입자, 환적국, 원산지, 운송수단, 운송방법, 판매 조건, 결제조건, 결제통화, 포장의 수, 모델, 규격, 물품 설명, 수량, 단가, 총 금액, 총중량 등을 기재해야 함⁷⁰⁰⁾

○ 캐나다 관세분류양식은 상거래 목적으로 캐나다에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물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⁷⁰¹⁾

- 관세분류양식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거래번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적용 여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및 세율, SIMA 코드, 소비세율, 상품용역세율(GST), 보세창고번호, 화물통제 번호, 납부해야 할 관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나) 서류간소화신고제도

□ 서류간소화신고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는 최소의 서류로 진행되는 약식 통관절차를 완료해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임⁷⁰²⁾

69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6. 17.

699) Memorandum D1-4-1 CBSA Invoice Requirements

700) Memorandum D1-4-1 CBSA Invoice Requirements

701) 캐나다 CBSA,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7/d17-1-10-eng.html>, 검색일자: 2020. 8. 18.

702) Memorandum D17-1-4 Release of Commercial Goods

- 현재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업체에서 물품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전년도 월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최소금액은 250캐나다달러, 최고금액은 2만 5천캐나다달러임
- 서류간소화 제출제도 서류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CBSA에 제출해야 함⁷⁰³⁾
 - EDI를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다른 정부부서 또는 기관의 요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ED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의 송장상 모델규격이 999개 이상인 경우, 해당 건이 하나 이상의 창고에 반입되는 경우 등임
- 서류간소화 제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물관리서류, 세관(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함⁷⁰⁴⁾
 - 서류에는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물품 단위 및 수량, 수입물품의 금액 및 결제통화, 상세 설명, HS Code, 제품의 원산지, 송장의 페이지 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다) 자가통관제도

- 자가통관제도(Commercial Cash Entry Processing System, CCEPS)는 상업용 수입품의 자가통관제도로 개인이나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함⁷⁰⁵⁾
 - 수입자는 세관 창구에 비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관세 및 제비용이 계산되고 자동으로 관세분류양식의 작성이 완료됨
 - 세관은 관세분류양식을 검토하고 수입자에게 납부완료 도장이 찍힌 관세분류양식 사본을 송부하면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하여 반출하면 됨

703) Memorandum D17-1-4 Release of Commercial Goods

704) Memorandum D17-1-4 Release of Commercial Goods

705)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services-eng.html#opt_01, 검색일자: 2020. 7. 1.

○ 자가통관제도는 캐나다의 퀘벡주 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라) EDI를 통한 수입신고

□ 서면으로 물품을 신고할 필요가 없거나 서면으로 물품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인 방식(EDI)으로 신고할 수 있음⁷⁰⁶⁾

○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되는 지역에서 관할지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세관증개인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EDI신고는 특정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관세청과 링크되어 있는 S/W를 설치하여 해당 S/W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함

□ 송장전자제출시스템(Accelerated Commercial Release Operations Support System, ACROSS)은 수입자와 증개인에게 송장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⁷⁰⁷⁾

○ 이 시스템은 송장을 종이서류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CBSA 검사관이 검토하고 통관결정을 함

□ 자율심사승인(Customs Self Assessment, CSA)은 간소화된 통관 등의 목적을 위한 제도로서 캐나다에서 CSA를 적용받는 물품은 수입자의 사업장으로 바로 배송할 수 있음⁷⁰⁸⁾

○ 관세자체평가제도는 수입자, 운송업체의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이 제도의 대상자들은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세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706) 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제4조; 제5조

707)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검색일자: 2020. 7. 2.

70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검색일자: 2020. 7. 2.

- 통관알림시스템(Releases Notification System, RNS)은 통관에 대한 결정사항을 적기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물품이 반출되거나 각종 승인결정이 된 경우 EDI의 방법으로 RNS 메시지를 수입업자, 중개인, 운송인에게 통지함⁷⁰⁹⁾
- 관세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 CADEX)은 수입업자와 중개인에게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관양식 및 정보를 EDI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음⁷¹⁰⁾

나. 물품검사 및 반출

- CBSA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선택적 샘플조사를 통해 물품을 검사하며 「관세법」에 따라 CBSA는 검사대상화물을 지정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양의 샘플을 채취할 권한이 있음⁷¹¹⁾
 - 물품검사는 수입금지·수출입제한품목(예: 음란물, 마약), 밀수품 등의 탐색 또는 정부에서 요구한 요건(예: 육가공품 검사)의 충족 여부, 통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검사 빈도는 무역거래자의 규정 준수기록과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름
 - 주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상업송장에 기입된 내용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상품의

709)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검색일자: 2020. 7. 2.

710)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검색일자: 2020. 7. 2.

711)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ex-eng.html>, 검색일자: 2020. 9. 11.

-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함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일반적인 조사 외에도 동식물의 경우 위생기준, 검역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동식물 관련 검역 권한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를 위임해 수행하고 있음
- 컨테이너 화물은 CBSA에 의해 처리되고 승인된 후 캐나다에 반입되며 CBSA는 포괄적인 위험 평가 및 무작위 선택을 기반으로 검사를 위해 소량의 용기를 선택함⁷¹²⁾
- CBSA는 컨테이너 검사는 CBSA와 CBSA를 오가는 컨테이너의 이동과 컨테이너의 양륙 및 적재 시에는 진행하지 않음
 - 검사 시스템으로는 엑스레이판독, 감마레이판독, 방사선 측정, 이동차량형 탐지 시스템, 휴대용 전자방사선량계, 소형·휴대용 이온 이동형 분석기를 들 수 있음
 -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료기기 또는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서류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CBSA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 컨테이너 적재화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인해야 함⁷¹³⁾
- 검사 후 컨테이너 재봉인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캐나다에 도착, 출발 또는 경유하고 CBSA의 검사를 위해 개봉하는 컨테이너화물에 적용됨
 - 육로로 도착하는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철도 차량이 포함되며 컨테이너 재봉인은 빈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712)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mts_smc-eng.html, 검색일자: 2020. 8. 19.

713)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ex-eng.html?wbdisable=true>, 검색일자: 2020. 11. 16.

- 검사를 마치면 봉인을 컨테이너에 부착해야 하며 이 봉인은 ISO/PAS 17712 기준을 준수하고 “CBSA-ASFC” 문자로 표시되며 고유한 일련번호를 갖고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이 신고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되어야 하며 세관에 있는 물품이 세관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은 제한 기간이 끝나면 보세창고 등에 위탁될 수 있음⁷¹⁴⁾
 - 부패성 물품인 경우 신고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창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 세관 보관물품이 「원자력관리법」상 규정물질이거나 「원자력관리규정」상 규정된 품목이고 신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창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 총기류, 탄약, 금지 또는 제한된 무기 및 담배제품은 세관에서 신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몰수됨
 - 증류주는 신고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세관에서 반출되지 않으면 몰수됨
 - 보관시 일정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CBSA에 수령 의사를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음

714) Storage of Goods Regulations 제3조

2. 특수 수입 통관절차

가. 특송물품

- CLVS 프로그램은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프로그램으로 특송업체의 국제환경 및 신속한 통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송업지들에 의해 화물 간 이동을 하는 수출입물품에 사용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소액특송물품 통관제도(CIRO) 적용 물품과 일반특송물품 통관 (CLVS) 제도 적용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소액특송물품 통관제도(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CIRO)

- 택배의 방식으로 운송되고 과세가격이 20캐나다달러 이하인 특송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소비세가 면제되며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⁷¹⁵⁾
 - 2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적용함
 -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이 150캐나다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면제됨
- 특송물품에는 알콜성 음료, 대마초 제품, 시가, 담배 및 제조담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하지 않음⁷¹⁶⁾
 - 캐나다 내의 소매업체에서 구매하여 캐나다 외 지역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한 수입품, 캐나다에서 물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입한 수입품은 특송물품으로 볼 수 없음

715) 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제4조

716) 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제2조: 제3조

- CIRO 통관절차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하나의 수입 건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CIRO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물품은 화물·반출목록(Cargo·Release List, CRL)을 제출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음⁷¹⁷⁾
 - CIRO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배송업체는 CLVS(Courier 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 승인업체이어야 함
- 캐나다에 탁송품이 도착하기 전에 CLVS 업체는 CBSA에 화물·반출목록을 제시해야 함⁷¹⁸⁾
 - CIRO에 따라 반출요청하는 모든 화물을 기재해야 하며 CIRO 적용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구분하려면 화물·반출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화물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 카테고리A: 과세가격이 0~20캐나다달러인 CLVS CIRO 적용물품(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물품제외)
 - 카테고리B: 과세가격이 0~40캐나다달러인 CLVS CIRO 적용물품(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
 - 카테고리C: 과세가격이 40.01~150캐나다달러인 CLVS CIRO 적용물품(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
 - 카테고리D: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되는 물품(모든 국가에서 수입)
- CIRO가 적용된 물품은 캐나다 수입물품의 관세납부 후 반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 절차의 적용 없이 반출될 수 있음⁷¹⁹⁾
 - 물품의 반출 후에는 운송인은 수입자에게 2영업일 이내에 반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반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음

717) Memorandum D8-2-16 Courier imports remission

718) 캐나다 「관세법」 제32조

719) Memorandum D8-2-16 Courier imports remission

- 화물·반출목록은 물품의 신고자료이자 반출자료이므로 운송인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보존 기간은 6년임

2) 일반특송물품 통관제도(Courier Low Value Shipment, CLSV)

- 캐나다의 CLSV제도는 특송물품의 운송인에 의해 수입되는 3,300캐나다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신고, 반출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선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⁷²⁰⁾
- 특송물품의 운송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상업운송인으로 우편을 통한 수입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CBSA 내 관련 부서에 인증을 요청해야 함⁷²¹⁾
 - 운송인은 승인된 보세운송인이어야 하고 캐나다에 소재를 두고 있는 회사여야 하며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운송업체는 승인된 PIP 운송업체여야 하며 특송물품은 PIP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 및 운송된 물품이어야 함
 - 택배시스템에 대하여 신고, 반출, 위험평가목적으로 CBSA가 접근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운송업체는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배송되어야 함
 - 운송업체가 지난 12월 이내에 운송업체로서 취소된 이력이 없어야 함
- 특송물품 운송인이 파산,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수입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CBSA에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더 이상 CLV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⁷²²⁾
- 인증받은 특송물품의 운송인은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수입물품(수입금지 대상

720)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1)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2)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품목이 아닐 것)에 대해 화물·반출목록을 CBSA에 제시함으로써 물품을 반출할 자격을 가짐⁷²³⁾

- 화물·반출목록은 반드시 타이핑되어야 하며 신고일자, 운송인명 및 코드, 운송수단의 등록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CBSA에 제출하는 화물·반출 리스트에는 정확한 물품 명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송장을 CBSA에 제출함으로써 CBSA가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CLVS 프로그램 참여자가 CBSA 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 외에서 또는 정규 업무시간을 넘어서서 반출을 진행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고속도로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 1시간 전, 항공으로 도착하는 경우 도착 4시간 전에 운송인이 화물·반출목록을 CBSA에 제출하면 CBSA는 리스트를 검토하고,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가려냄⁷²⁴⁾
-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는 물품은 반출할 수 있음
 - CBSA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을 검사하며 물품을 반출할지 또는 화물·반출목록을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함
- CLVS 적용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캐나다의 특정 장소에 도착한 경우 컨테이너나 선적물 전체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한해 반출할 수 있는 사무소의 이동이 허용되지만 일부만 이동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⁷²⁵⁾
- CLVS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CBSA 사무소에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함
 - CBSA 담당자는 화물목록을 검토하고 검사가 필요한 모든 선적물을 구분한 후 검사대상이 아닌 선적물은 캐나다 도착 즉시 반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보세창고 내에 있는 동안에는 CBSA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음
 - 검사를 위해 선정된 선적물은 반드시 CBSA에 제출되어야 하며 선택된 화물을 검사받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CBSA는 선택된 선적물을 검사하고 반출

723)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4)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5)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 하거나 화물목록에서 해당 선적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함
- 화물목록을 통해 선적물이 반출되면 특송업자는 신고일로부터 2업무일 이내에 수입자 및 세관중개인에게 각 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원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상업물품의 경우 특송업자는 관세와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의 문서를 요구하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업자는 CBSA에 담보를 제공하여 관세 및 세금납부 전에 물품의 반출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택배시스템의 활용을 허가받은 CLVS 프로그램 특송업자는 CBSA가 읽을 수 있는 전자매체에 의해 CD-Rom, DVD,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을 포함하여 CBSA에 출하정보를 제공해야 함
- CBSA 담당자는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서신, 메시지, 메모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⁷²⁶⁾
-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지고 CBSA 담당자가 압류물품의 정보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CLVS 프로그램에 따라 과세표준이 3,300캐나다달러 이상의 화물이 실수로 반출되는 경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반드시 출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캐나다 정식으로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함⁷²⁷⁾
- CLVS 프로그램에 따라 과세표준이 3,300캐나다달러 미만의 화물을 반출하여 과오납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CBSA 사무소에 조정 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있음

726)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7)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 CLVS 프로그램에 따라 통제, 금지 또는 규제된 상품이 오류로 방출되는 경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즉시 반출오류를 통보해야 하고 CBSA는 해당 정부 부서에 반출오류를 통보함⁷²⁸⁾
 - CLVS 프로그램에 따라 수출입허가 대상물품이 오류로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즉시 캐나다 국제국에 연락하여 필요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CBSA 또는 CLVS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적물이 화물목록의 내용보다 초과하여 초과사용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정된 화물목록 또는 초과사용보고서에 이러한 물품을 문서화해야 함⁷²⁹⁾
 - CLVS 프로그램 참가자는 CBSA에 의해 반출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초과 배송을 보류할 것임

- CLVS 프로그램 참가자는 화물목록에 보고된 선적물이 운송수단에 없을 경우 CBSA에 부족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족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CBSA에 화물목록에 보고된 모든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가 필요함⁷³⁰⁾
 - CBSA에 부족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관세 및 세금은 화물 목록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평가됨
 - 다른 형태의 부족은 선적물에 기록된 물건이 없어지거나 선적물의 일부만 도착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의 합리적인 증거는 외국운송업자의 영수증 또는 CBSA나 평화유지관리국의 사고나 화재로 물건이 분실 또는 파괴되었다는 진술을 포함함 - 수출업자, 화주 또는 창고운영자가 제공한 문서로서 실제 부족이 존재했으며 도난이나 손실의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도 허용됨
 - 선적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책임지는 당사자는 그 부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728)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29)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30)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 모든 CLVS 특송업자, 수입업자, 세관중개인은 CBSA의 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선적물에 대한 모든 관련 기록을 6년간 유지해야 함⁷³¹⁾
 - CBSA는 법규 준수 검증과정에서 CLVS 프로그램 특송업자, 수입업자, 수입자 세관중개업자의 신고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AMPS에 따라 처벌함
 - CBSA는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송업체, 수입업자, 세관중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함
 - 물품이 화물목록에 의해 적절히 보고되었다는 증거
 - 지방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관세 및 세금을 표시하는 문서사본
 - 해당되는 경우 물품이 공급업체에 반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규준수검증과 관련된 기타 문서
 - 법규 준수 검증결과에 따라 저평가, 잘못된 관세납부, 부정확한 원산지가 있는 경우 경정됨⁷³²⁾

- 과세가격이 3,3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발송물이 CLVS 적용실수로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수입신고서를 해야 함⁷³³⁾

나. 우편물품

- 우편으로 20캐나다달러 미만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소비세, 취급비용이 부과되지 않음⁷³⁴⁾
 - 우편으로 20캐나다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CBSA의 우편신고서 양식을 우편물에 부착해야 함

731)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32) 캐나다 「관세법」 제59조

733)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734)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import/postal-postale/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7. 1.

- 수취인이 수령과 동시에 관세 및 세금 및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취급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우편통관의 경우 수취인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납부 전 물품 선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취인의 편의를 증진함

- 「관세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되는 우편물을 포함하여 캐나다 외 지역에서 캐나다로 도착하는 모든 우편물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함⁷³⁵⁾

- CBSA의 국제우편처리시스템 규정에서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우편물의 검사, 관세 및 내국세의 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³⁶⁾

- 다른 정부부서를 대신하여 CBSA는 국제우편을 검토하여 「관세법」 및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물품의 원산지, 수량, 가치, 유형, 소유권 등을 확인함⁷³⁷⁾
 - CBSA가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될 수 있는 수입 물품을 구금할 수 있음

- 캐나다 우편국은 CBSA에 국제우편물을 제시해야 하고 1차 검사 시 CBSA의 담당자는 우편물 품목을 선별하여 면세품 또는 과세대상 수입품 중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CBSA의 통제가 필요 없는 물품은 우편국에 즉시 인도되도록 함⁷³⁸⁾
 -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될 수 있거나 과세대상인 경우 또는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은 분리하여 제2차 우편물처리구역으로 이동시켜 추가 검토를 실시함

735) Canada Post Corporation Act 제42조

736)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37)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38)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 캐나다 우편국은 CBSA 제2차 우편물처리구역으로 향하는 각 우편물에 고유한 바코드 재고 번호를 부여하고 CBSA의 우편 시스템에 수출자·수입자 데이터를 보관함
- 제2차 우편물처리구역에서는 CBSA가 담당자 우편물 품목을 확인하여 관세납부, 허가나 증명, 집행조치 또는 다른 정부부처의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함
- CBSA 담당자는 우편물이 금지, 통제, 규제되는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⁷³⁹⁾
 - CBSA의 담당자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우편물을 개방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마치는 경우 테이프를 밀봉해야 함
-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는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우편국은 수취인에게 처리 수수료 (9.95캐나다달러)를 부과함⁷⁴⁰⁾
 - 수수료는 우편물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인이 우편물품을 수령할 때 징수하는 부과하며 우편물이 면세품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예상 관세액이 3,3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상업용 우편물이 수입되는 경우 CBSA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함⁷⁴¹⁾
 - 수입업자는 해당 우편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CBSA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의 우편물 수취인은 관세 및 세금의 산정하는 우편물 가치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⁷⁴²⁾

739) 캐나다 「관세법」 제99조

740)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41)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42)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수취인은 우편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캐나다 우체국은 우편물을 발신인에게 반송함
- 비상업적 수입의 경우 재평가 또는 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캐나다 CBS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⁷⁴³⁾

- 상업적 우편물 수취인은 우편물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한 후 조정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⁷⁴⁴⁾

- 하나의 발송물에 두 개 이상의 우편물이 포함된 경우 CBSA는 하나의 송장에 대하여 관세 및 세금을 평가하고 해당 우편물이 CBSA에 동시에 제시하지 않거나 함께 도착하지 않을 경우 각각 평가하고 수취인은 품목별로 관세를 지불함⁷⁴⁵⁾

- 수입업자가 적절한 면허와 허가를 받은 경우 제한된 총기 및 권총을 우편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권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목적지가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⁷⁴⁶⁾
- 배송 시 서명이 포함된 캐나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화기를 발송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 모든 군사 무기는 수출입 허가를 필요로 하며 상업용 화기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화기의 종류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효한 상업용 화기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그 면허의 사본은 모든 화기 수입에 포함되어야 함

743) 캐나다 「관세법」 제60조 제3항

744)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45)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746)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II. 수출 통관절차

1. 수출신고

가. 수출신고인

- 수출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운송인, 세관중개인⁷⁴⁷⁾
 - 수출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상업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하며 수출자의 범위에 운송 계약에 관련된 사람(예: 운송업체)을 포함하지 않음⁷⁴⁸⁾
 - 수출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출업자는 활성화되어 있는 수출입 계좌 및 사업자번호와 모든 관련 정보를 최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세관중개인 등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

747)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2조

748)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 운송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유효한 운송인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수출서류를 미리 전자송부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세관에 수출서류를 제출하면 됨
- 운송인 중 CBSA와 MOU를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 수출자는 해당 품목이 이미 CBSA에 신고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수출신고 증명번호를 운송인에게 제공해 주어야 함
- 세관중개인이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업체에 대해 위임을 받고 지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수출신고 문서를 제출함

나. 수출신고 방법

1) 수출신고 시기

- 수출자가 수출신고서를 CBSA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물품이 캐나다를 떠나는 운송방법 또는 수출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⁷⁴⁹⁾
- 해상 수출의 경우에는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항공 수출의 경우에는 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출용 우편물을 취급하는 캐나다 우체국으로 물품이 우송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
 - 물품이 철도로 수출되는 경우 철도차량이 철도로 이동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물품을 수출하기 직전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교체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직전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 직전이란 운송수단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를 떠나기 전을 의미함
 - 살아 있는 동물 및 벌크화물, 시간에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과 관계

749)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3조

없이 수출 직전에 신고해야 함

- 선박으로 수집, 채집한 물품의 수출자는 선박이 캐나다로 돌아온 직후 수출 신고를 해야 함

2) 수출신고 유형

- 수출업체 및 세관중개인은 다음의 수출통관방법 중 선택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면허, 허가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CBSA에 제출해야 함⁷⁵⁰⁾
 - 일반수출신고(Canadian Export Reporting System, CERS)
 - 자동수출신고(Canadian Automated Export Declaration, CAED)⁷⁵¹⁾
 - G7 EDI 수출신고(G7 EG7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xport Reporting)
 - 서류(Form B13A)에 의한 수출신고(Form B13A Export Declaration)⁷⁵²⁾
 - 요약신고프로그램(Summary Reporting Program, SRP)
- 캐나다에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정해진 방식으로 서면으로 신고되어야 함⁷⁵³⁾
 - 수출신고는 캐나다 「수출통제법」을 준수하고 캐나다 정부에 수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됨
 - 항공기의 경우 캐나다에 있는 동안 착륙한 적이 없거나 항공기 이외의 운송수단이 캐나다 영해에서 다른 운송수단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정박, 계류하지 않은 상

750)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51)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수출신고를 하려는 수출업체 및 세관 서비스 제공업체(통관대리인)는 자동수출신고(CAED) 방법으로는 더 이상 신고할 수 없으며 2020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수출신고시스템(CERS)을 이용해서 수출신고를 해야 함

752) 인터넷 및 EDI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수출자는 캐나다 수출신고서 양식인 Form B13A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6월 30일 이후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는 Form B13A에 의한 서류제출신고는 폐지되고 수출신고 시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함

753) 캐나다 「관세법」 제95조

태로 캐나다의 영해에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일반수출신고는 수출신고시스템(CERS)을 이용하여 CBSA에 수출을 신고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수출업체 및 세관중개인은 CERS 포털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⁷⁵⁴⁾
 - CERS에 등록하려면 수출업체는 우선 캐나다 수출신고시스템을 신청해야 하고 CERS를 통해 신고할 때 수출자는 전자상거래 고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CBSA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수출은 G7 EDI 수출신고(G7 EG7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xport Reporting)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때 수출자는 데이터를 CBSA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⁷⁵⁵⁾
 - 이 신고방법은 G7 국가 간의 상품 수입 및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수출자는 G7 EDI 수출신고서(Form BSF158)를 작성해야 함
 - G7 EDI 시스템은 G7 국가의 관세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수출신고서 양식인 G7 EDI 수출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며, G7 국가에서는 해당 수출자의 자료가 수입자 및 중개인에 의해 수입국에서 재사용될 수 있음
 - G7 EDI 수출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통계청에 신청서(Form SF15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캐나다 통계청은 심사 후 승인된 ID와 허가번호를 CBSA에 발행해 주고 CBSA는 수출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침

- 요약신고프로그램(Summary Reporting Program, SRP)을 이용하면 벌크화물 또는 동종상품 수출업체는 물품이 수출된 후 월별 수출내역을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음⁷⁵⁶⁾

754)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rog/cers-scde/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8. 24.

755)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eccrd-eng.html#_s1-19, 검색일자: 2020. 8. 24.

756)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요약신고프로그램 이용자는 CERS 포털을 통해서만 요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⁷⁵⁷⁾
-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은 사전에 승인된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 이후에 월별 요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⁷⁵⁸⁾
 - 위험도가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벌크제품으로 동일제품이면서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서면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월별 요약신고서 제출이 허용됨
- 1만캐나다달러 이상의 통화 및 화폐상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CBSA에 수출신고와 별도로 화폐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1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는 별도의 보고를 거치지 않아도 됨⁷⁵⁹⁾
 - 개인이 실제로 소지하고 있거나 개인과 수하물이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경우 개인의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통화 또는 화폐상품은 해당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CBSA 사무소에 보고해야 함
 - 택배 등의 방법으로 수출되는 통화 및 화폐상품은 수출장소에서 운송인이 신고해야 함
 - 전화를 통해서 통화 또는 화폐상품의 수출을 보고할 순 없으며 기타 이외의 상황에서 통화 또는 화폐상품을 대신하여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장소의 CBSA 사무소에 통화 또는 화폐 상품을 보고해야 함

3) 구두에 의한 수출신고

- 수출자의 구두신고는 짐을 싣지 않은 캐나다 군사수송 기기, 캐나다 국방부에서

757)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rog/cers-scde/ch25/eccrdcers-deccescde-01>, 검색일자: 2020. 8. 24.

758)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59) Memorandum D19-14-1 Cross-Border 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s Reporting

수출하는 품목, 혈액, 장기 등의 응급상황에 따라 수출되는 품목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출서류 및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⁷⁶⁰⁾

- 긴급상황, 화재, 홍수 또는 생명, 재산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기타 재해로 인해 수출되는 물품은 물품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CBSA 사무소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박운송의 운송인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에 물품이 선적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⁷⁶¹⁾

- 운송이 제한된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 군용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물품 출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 사무소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음⁷⁶²⁾
 - 국방부의 소유이거나 국방부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물품으로서 국방부가 해외 국방기지로 수출하거나 캐나다 군 배치 작전을 지원하는 물품과 생명을 보호하거나 응급 의료,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난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한 구두로 신고할 수 있음

4) 수출신고의 면제

-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으로 함⁷⁶³⁾
 - 판매용 또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면서 외국인의 소지품이 아닌 개인 및 가정용품
 - 2천캐나다달러 미만의 상업용품
 - 국제운송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스키드, 드럼, 팔레트, 스트랩 및 이와 유사한 운송인이 사용하는 물품
 - 외교 대사관 또는 공관원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인적 또는 공식적으로 수출

760)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61)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9조

762)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15조

763)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6조

하는 물품

- 개인의 선물 및 기부되는 물품
- 캐나다가 아닌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캐나다에 반입된 후 캐나다에서 다시 수출되는 물품
- 캐나다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캐나다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이 다른 국가를 거쳐 캐나다의 다른 목적지로 운송되는 물품
- 수리 또는 보증 수리를 위해 수출되어 캐나다로 다시 반환될 물품
- 항공기나 선박에서 판매할 물품
- 수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반환될 물품 등
- 캐나다 정부와 다른 국가 사이의 합의 범위 내에 있는 상품은 신고하지 않고 해당 국가로 수출될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 수집된 수입과 관련된 정보는 캐나다와 공유됨⁷⁶⁴⁾
-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수출신고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수출신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다음의 수출품에 대해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수출품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제 품목
 - 캐나다를 출발하여 미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품목
 -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품목 등
 -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
 - 특정한 비상업용 물품(2천캐나다달러 이상)
- 쿠바, 북한, 시리아 또는 캐나다의 수출통제목록의 목적지로 수출되는 상품은 건별로 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개별 수출허가가 필요함⁷⁶⁵⁾

764)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7조

765)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controls-controles/military-militaires/handbook-manuel.aspx?lang=eng&menu_id=78, 검색일자: 2020. 7. 21.

- 캐나다 「해운법(Canada Shipping Act)」에 따라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상업용 어선의 경우 운송인이 처음 수출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해당 어업시즌 동안 발생하는 어선의 수출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음⁷⁶⁶⁾
- 캐나다 영해에서 캐나다에 등록된 상업용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이 캐나다 항구 외부로 인도하거나 해당 선박에서 외국 등록 상업용 어선으로 인도 되는 모든 어획물은 관세청장에게 수출자가 서면으로 신고함⁷⁶⁷⁾

5) 수출신고 관련 제반사항

- 수출된 후 추가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12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돌아오거나 수리 또는 하자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수출된 후 기간에 제한 없이 캐나다로 다시 반환되는 물품에는 별도의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물품이 캐나다로 반환될 때에는 캐나다 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자는 A·T·A 카르네 등의 제도를 이용해야 함⁷⁶⁸⁾
- 하자보증을 수행을 위해 수입된 물품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 또는 추가적인 처리가 된 경우 수출자는 별도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⁷⁶⁹⁾
- 하자보증이 아닌 상품이 캐나다에서 수리 또는 추가적인 처리를 받았으나 수리 또는 가공의 가치가 2천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 2천캐나다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운송수단이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식별번호(예: 차량 번호 등 기타 고유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CBSA가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⁷⁷⁰⁾

766)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16조

767)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 제17조

768)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8/d8-1-7-eng.html>, 검색 일자: 2020. 8. 20.

769)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70)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 영구적으로 수출되는 운송수단에는 차량, 오토바이, 보트, 비행기, 기차 엔진 및 오프로드 장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운송수단은 운송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함
 - 운송수단이 미국 외의 국가에 영구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CBSA에 제시해야 함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출신고서의 정보를 수정해야 함⁷⁷¹⁾
- 신고가 수정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경우 수출자는 지체 없이 CBSA에 수정사항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시스템은 수정기능을 이용하여 수출자 또는 세관중개인은 원본 또는 이전에 수정된 수출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출신고서를 수정해야 함
 - 수정은 최초 신고 후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CERS를 통한 수정은 신고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수정되어야 함
 - G7 EDI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전자수정기능을 제공함⁷⁷²⁾
- CBSA에 대한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물품이 캐나다에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통관대리인은 CBSA에 알린 후 수출신고취소를 가능한 신속히 해야 하며 취소방법은 수출신고를 하는 데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다름⁷⁷³⁾
- 수출신고시스템으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서 무효기능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취소는 수출신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 이후에는 자발적 공개 절차(Voluntary Disclosure Process)를 이용하여 CERS를 통해 제출된 수출신고를 취소해야 함
 - G7 EDI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전자취소기능을 제공함

771)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72)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g7/exporting-eng.html>, 검색일자: 2020. 9. 13.

773)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1/d11-6-4-eng.html>, 검색일자: 2020. 9. 13.

- 수출될 물품은 해당 물품이 법률에 따라 수출의 금지, 통제 등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CBSA의 공무원이 인정할 때까지 유치될 수 있으며 유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함⁷⁷⁴⁾
 -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수출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면 불필요한 유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⁷⁷⁵⁾

- 개인 또는 가정용 물품을 수출하려는 이민자는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등록하고 사업자번호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⁷⁷⁶⁾
 - G7 EDI 수출신고 등 일반적인 전자신고방법은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이민자는 수출신고 사무소 또는 통관대리인을 통해 Form B13A를 제출하여 물품을 신고해야 함

- 수출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와 캐나다 군대가 수출하는 물품에도 적용됨⁷⁷⁷⁾
 - 화물이나 물품을 신지 않은 운송수단 또는 캐나다 국방부의 소유이고 독점 사용을 위한 물품이며 해외 국방 기지로 수출하거나 캐나다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물품은 물품의 출국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된 수출 사무소에서 구두로 신고할 수 있음

- 수출자는 캐나다 내 사업장이나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함⁷⁷⁸⁾
 - 캐나다 거주인이 아닌 수출자의 경우 개인마다 서류 보관을 위한 지정장소가 정해지며 만약 이 수출자 대신 통관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수출 통관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무실에 보관하면 됨⁷⁷⁹⁾
 - 서류에 대한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774) 캐나다 「관세법」 제101조

775) 물품에 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설명을 피하고 신고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치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776)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77)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78) 캐나다 「관세법」 제97.2조 제1항

779) Exporters and Producers Records Regulations 제3조

2. 물품검사

- 공무원은 수출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수출될 상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개봉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물품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⁷⁸⁰⁾
 - 우편물의 경우에도 수출 시점까지 언제든지 모든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개봉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 CBSA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 물품을 검사함⁷⁸¹⁾
 - 검사방법으로는 X-ray를 이용한 검사(Vacis Exam), 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 뒷문을 개장하여 하는 검사(Dock Side Exam), 컨테이너를 창고로 이동시켜 검사(Wooden Package Exam), 무작위검사(Random Exam), 정밀검사(Impact Exam)가 있음
 - 검사의 발생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부담임
 - 검사대상으로는 초기 수출되는 제품, 동식물, 사료, 동식물 가공품 및 관련 제품 등(식품검역청(CFIA) 권한)이 있음
 - 검사면제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자의 물품 등이 있음
- 수출자는 CBSA의 검사를 위해 물품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CBSA는 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음⁷⁸²⁾
 - 수출자는 검사와 관련하여 창고 운영자, 건물 시설 소유주 등과 같이 제3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780) 캐나다 「관세법」 제99조

781)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mts_smc-eng.html, 검색일자: 2020. 10. 16.

782) 캐나다 「관세법」 제95조

- CBSA의 담당공무원은 수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수출될 물품 또는 수출신고된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도록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양의 물품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⁷⁸³⁾
 - 수출 시점까지 언제든지 수출할 우편물을 조사하고 담당공무원이 합당한 이유로 수출이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열거나 열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에 포함된 샘플을 합리적인 양으로 채취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원산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물품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양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운송수단을 중지할 수 있고 운송수단을 수색하여 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색, 조사 또는 개봉을 위해 세관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로 운반물을 이동하게 할 수 있음

- 세관은 물품이 CBSA에 신고된 이후 캐나다에서 떠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⁷⁸⁴⁾
 - 수출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면서 물품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자나 운송인에게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요구함

- 캐나다 세관은 수출품의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이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상황에 한해 수출품을 억류시킬 수 있음⁷⁸⁵⁾
 - 통제 대상인 수출품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출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억류할 수 있음

783) 캐나다 「관세법」 제99조 제1항

784)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785) Memorandum D20-1-1 Exporter reporting

- 역류기간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세관직원이 해당 수출품이 법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역류가 가능함
 - 관련 기관의 서면 확인서 및 수출자의 추가 정보 제공, 유효한 수출허가서,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무 이행 및 세관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품에 대한 역류가 해지됨
-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및 사전심사 관련 서류를 6년간 보관해야 함⁷⁸⁶⁾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구매, 수입, 가격, 금액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함
 - 또한 사전심사 지원서류, 지원확인증, 사전심사와 관련된 행정서류와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인증서류(물품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등을 보관해야 함
 - 생산자는 구매, 가격, 금액 납부영수증을 비롯하여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직·간접 재료에 대한 내용과 사전심사 지원서류, 지원확인증, 사전심사와 관련된 행정서류 등을 보관해야 함
 - 수입자는 원산지, 구매, 수입, 가격, 금액납부, 사전심사 지원서류, 캐나다에서의 물품 처분 증명 등 서류를 수출자와 마찬가지로 6년 동안 보관해야 함

786) Memorandum D20-1-5 Maintenance of Records and Books in Canada by Exporters and Producers

참고문헌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관계부처 합동, 『한-캐나다 FTA 상세설명자료』, 2014. 8.
- 관세청, 『한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
- _____, 『한눈에 보는 2018년 FTA 활용 지도』, 2019.
- _____, 『한눈에 보는 2019년 FTA 활용 지도』, 2020.
- 김기인, 『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석준호·문한필·김지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7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3.
- 설송이·제현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C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2018, 제23호, 한국무역협회, 2018. 10.
-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 외교부, 『캐나다 개황』, 외교부, 2017. 2.
- _____, 『2019 세계각국편람』, 외교부, 2019. 12.
- 정다운·양지영·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조문희·권혁주·강민지,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0.
-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0-012, 2020. 6.
- _____, 「캐나다 토론토 출장자료」, 2020년 상반기

캐나다 통계청,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9,” 2020. 7. 17.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20*, 2020.

관세청 관세용어 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List.do?mi=2902>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캐나다 공공안전부, <https://www.publicsafety.gc.ca>

캐나다 법률정보, <https://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상무부, <https://www.international.gc.ca>

캐나다 식품검역청, <https://www.inspection.gc.ca>

캐나다 우체국, <https://www.canadapost.ca>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

캐나다 통계청, <https://www150.statcan.gc.ca>

캐나다 CBSA, <https://www.cbsa-asfc.gc.ca/>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a.html>

IMF, <https://www.imf.org>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캐나다 편 -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이재선 · 변달수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SBN 979-11-6655-039-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